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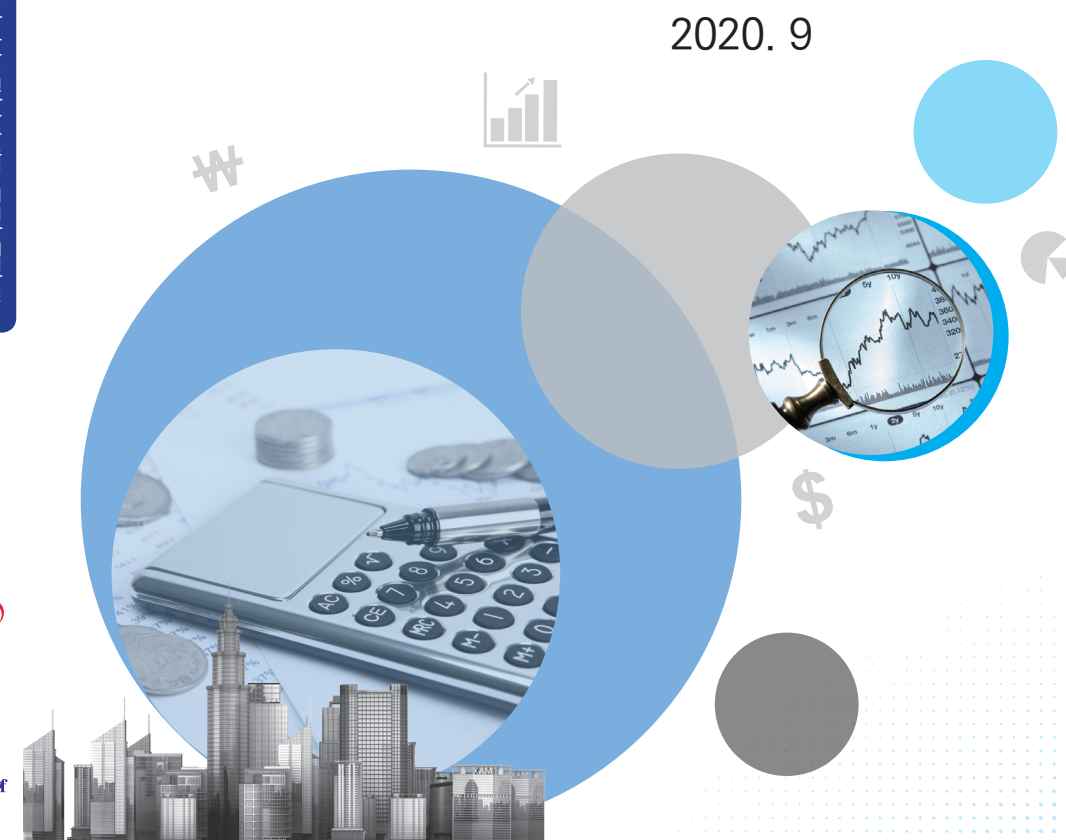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0.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20.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김무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승문 건국대학교 교수

2020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유 찬

요 약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연구목적)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조세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63조와 「조특법」 제63조의2가 입법목적인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국토의 균형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제도의 합리성과 운영의 적절성도 함께 살펴봄
- (필요성) 연구 대상 제도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조세수입의 감소액)이 300억원 이상인 의무심층평가대상으로서 2017년에 심층평가를 수행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므로 제도의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함

<표 1>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망)	'20년 (전망)
소득세	156	138	158	164	194	286	260	274
법인세	463	503	309	611	530	525	487	506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2>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개)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망)	'20년 (전망)
법인세	1,659	1,405	1,436	3,984	8,782	7,597	6,570	6,833
신고법인 수	162	162	185	160	183	173	-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방법) 문헌조사와 통계조사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함
 - 타당성 분석에서는 연구 대상 제도와 관련된 심판례와 판례 및 조세감면의 기초통계 등을 통하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조세감면의 기초통계 뿐만 아니라 과세 미시 행정자료, 전국 사업체조사 등을 이용함
 - 종합소득세 미시자료 등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외되어 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분석
 - 매출액과 고용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before-and-after regression analysis와 Propensity Score Matching 등을 수행

2. 타당성 분석내용

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과 함께 정부 역할의 적절성

-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 중의 하나로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1982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04년)」 (이하 「국가균형발전법」이라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1년)」 등

나.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중복성

-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과 조세지출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심층대상 제도와의 중복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원방법, 중점목표, 중점대상 등이 본 제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정지원인 것으로 판단됨¹⁾
- 2017년 심층평가 당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을 수혜받은 251개 기업 중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11개(4%)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비율로 매칭되어 있으며, 국비지원부분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해줄 필요가 있음

다. 조세특례제도 운용의 적절성: 감면한도, 사후관리 중심

1) 감면한도

- 감면세액에 대한 한도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세액감면의 법적 성격은 일정 기간 동안에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기간감면’의 성격을 가짐
 - 동일한 성격의 조세특례로는 지역특구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있음
 - 본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하는 경우 그 근거로 「조특법」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유사한 제도로 이해하며,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감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할 수 있지만, 이 제도는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제도와 비교하기엔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이 있음
 - 첫째,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은 헌법적 요청에 따른 감면이며, 제121조의8에 따른 감면은 그렇지 않음. 둘째, 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수혜대상이지만 후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부여됨. 셋째, 전자는 감면이 적절하지 않은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이 감면대상이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적지만 후자는 특정 업종에 한정되어 있음

1) 기획재정부,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VI):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2017, p. 120.

-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감면수준을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입법자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여러 정책적 수단 중 하나이지만 제121조의8에 따른 감면은 전혀 그렇지 않음. 전자의 경우에는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더 낮은 감면수준을 유지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감면을 제도화하였다면 이는 과도하여 위헌 내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수도권기업이 조세감면을 위해 과도하게 지방이전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감면수준에도 불구하고 입법 의도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수준을 축소한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감사원 지적사항과 같이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점, 지방이전 후 감면세액 산정 시 투자 및 고용이 고려되지 않는 점 등 제도 운영상 발생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감면한도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지역특구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설정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음

- 심층평가대상 규정과 달리 지역특구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을 다음의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음(2010년 신설)
 -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라 감면세액에 대한 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지만, 산출근거를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음(2010년 신설 당시 입법자료에도 없음)
- 감면한도 설정 이외에도 과도한 세액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기간감면이 적용되는 조세특례 중에서는 유일하게 7년간 100%, 3년간 50%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축하는 방안이 있음

2) 사후관리

〈표 3〉 「조특법」상 지방이전기업의 사후관리제도 개요

구분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적용 대상	- 대도시 내 공장 시설 갖추고 사업을 한 내국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	- 공장시설 갖춰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	- 과밀억제권 안에 3년 이상 본점·공장시설 갖추고 사업 영위
이전 요건	- 선 지방이전 후 공장양도(2년 내) - 선 공장양도 후 기존 공장 취득(1년 내) - 선 공장양도 후 지방이전(3년 내)	- 선 지방이전 후 본사양도(2년 내) - 선 본사양도 후 지방이전(3년 내)	- 선 지방이전 후 공장양도(1년 내) - 선 공장양도 후 지방이전(1년, 3년 내)	- 선 지방이전 후 공장·본사양도(2년 내) - 선 공장·본사양도 후 지방이전(일정 기한 내)
사후 관리 내용	- 지방공장 취득 후 사업 미개시 - 사업의 폐업·해산	- 지방 미이전 - 과밀억제권역 일정 기준 이상 사무소 존재 - 본점처분대금을 용도 외 사용 - 사업의 폐업·해산	- 3년내 폐업·해산 - 이전 후 사업 미개시 - 과밀억제권역 이전 공장·본사·생산공장과 같은 제품 생산공장·본사·설치	- 3년내 폐업·해산 - 이전 후 사업 미개시 - 수도권에 이전공장과 같은 제품 생산공장·본사·설치 - 본사이전의 경우 수도권에 기준 이상 사무소 존재 - 이전본사 임원비율이 50% 미만
제재	-	-	- 공장의 이전일 이후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또는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자상당액 추징 - 임원비율 위반 시 사유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 박탈

자료: 관련 규정을 기초로 저자 작성

- 심층평가대상인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는 사후관리내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에 대한 제재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3) 기타

- (업종별 제한)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업종별 제한을 둔 취지(소비성서비스, 지방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는 경우 등)를 고려할 때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요건에 중소기업에 대한 업종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형편에 따라 「조특법」 제63조나 제63조의2를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 규정들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공장과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 제63조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모두 이전하여야 하지만, 어느 하나만 이전하고자 할 때는 제63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임원의 이진율 50%) 정책목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임원의 이진율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세대 전원의 이진율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음
 - 대도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세대 전원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했던 적이 있음(1978년)

3. 효과성 분석내용

- 효과성 분석에서는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 효과성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 1. 본 조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분석
 - 2. 본 조가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 이를 위하여 과세 미시 행정자료, 선행연구의 설문조사 자료 등을 이용함
 - 2009~2018년 기간 동안 동 제도로 조세감면을 받은 법인 전수와 같은 기간 무작위로 추출한 비감면법인의 소재지, 업태, 법인세 수입금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금액, 감면세액 등의 정보를 이용함
 - 과거 심층평가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연구에서 과세 미시 행정자료를 이용하지 않았음
- 6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그 외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지방이전 지원세제 심층평가』
 - 산업연구원(2016),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현황 및 이전요인 분석』
 - 기획재정부(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VI)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분석

- 지방이전 촉진효과를 before-and-after, difference-in-differences 등 정책효과 추정방법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
 -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 모두 2000년도 이전에 도입되어 이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며, 도입 이후에도 대조군을 구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상 특성을 찾기 어려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기업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제도의 효과를 통제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감면제도의 지방이전 촉진효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정책대상 기업²⁾ 중에서 과밀억제권역 혹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극히 일부임
 - 최근 10년간(2009~2018년) 연평균 수혜기업 수는 제63조의 경우 369개, 제63조의2의 경우 167개임
 - 같은 기간 내 한 번이라도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수는 제63조의 경우 1,231개, 제63조의2의 경우 589개임
 - 즉 동 제도가 정책대상 기업의 지방이전 결정에 미친 평균적인 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2) 「조특법」 제63조의 적용대상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 중소기업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됨. 제63조의2의 적용대상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업, 해운중개업은 제외되며, 이전공공기관은 포함됨

-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상당수는 조세감면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했을 것으로 보임
 -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전기업의 약 8.7%(제63조), 14.7%(제63조2)만이 동 제도가 없었다면 이전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답변함
 - 그 외 지방이전 결정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많은 기업이 조세감면 혜택이 없었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즉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이전촉진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나.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 동 조가 정책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집계(aggregate)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통계분석은 큰 의미가 없음
 - 그보다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함
 - 1. 이전기업의 특성
 - 2. 조세감면과 기업 활동
 - 3. 이전지역의 낙후도
- (1. 이전기업의 특성) 이전기업의 기업 규모, 고용 수준 등이 클수록 균형발전 효과도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법인세 미시자료와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등을 비교해 봄
 - 수혜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었던 만큼 비감면기업에 비하여 기업 규모 등이 어느 정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법인세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혜기업의 수입금액, 당기순이익금액은 비수혜기업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1.5~2.2 표준편차 수준임

- KIS-data를 이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용 및 생산성에 있어서도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높은 값을 보임
- (2. 조세감면과 기업 활동) 수혜기업의 기업 활동이 지방이전 후 집적이익의 감소 등으로 크게 위축된다면 의도했던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감면세액 및 세액감면 여부는 기업의 매출·이윤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매출, 이윤 등의 성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이전을 하였고, 이전 후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전체 근로자 수 및 채용 근로자 수가 이전 후 유의미하게 증가함
 - 지방이전이 외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3. 이전지역의 낙후도) 균형발전 효과는 기업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할 때 극대화될 수 있음
 - 수도권 내 이전이 가능한 제63조의 경우 전체 수혜기업의 80%가량이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전함
 - 중소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집적이익의 감소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혜기업의 수도권 내 이전 비중이 높은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음
 - 지역발전 정도가 가장 낮은 전라도, 강원도 등으로 이전한 비중은 높지 않음³⁾

4. 종합평가 및 결론

- (종합평가-타당성)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타당한 정책수단으로 판단되지만,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들이 나타나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3) 지역낙후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KDI에서 재정·인프라·인구·기업 등 관련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하여 점수화한 지수를 이용함

- 특히 감면한도 설정에 있어서 지역특구입주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무 인원수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또는 감면기간을 다른 기간감면제도와 유사하게 축소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종합평가-효과성) 심층평가대상 규정이 수도권 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 정책대상 기업 중에서 과밀억제권역 혹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극히 일부이며,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상당수는 조세감면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했을 것으로 보임
- (정책 제언) 국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쳤으나, 수도권 집중도는 거의 50%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심층평가대상 규정의 정책적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폐지가 적절할 수 있음
-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이 제도마저 없다면 수도권 집중도는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헌법」에서 국가의 의무사항 중 하나로 지역 균형발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를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론	19
1. 연구목적 및 방향	21
2. 연구방법	23
3. 선행연구 검토	24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24
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63조의2)	25
II. 제도개요 및 조세감면 현황	27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9
가. 도입 배경	29
나. 근거 규정	29
다. 입법 연혁	30
라. 요건	34
마. 효과: 과세특례	37
바. 사후관리 및 제재	37
사. 조세지출 규모	38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38
가. 도입 배경	38
나. 근거 규정	39
다. 입법 연혁	41
라. 요건	51
마. 효과: 과세특례	54
바. 사후관리 및 제재	57
사. 조세지출 규모	58

Ⅲ. 타당성 분석	61
1. (조세특례 목적의 정당성)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분석하면서 정부 역할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63
2. (조세특례의 적절성)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지원을 선택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성적 분석	75
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개관	75
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조세지원과의 중복성 여부	77
3. (조세특례제도 운용의 적절성) 조세특례제도 대상 설정, 감면 방법 등 조세특례제도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78
가. 감면 요건	78
나. 감면 내용	80
다. 감면 방법	92
라. 사후관리	94
마. 일몰 규정	96
 Ⅳ. 효과성 분석	 99
1.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분석	101
2.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108
가. 이전기업의 특성	109
나. 조세감면과 기업 활동	125
다. 이전지역의 낙후도	156
3. 소결	161
 Ⅴ. 종합평가 및 결론	 165
 참고문헌	 169
 부 록	 171

표 목 차

<표 II-1> 「조특법」 제63조 주요 연혁	31
<표 II-2> 「조특법」 제6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른 사유별 제재	37
<표 II-3>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38
<표 II-4> 「조특법」 제63조의2 주요 연혁	42
<표 II-5> 본사이전비율의 계산	56
<표 II-6>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2항에 따른 사유별 제재	57
<표 II-7>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58
<표 II-8>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신고 현황	59
<표 II-9> 「조특법」 제63조와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비교	60
<표 III-1> 지표별 수도권 집중 현황	67
<표 III-2> 수도권·비수도권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06~2018)	68
<표 III-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한도	76
<표 III-4> 현행 「조특법」상 양도차익 감면제도	83
<표 III-5> 주요 기간감면제도 간의 비교	86
<표 III-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89
<표 III-7> 「조특법」상 기간감면제도 현황	90
<표 III-8> 조세지원제도의 유형과 장단점	92
<표 III-9> 「조특법」상 지방이전기업을의 사후관리제도 개요	94
<표 IV-1> 조세감면 혜택이 없었을 경우의 이전결정(제63조 수혜기업 대상)	104
<표 IV-2> 조세감면 혜택이 없었을 경우의 이전결정(제63조의2 수혜기업 대상) ..	105
<표 IV-3> 지방이전을 고려하게 된 주된 이유	106
<표 IV-4> 이전 요인 중요도	107

<표 IV-5> 현재의 지역으로 이전한 이유 1순위(「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 대상) ..	107
<표 IV-6> 현재의 지역으로 이전한 이유 1순위(「조특법」 제63조의2 수혜기업 대상) ..	108
<표 IV-7> 수입금액 비교 분석 결과(「조특법」 제63조 수도권 내 이전)	110
<표 IV-8>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분석 결과(수도권 내 이전)	111
<표 IV-9> 수입금액 비교 분석 결과(「조특법」 제63조 수도권 외 이전)	112
<표 IV-10>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비교 분석 결과(「조특법」 제63조 수도권 외 이전)	113
<표 IV-11> 수입금액 분석 결과(공장이전)	114
<표 IV-12>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분석 결과(공장이전)	115
<표 IV-13> 수입금액 분석 결과(본사이전)	116
<표 IV-14>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분석 결과(본사이전)	117
<표 IV-15> 「조특법」 제63조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 비교	118
<표 IV-16> 「조특법」 제63조의2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 비교 ..	118
<표 IV-17> 「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의 업종(건수 기준)	119
<표 IV-18> 「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의 업종(수입금액 기준)	120
<표 IV-19>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의 업종(건수 기준)	121
<표 IV-20>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의 업종(수입금액 기준)	122
<표 IV-21>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의 업종(건수 기준)	123
<표 IV-22>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의 업종(수입금액 기준)	124
<표 IV-23> 사업체 이전 현황	126
<표 IV-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의 주요 변경 사항	127
<표 IV-25>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조세특례의 주요 변경 사항	127
<표 IV-26> 「조특법」 제63조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기초 통계(전체 연도)	128
<표 IV-27> 「조특법」 제63조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기초 통계(2017년)	129
<표 IV-28> 「조특법」 제63조 감면세액과 기업 매출	130
<표 IV-29> 「조특법」 제63조 감면 여부와 기업 매출	131
<표 IV-30> 「조특법」 제63조 감면세액과 기업 매출(수도권 내 vs 수도권 외)	132
<표 IV-31> 「조특법」 제63조 감면 여부와 기업 매출(수도권 내 vs 수도권 외)	132

<표 IV-32> 「조특법」 제63조 감면세액과 기업 이윤	133
<표 IV-33> 「조특법」 제63조 감면 여부와 기업 이윤	133
<표 IV-34> 「조특법」 제63조 감면세액과 기업 이윤(수도권 내 vs 수도권 외)	134
<표 IV-35> 「조특법」 제63조 감면 여부와 기업 이윤(수도권 내 vs 수도권 외)	134
<표 IV-36> 「조특법」 제63조2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기초 통계(전체 연도)	135
<표 IV-37> 「조특법」 제63조2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기초 통계(2017년)	136
<표 IV-38> 「조특법」 제63조2 감면세액과 기업 매출	136
<표 IV-39> 「조특법」 제63조2 감면 여부와 기업 매출	137
<표 IV-40> 「조특법」 제63조2 감면세액과 기업 매출(공장이전 vs 본사이전)	138
<표 IV-41> 「조특법」 제63조2 감면여부와 기업 매출(공장이전 vs 본사이전)	138
<표 IV-42> 「조특법」 제63조2 감면세액과 기업 이윤	139
<표 IV-43> 「조특법」 제63조2 감면 여부와 기업 이윤	139
<표 IV-44> 「조특법」 제63조2 감면세액과 기업 이윤(공장이전 vs 본사이전)	140
<표 IV-45> 「조특법」 제63조2 감면 여부와 기업 이윤(공장이전 vs 본사이전)	140
<표 IV-46>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전체 연도)	141
<표 IV-47>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2017년)	142
<표 IV-48>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이전한 기업 전체)	143
<표 IV-49>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	144
<표 IV-50>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144
<표 IV-51>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서울로 이전한 기업)	145
<표 IV-52>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타 지역에서 서울·인천·경기로 이전한 기업)	145
<표 IV-53>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	146
<표 IV-54>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47
<표 IV-55> 기업 이전 후 정규직 근로자 수 변화	147
<표 IV-56> 기업 이전 후 정규직 근로자 수 변화(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48
<표 IV-57> 기업 이전 후 비정규직 근로자 수 변화	148

<표 IV-58> 기업 이전 후 비정규직 근로자 수 변화(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49
<표 IV-59> 기업 이전 후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149
<표 IV-60> 기업 이전 후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50
<표 IV-61> 기업 이전 후 채용 근로자 수 변화	151
<표 IV-62> 기업 이전 후 채용 근로자 수 변화(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51
<표 IV-63> 기업 이전 후 이직 근로자 수 변화	152
<표 IV-64> 기업 이전 후 이직 근로자 수 변화(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52
<표 IV-65> 기업 이전 후 채용근로자/이직근로자 비율 변화	153
<표 IV-66> 기업 이전 후 채용근로자/이직근로자 비율 변화(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53
<표 IV-67> 기업 이전 후 1인당 부가가치 변화	154
<표 IV-68> 기업 이전 후 1인당 부가가치 변화(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55
<표 IV-69> 기업 이전 후 1인당 부가가치 변화(부가가치>0)	155
<표 IV-70> 기업 이전 후 1인당 부가가치 변화(부가가치>0,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156

그림 목 차

[그림 II-1]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 및 신고법인 수 추이	60
[그림 IV-1] 조세감면 혜택이 없었을 경우의 이전 결정(「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 대상)	104
[그림 IV-2] 조세감면 혜택이 없었을 경우의 이전 결정(「조특법」 제63조의2 수혜기업 대상)	105
[그림 IV-3]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내 이전 수혜기업의 수입금액	110
[그림 IV-4]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내 이전 수혜기업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	111
[그림 IV-5]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외 이전 수혜기업의 수입금액	112
[그림 IV-6]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외 이전 수혜기업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	113
[그림 IV-7] 수입금액 비교(공장이전)	114
[그림 IV-8]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비교(공장이전)	115
[그림 IV-9] 수입금액 비교(본사이전)	116
[그림 IV-10]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비교(본사이전)	117
[그림 IV-11] 「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의 업종 비중(건수 기준)	119
[그림 IV-12] 「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의 업종 비중(수입금액 기준)	120
[그림 IV-13]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의 업종 비중(건수 기준)	121
[그림 IV-14]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의 업종 비중(수입금액 기준) ...	122
[그림 IV-15]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의 업종 비중(건수 기준)	123
[그림 IV-16]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의 업종 비중(수입금액 기준) ...	124
[그림 IV-17] 「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 이전지역 비중(건수 기준)	157
[그림 IV-18] 「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 이전지역 비중(수입금액 기준)	158
[그림 IV-19]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 이전지역 비중(건수 기준) ...	159
[그림 IV-20]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 이전지역 비중(수입금액 기준) ..	159
[그림 IV-21]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 이전지역 비중(건수 기준) ..	160
[그림 IV-22]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 이전지역 비중(수입금액 기준) ..	160

I. 서론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향

- (연구목적)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조세특례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함
 - ‘조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을 의미함
 - 연구 대상 제도는 연간 조세특례금액(조세수입의 감소액)이 300억원 이상인 의무심층평가대상으로서 2017년에 심층평가를 수행하여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조특법」 제63조와 「조특법」 제63조의2의 입법목적인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국토의 균형발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아울러 제도의 합리성과 운영의 적절성도 함께 살펴봄

- (연구방향) 연구 대상 제도의 조세감면 목적 달성 여부 및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 조세특례의 운용 성과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적시에 조세특례 운영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조특법」 제63조의2)는 장기간 운영되었으며, 감면액이 큰 제도로 일몰 도래 전에 조세감면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개선점을 검토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조세특례(「조특법」 제63조)는 장기간 운영되었으며, 일몰도래 전에 조세감면의 목적 달성 여부 및 제도의 타당성, 효과성 및 개선점 등을 검토함
 - 특히 제도 운영적 측면에서 감면한도 설정과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 연구방향은 평가대상 규정이 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지 ②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임
- 동 제도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선행연구가 존재하나 분석자료, 방법론, 및 해석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음
 - 대표적인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음
 - 2014년 『지방이전 지원세제 심층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KDI
 - (분석자료) 위의 두 연구는 각각 전국사업체조사, 한국신용평가로부터 확보한 기업정보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종속변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세 미시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조특법」 제63조의2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를 이유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분석이 제외되어 왔음
-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분석) 기존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설문자료의 활용 및 해석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음
 - 예를 들어 2017년 심층평가 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동 제도의 이전 촉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문항은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감면제도가 없었을 경우의 이전결정(counterfactual)을 묻는 항목인데, 이 문항에 대한 결과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함
 - 감면제도가 없었더라도 이전기업의 약 58.8%(제63조2), 76.8%(제63조)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했을 것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이전 촉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나, 2017년 심층평가에서는 다른 문항들을 근거로 이전촉진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및 과세 미시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좀 더 엄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두 연구 모두 이전기업의 고용 수준 등의 종속변수가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얼마나 다른지를 추정하여 그 차이를 제도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의 행태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를 통해서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지방이전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현저히 악화되지만 않는다면,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것 자체로 국가 균형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전 기업은 전체 기업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합계 (aggregate) 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통계분석은 큰 의미가 없고, 그보다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수도권 밖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의 조건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음
 - 1) 이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낙후지역으로 이동하는지 여부
 - 2) 일부 지사만 옮기는 등 형식적인 이전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여부
 - 3) 지방이전 이후 기업 활동이 현저하게 악화되지는 않는지 여부
 - 본 연구에서는 위의 조건들이 만족되는지 선행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과세 미시 행정자료, 「전국사업체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검토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차별성 있는 연구를 시행할 계획임
 - 연구 대상 제도와 관련된 심판례와 판결례를 수집 및 조사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사용할 예정임
- 통계조사
 -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을 위한 조세감면의 기초통계를 조사함
 - 과세 미시 행정자료, 전국사업체조사 등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 종합소득세 미시자료 등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외되어 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분석

- 매출액과 고용 등을 종속변수로 하는 before-and-after regression analysis와 Propensity Score Matching 등을 수행

전문가 간담회

- 보고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사, 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3. 선행연구 검토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국내 연구

연구자	연구 제목	주요 내용
강성훈·홍성훈·노승화	지방이전 지원세제 심층평가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정책 효과성·효율성 등을 심층평가하여 향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재설계 등을 제언함
김태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원정책: 충청권 기업의 인식	지방이전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존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보완책을 모색함
박영선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조세지원 효과 분석	조세감면 유형별 조세지원 효과를 분석하여 부작용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의 악용가능성 및 방지방안을 모색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함

해외 연구

연구자	연구 제목	주요 내용
Dennis H. Sullivan	Econometric Analysis of Business Tax Impacts on Industrial Location: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	조세 충격이 산업입지 선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

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63조의2)

□ 국내 연구

연구자	연구 제목	주요 내용
강성훈·홍성훈·노승화	지방이전 지원세제 심층평가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이전 지원세제의 정책 효과성·효율성 등을 심층평가하여 향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재설계 등을 제언함
김태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원정책: 충청권 기업의 인식	지방이전 지원정책에 대한 기업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기존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보완책을 모색함
전명진·박상원	수도권 공업입지규제가 주변지역 제조업 입지에 미친 효과 분석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수도권에 인접한 주변지역의 제조업입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이전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 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도의 악용가능성 및 방지방안을 모색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함
윤현석	기업의 투자 유치·이전과 지방재정	기업의 투자 유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업의 투자 유치와 관련된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기업 투자 유치에 따른 지방세수의 증가 및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고찰함

□ 해외 연구

연구자	연구 제목	주요 내용
Dennis H. Sullivan	Econometric Analysis of Business Tax Impacts on Industrial Location: What Do We Know, and How Do We Know It?	조세 충격이 산업입지 선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

Ⅱ. 제도개요 및 조세감면 현황



II. 제도개요 및 조세감면 현황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 도입 배경

- 수도권으로의 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함

나. 근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내국인만 해당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같아야 한다. <신설 2011. 12. 31.>
- ⑥ 제1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다. 입법 연혁

-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춘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대도시 내의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하던 1970년대에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이라 함)에서부터 세제혜택이 있었음
 -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조특법」 제63조에 규정된 것은 「조감법」이 「조특법」으로 변경된 1998년부터임
 - 또한 「조특법」 제63조와 「조특법」 제63조의2는 수도권 집중화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상 입법 연혁적으로 함께 고려되어 왔으며, 그 최초의 연원도 유사하다는 측면이 있음
 - 이는 심층평가를 함께 묶어서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함

- 「조특법」이 시행된 이후 총 8차례 일몰기한 연장(2000. 12. 29., 2002. 12. 11., 2003. 12. 30., 2005. 12. 31., 2008. 12. 26.,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표 II -1> 「조특법」 제63조 주요 연혁

개정일	주요 변경사항
1989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전 시 세액감면 신설(「조감법」 제43조의4)
1999	일몰 도입: 2000년 12월 31일까지
1999	감면기간 연장: 6년 → 9년
2001	수도권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요건으로 수정
2003	감면기간 축소: 9년 → 7년
2010	감면기간 재설계: 낙후지역 10년간, 그 외 지역 7년간
2014	감면기산일을 최초 소득 발생일로 변경

1) 1970년대

- 1970년대 입법 연혁은 「조감법」 제4조의12 및 제4조의13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는 대도시에서 그 밖으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허용과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었음
 - 상세한 사항은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서 참고하기 바람

2) 1982년

- 1982년에는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세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규정은 「조감법」 제41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는 「조감법」 제42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은 「조감법」 제43조에 각각 새로이 규정함
 - 조세중립성 지향

- 조세지원방법을 직접감면에서 간접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함
 -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현행 조세 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함
- 상세한 사항은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에서 참고하기 바람

3) 1989년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조감법」 제43조의4에 신설함
- (입법취지)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도권 내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제도개요)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 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 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50%, 그다음 2년간 30%의 세액을 감면함

4) 1999년

- 5년 단위의 한시법으로 운용되어 온 「조감법」의 적용시한이 199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포함하여 모든 조세특례규정을 포괄하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환하면서 각 특례의 적용시한을 해당 조문에 설정하여 조세감면의 효율성을 제고함
- 이에 따라 심층평가대상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조특법」 제63조)

- 세액감면 범위를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년간 50%, 그다음 2년간 30%의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3년간 100%, 그다음 5년간 50%로 확대함

5) 2001년

- 「조특법」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 창업한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에서 ‘수도권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함)’으로 수정함

6) 2003년

- (감면기간 축소) 「조특법」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세액감면기간을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50%, 그다음 5년간 30%의 세액을 감면하던 것을 4년간 100%, 그다음 2년간 50%로 축소함

7) 2010년

- (개정 취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감면기간을 확대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함
- 이전지역이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일정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그다음 2년으로 기간을 적용함
- (주요 개정내용) 상기 지역 외(낙후지역)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그다음 3년의 기간을 적용함

8) 2014년

- (개정 취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기간의 기산점을 현행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변경함

- (주요 개정내용) 감면 기산일을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개정함

라. 요건

1) 적용대상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
 -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 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함(본사·공장의 동시 이전을 의미함)
 - 업종제한이 없음
 - 공장이전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동일업종 유지

2) 구 공장 조업실적

-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함
 - 2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조업한 경우를 말함

- 제조시설 중 일부가 2년 미만 조업한 경우에도 당해 제조장을 2년 이상 조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조업한 것으로 봄
- 개인사업자가 대도시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을 「조특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함

3) 공장시설 전부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중소기업의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공장을 전부 이전하여야 하며,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아닌 지점이나 다른 공장 등은 함께 이전하지 않아도 됨

4) 구공장 양도 및 신공장 사업개시

- (선이전 후양도) 당해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 (선양도 후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 (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 공장이전 시 이전일, 양도일, 철거 또는 폐쇄일, 사업개시일에 대한 요건의 판정은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이전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 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 · 양도일: 「소득세법」상의 양도일(「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철거 또는 폐쇄일: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게 된 사실상의 철거 또는 폐쇄일 · 사업개시일: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
--

5) 동일업종 영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하기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조특령」이라 함, 「조특령」 제54조 제2항)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중·소·세·세세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4번째 단계인 ‘세분류’까지 동일해야 함
 - 동일업종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한 것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이 인정되며,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¹⁾
 -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입법사항이므로,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한 국가 내의 모든 업종을 분류하는 작업에는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분류되는 업종의 범위가 방대함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판단자료와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대통령이나 행정각부의 장에게 위임하기보다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됨
 - 업종의 분류에 관한 사전적 의미와 관련 학문의 학문적 성과,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체계(ISIC), 관련 법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될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

1) 헌재 2014. 7. 24. 2013헌바183 등, 판례집 26-2상, p. 150.

마. 효과: 과세특례

-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감면(최초 7년간 100%, 다음 3년간 50%),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분할산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함
 - 사업연도 중에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전 소득과 이전 후 소득을 구분경리해야 함
 -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조특법」상 일부 세액공제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야 함

- 원칙적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최저한세 적용배제됨
 - 예외적으로 수도권 내에 있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됨

바. 사후관리 및 제재

- (감면세액의 납부)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일정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납부하고, 이자상당액도 납부해야 함
 - 이자상당가산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당액에 3/10,000원을 곱한 금액임

<표 II -2> 「조특법」 제6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른 사유별 제재

발생 사유	제재
①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공장의 이전일 이후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②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③ 감면을 받는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	이전한 공장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에 한함

자료: 관련 규정을 기초로 저자 작성

- 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함
 - 해당 규정은 2016년 신설되었음

사. 조세지출 규모

- 3년 평균 연간 779억원
 - 2018년 811억원, 2019년(전망) 747억원, 2020년(전망) 780억원

〈표 II -3〉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망)	'20년 (전망)
소득세	156	138	158	164	194	286	260	274
법인세	463	503	309	611	530	525	487	506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가. 도입 배경

-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감면제도를 「조감법」에 1976년 신설(1977년 시행)하였고, 지방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본사 이전에 대한 감면제도가 1985년에 추가로 도입되었음. 현재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조특법」을 통해 세제지원을 이어가고 있음
 - 수도권으로의 기업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 안에서의 기업의 신·증설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며,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소재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나. 근거 규정

- 심층평가 대상 조문은 「조특법」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부분에 규정되어 있음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업 및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전일 이후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 1. 1., 2010. 12. 27.,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24.>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다목의 비율과 라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삭제 <2017. 12. 19.>

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라.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뺀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이란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0. 1. 1., 2014. 12. 23.>

④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04. 12. 31., 2008. 12. 26., 2010. 1. 1.>

1. 삭제 <2008. 12. 26.>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⑤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제60조 제2항·제4항·제6항 또는 제61조 제3항·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1.>

⑥ 지방이전법인(공장을 이전한 경우만 해당한다)이 소유(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 이전일 현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적용되는 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는 토지로 본다. 다만,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을 폐업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1., 2010. 3. 31.>

⑦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2. 12. 11., 2003. 12. 30., 2004. 12. 31., 2010. 1. 1.>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4. 삭제 <2001. 12. 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⑧ 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을 제7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2 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1.>
- ⑨ 제6항에 따라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받은 지방이전법인이 제7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액 및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징한다. <개정 2010. 1. 1., 2010. 3. 31.>
- ⑩ 제1항·제2항·제5항 또는 제6항을 적용받으려는 지방이전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의 공장 또는 본사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각각 같아야 한다. <신설 2011. 12. 31., 2015. 12. 15.>
- ⑪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적용하는 경우 기간 계산의 방법, 급여의 범위, 세액감면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 2011. 12. 31.>
- [본조신설 1999. 12. 28.]
- [제목개정 2007. 12. 31.]

다. 입법 연혁

□ 조문의 주요 연혁을 살펴봄

-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된 이후 총 7차례 일몰기한 연장(2002. 12. 11., 2003. 12. 30., 2005. 12. 31., 2008. 1. 1.,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표 II -4> 「조특법」 제63조의2 주요 연혁

개정연도	주요 변경사항
1976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액공제제도(「조감법」 제4조의13),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조감법」 제4조의12) 최초 시행
1984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조감법」 제41조의2),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조감법」 제42조의2),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43조의2) 신설
1998	공장·본사의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
1999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폐지
1999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신설(「조특법」 제63조의2)
2000	감면소득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과세표준으로 변경
2001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제외
2003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제외·감면기간 축소: 11년→7년
2004	임원의 50%가 이전하는 요건 도입
200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 등
2010	감면기간 재설계: 낙후지역 10년간, 그 외 지역 7년간
2014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 제외 등
2019	감면대상소득의 명확화: 지방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법 연혁을 기초로 저자 작성

1) 1977년 및 1978년

가)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최초 시행(1977년)

(법적 근거) 「조감법」 제4조의12

(입법 취지)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

(인적 대상 요건) 내국인으로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 현행 규정과 달리 중소기업 여부, 법인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음

42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현행 규정과 달리 대도시 안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했을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음
- (물적 대상 요건) 공장시설만 해당하며, 본사에 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음
- (이전지역 요건) 대도시 안에서 대도시 밖으로의 이전을 요건으로 하였음
 - 대도시의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이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하는 시군과 인천시 및 수원시 전역이 해당되었음
- (법적 효과)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었음
 - 당해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장시설가액에 1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였음
 - 공장시설가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함
 - 손금에 산입한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의 합계액 중 이를 최초로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의 준비금은 그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였음
 - 공장시설의 이전에 소요된 금액은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의 개체·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사후관리) 원칙적으로 폐업 또는 해산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음

- 예외적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해 지방시설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적용배제
- (이자추징)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시설이전준비금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 100원에 1일 10전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추징하였음

나)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최초 시행(1977년)

- (법적 근거) 「조감법」 제4조의13
- (입법 취지) 대도시 인구집중 억제
- (인적 대상 요건) 내국인으로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 (물적 대상 요건) 공장시설 전부의 이전을 요건으로 하였으며, 본사 이전에 관한 규정은 없었음
 - 공장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된 기계시설(주된 기계를 가동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의 기계와 장치를 포함함)
- (이전지역 요건) 대도시 안에서 대도시 밖으로의 이전을 요건으로 하였음
 - 대도시의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이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하는 시군과 인천시 및 수원시 전역이 해당되었음
- (법적 효과) 사업 이전 후, 해당 공장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된 기계시설가액의 8%, 국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자재와 기계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공장 이전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조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공제율을 각각 10%, 12% 적용함

다)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최초 시행(1978년)

- (법적 근거) 「조감법」 제4조의14
- (입법 취지) 대도시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 유도
- (인적 대상 요건) 대도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 대도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세대 전원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물적 대상 요건) ‘사업’ 이전만을 의미하며, 공장 등의 별도 요건은 없음
- (이전지역 요건) 대도시 안에서 대도시 밖으로의 이전을 요건으로 하였음
 - 대도시의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이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하는 시군과 인천시 및 수원시 전역이 해당되었음
- (법적 효과) 사업을 개시한 과세기간과 그 후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그 소득금액의 5%(「조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 (중복적용 배제) 상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라) 지방이전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제도 최초 시행(1978년)

- (법적 근거) 「조감법」 제4조의15

- (입법 취지) 대도시 산업시설의 지방 분산 유도
- (인적 대상 요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 (물적 대상 요건) ‘공장’ 이전만을 의미함
- (이전지역 요건) 대도시 안에서 대도시 밖으로의 이전을 요건으로 하였음
 - 대도시의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이며, 대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는 서울특별시에 인접하는 시군과 인천시 및 수원시 전역이 해당되었음
- (법적 효과)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 및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 공장이전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보상금에 대하여는 그 가액이 종전의 공장가액 이상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를 면제함
 - 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2) 1985년

- (입법 취지) 대도시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지방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안의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이전 할 때와 같이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수도권 안의 법인본사양도차익면제 및 지방이전본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의 세제지원을 추가함

가)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최초 시행

- (법적 근거) 「조감법」 제41조의2
- (인적 대상 요건) 수도권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

- (물적 대상 요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 (이전 지역 요건)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
- (법적 효과)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옥가액 또는 임차보증금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함
 - 사옥가액은 해당 법인이 소유하는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의 장부가액
 - 임차보증금은 해당 법인이 수도권 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사후관리) 원칙적으로 폐업이나 해산한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함
 - 예외적으로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적용 배제함

나) 수도권 안 법인 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최초 시행

- (법적 근거) 「조감법」 제42조의2
-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42조)와 유사하므로 해당 규정의 내용만을 살펴봄
 - 수도권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 해당 법인이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만 고려함(「조감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1항)

- (이전기간)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날(이하 “본점양도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조감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3항)
- (사후관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이 다음의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추징함
 -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 수도권 안에 일정한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일정한 용도 외에 사용한 때(「조감법 시행령」 제36조의2 제5항)
 - 상기의 이전기간 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 또는 임차
 - 본점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제1호에 규정하는 대지와 건물을 제외함)의 취득
 - 본점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차입금의 상환

다)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최초 시행

- (법적 근거) 「조감법」 제43조의2
-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감법」 제43조)와 유사하므로 해당 규정의 내용만을 살펴봄
 - 수도권 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으로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물취득가액의 6%(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3) 1999년 8월

- (입법 취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주요 개정 내용)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폐지 및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하여 과세하는 제도 신설(「조특법」 제60조 제2항 및 제61조 제3항), 지방이전투자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10%로 상향조정, 수도권 외 중소기업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를 3년간은 50% (「조특법」 제62조), 그 후 2년간은 30%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간은 100%, 그 후 5년간은 50%(「조특법」 제63조)를 감면하도록 함

- 간접적인 지원형태인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고, 직접적인 지원형태로 전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4) 1999년 12월

- (입법 취지) 수도권에 소재하는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

- (주요 개정내용)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조특법」 제63조의2) 도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년간은 100%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함(「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999년 8월에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고, 동년 12월에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됨

- 1999년 12월 제도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지금까지 세액감면제도가 유지되고 있음

5) 2000년

- (입법 취지) 수도권 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완화

- (주요 개정내용)

- 세액감면 요건 중에서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 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던 것을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도 포함됨
-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 근무 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의 연간 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하던 것을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에 급여 관련 비율과 근무 인원수 관련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바뀜
 - 감면 요건은 완화되었지만, 감면 규모는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6) 2001, 2003, 2005, 2014년

- 4개년도에는 세제감면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업종제한 등을 규정하게 되었음
 - 2001년에는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하였음
 - 2003년에는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하였음
 - 2005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하였음
 - 2014년에는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을 제외하였음

7) 2004년

- 임원의 50%가 이전하는 요건 도입
 - 임원 등 기업의 핵심인력이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8) 2010년

- 감면기간 재설계: 낙후지역 10년간, 그 외 지역 7년간

9) 2011년

- 감면대상소득 조정: 법인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정자산처분익·유가증권처분익·자산수증익 등 영업외 소득은 감면대상소득 계산 시 제외

라. 요건

1) 적용대상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지방이전법인’이라 함)
 -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적용대상임
 - 2003년 개정 시 건설업의 경우 공사현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사는 인원도 적고, 대부분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아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방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없으면서 조세감면만 받는 점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함²⁾
 - 심사대상 규정에는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조특령」 제29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음³⁾

2) 윤충식·장태희·강지현,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p. 779.

3) 소비성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2856 판결에서 온라인연합복권의 시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함)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전공공기관(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주택관리공단, 건설관리공단 등)은 포함됨(「조특령」 제60조의2 제1항, 제9조 제1항)
 - 감면 혜택을 통해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임⁴⁾
- 공장이라 함은 「조특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조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는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함
 - ‘자동차정비공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함
- ‘공장시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말하며,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조심2017중1001, 2017. 6. 12.)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영위기간

-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장시설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조업한 실적이 있어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조업기간에 포함됨

스텝 구축 및 운영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의 일종인 복권발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즉 ‘복권발행업’에는 복권사업자가 자기의 계정과 책임하에 복권을 발행하는 산업활동 뿐만 아니라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 발행의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음

4) 윤충식·장태희·강지현,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p. 779.

-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어야 함

3) 이전 요건

-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2017년 12월 31일 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이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함(「조세특령」 제60조의2 제4항)
- 공장을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선이전 후양도 및 폐쇄와 선양도 후이전 및 폐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음⁵⁾
 - 전자의 경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함
 - 후자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이라 함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제품 중 한 제품만을 생산하는 독립된 공장시설을 완전히 이전하고 당해 공장건물을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하여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것으로 봄(「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3-0···1)

5) 윤충식·장태희·강지현,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pp. 781~782.

-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로 봄(「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3-41…2)
-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선이전 후양도 및 폐쇄와 선양도 후이전 및 폐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전자의 경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 종사인원의 50% 미만인 사무소 포함)로 전환하여야 함
 - 후자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4) 동일 업종 영위

- 공장이전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하기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이전 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여야 함(「조특령」 제60조의2 제16항, 「조특령」 제54조 제2항)
 -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중·소·세·세세 등 5단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4번째 단계까지는 같아야 함

마. 효과: 과세특례

-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세액감면(최초 7년간 100%, 다음 3년간 50%),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분할산입
 - 기간 기산일은 지방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이란 세액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을 의미함(조특, 서면-2016-법인-3520, 2016. 11. 2.)
 -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적용 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판단할 때 그 ‘소득’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대상소득, 즉 「조특법」 제63조의2 제

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을 의미함(조특,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259, 2017. 7. 14.)

- (소결)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개념이 과세관청에서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해석하는 경우와 ‘감면대상소득’으로 해석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96조를 미루어 보면, 감면소득은 해당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공제한 금액임을 알 수 있음
- 반대해석하면, 공제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소득은 소득금액이 되는 것임
- 그렇다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은 적어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됨이 타당하고, 감면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됨
- 따라서 전자의 기준소득이 광범위하고, 감면소득이 기준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text{감면세액} = \text{산출세액} \times \text{감면대상소득/과세표준} \times \text{감면비율}(100\%, 50\%)$

-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적용됨
 - 수도권 인접지역 등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간을 차별화하여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더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조세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과세특례 대상 소득: 감면대상소득⁶⁾

- ① 공장을 이전한 경우: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 ② 본사를 이전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부동산양도차익 등) × 본사 이전비율 × 위탁가공무역 외의 매출비율

6) 법인의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의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됨(예,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자산수증익 등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지급이자 등을 뺀 금액)

-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0'으로 봄)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함(「조특령」 제60조의2 제6항)

〈표 II -5〉 본사이전비율의 계산

※ 본사이전비율: Min[① 이전급여비율, ② 이전인원비율]
 ① 이전급여비율 =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 후 급여 총액/법인 전체인원의 연간 급여총액
 ② 이전인원비율 = 이전본사 근무인원/(이전본사 근무인원+수도권 본사근무인원)
 -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이전인원
 ③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 ①+②(한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 연간 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 근무인원 또는 법인 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하며, 법인의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금액은 급여에서 제외됨(「조특령」 제60조의2 제7항)
- 이전 전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만 해당하며, 이전 이후에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됨

<법규법인 2011-380, 2011. 9. 29>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3년 이상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공장을 건설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조특법」상의 일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장 및 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며,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은 최저한세 적용배제됨

바. 사후관리 및 제재

- (세액감면의 중단) 법인세 감면기간에 임원 중 이전본사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본 조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입법연혁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임원의 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기업의 핵심인력을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
 - 임원의 범위에 관해서는 「조특령」 제60조의2 제8항에 규정되어 있음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병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기타 이상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상시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됨

〈표 II -6〉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2항에 따른 사유별 제재

발생 사유	제재
①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②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③ 수도권에 본사 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본사설치일 또는 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 경우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동 공장에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인하여 감면받은 분에 한함
④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에 상시 근무인원의 50%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50% 이상의 사무소를 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⑤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지역 임원의 비율이 50% 미달하게 된 경우	50% 미달하게 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자료: 관련 규정을 기초로 저자 작성

- (감면받은 세액의 납부) 법인세를 감면받은 지방이전법인이 <표 II-6>의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면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감면받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액의 추징) 공장을 이전한 날부터 5년간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을 받은 지방이전법인에게 <표 II-6>의 ①~③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조특법」 제63조의2 제9항)

사. 조세지출 규모

- 지난 12년간 신고법인 수는 평균적으로 164.3개이며, 평균감면세액은 2906.7억원임
 - 최근 3년 내 평균 약 7천억원 규모로 대폭 상승하였음
 - 2012년(182개, 2,284억원), 2015년(185개, 1,436억원), 2017년(183개, 8,782억원)에 신고법인 수는 거의 유사한데, 감면세액이 2017년에만 급상승하였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감면세액의 전망치는 각각 다소 하락한 6,570억원, 6,83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표 II -7>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개)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전망)	'20년 (전망)
법인세	1,659	1,405	1,436	3,984	8,782	7,597	6,570	6,833
신고법인 수	162	162	185	160	183	173	-	-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II -8〉 「조세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신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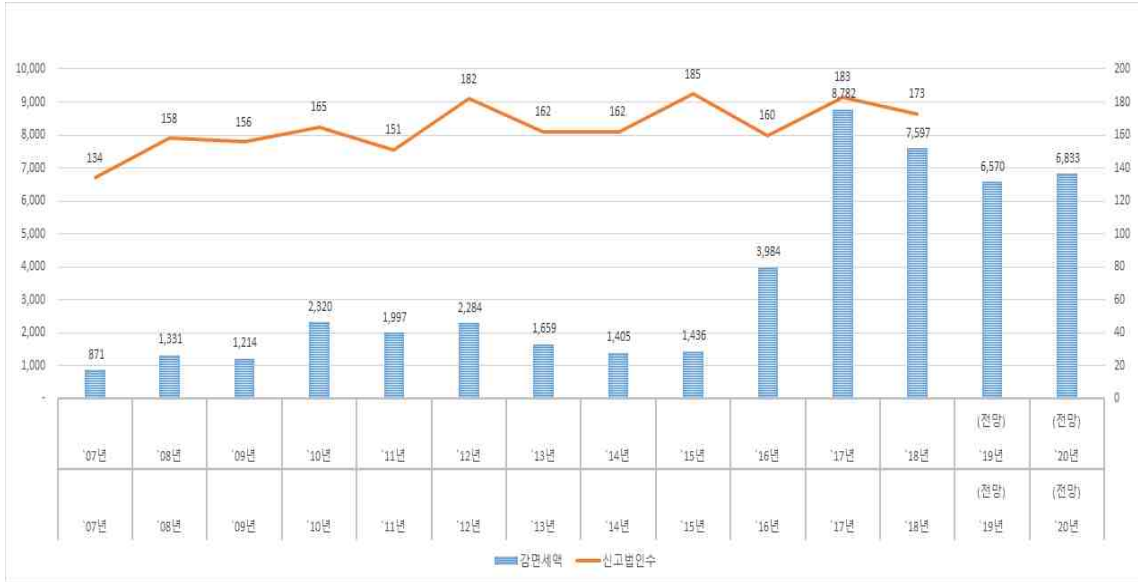
(단위: 개,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공장 이전에 대한 감면	44	7,278	8	21,386	56	13,337	11	40,149	52	18,001	8	57,779	44	6,375	6	44,479	31	10,948	12	57,453	44	14,363	12	44,032
본사 이전에 대한 감면	71	38,638	11	19,837	78	31,787	13	47,794	80	34,866	16	10,707	94	62,290	21	118,836	88	24,318	20	106,969	105	17,329	21	152,680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장에 이전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중소기업		일반법인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수	금액
본사에 이전에 대한 감면	40	12,173	16	32,493	35	6,618	15	36,714	37	9,534	20	33,622	36	12,699	19	66,828	34	10,906	21	48,050	39	11,338	15	23,099
	89	11,031	17	110,007	92	21,417	20	80,207	99	23,789	29	76,567	75	29,216	30	290,373	95	15,952	33	803,259	92	11,709	27	713,570

자료: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3&tblId=DT_133N_833&vw_cd=MT_ZTITLE&list_id=133_13301_200_80_30&seqNo=&lang_mode=ko
&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검색일자: 2020. 3. 11.

[그림 II -1]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세액 및 신고법인 수 추이

(단위: 억원, 개)



자료: <표 II-8>을 기초로 저자 작성

<표 II -9> 「조특법」 제63조와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제도 비교

구분	「조특법」 제63조	「조특법」 제63조의2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의 사업 영위 중소기업(법인, 개인)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의 사업영위 대기업까지 포함(법인)
요건	이전 과밀억제권역 → 과밀억제권역 외 - 이전 후 1년 이내 구공장 양도 - 양도 후 1년(신설은 3년) 내 이전하여 사업 개시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외 - 이전 후 2년 이내 구공장·본사 양도 - 양도 후 2020년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2023년까지 공장·본사 신축하여 사업 개시
업종	이전 후 동일 업종 영위(「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내에서 적용), 단, 제63조의2의 경우 일부 업종 제한(소비성서비스업 등)	
감면소득	이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전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본사 이전 비율에 따라 산출된 소득
세액감면	10년간 감면(7년간 100%, 그다음 3년간 50%) 또는 7년간 감면(5년 100%, 2년 50%)	
세액감면 한도	없음. 이전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세액감면한도를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최저한세	원칙적으로 적용배제	
사후관리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동종사업에서 1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자료: 윤충식·장태희·강지현,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p. 778을 기초로 저자 작성

Ⅲ. 타당성 분석



Ⅲ. 타당성 분석

- 조세특례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 재정 수입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함.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고려하여 심층평가대상의 타당성을 분석하고자 함
- 조세특례 목적의 정당성, 조세특례의 적절성에 관한 부분은 심사대상 규정이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의 중복성과도 구분하여 살펴볼 성질은 아니므로 함께 고려함
- 조세특례제도 운용의 적절성에 관한 부분은 쟁점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규정을 언급하였음

1. (조세특례 목적의 정당성)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분석하면서 정부 역할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 우리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 중에 하나로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따라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은 충분하지만, 개입정도에 대한 부분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야 함
 - 개입정도라 함은 조세특례 수준이나 보조금 지급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7) 헌재 1996. 6. 26. 93헌바2, 판례집 8-1, p. 526.

- 수도권에 형성된 인프라로 인해 기업들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이 구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체가 몰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환경문제와 같은 외부불경제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조절할 필요가 있음. 그 유인수단으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법인 등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등을 활용하고 있음

-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음
 - 조세특례를 최초로 도입한 1977년대부터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음
 - 1982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지역균형발전은 노무현 정권에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당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
 -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대표적인 재정지원수단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음
 - 물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 제정되어 오늘날의 형태에 이르고 있음
 - 「행복도시법」도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함임을 동 규정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음

- 헌법과 법률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을 의미하는지, 지방 간 균형을 의미하는지, 대·중·소도시 간 균형을 의미하는지, 농촌과 도시 간 균형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 또한 경제·교육·인구 등 어떤 측면에서 균형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음
 - 본 심층평가대상이 되는 세액감면제도는 그 요건을 살펴보았을 때 적어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균형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거나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세액감면을 적용함

-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추진된 정책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산업·경제 등을 그 외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 내지 국가균형발전을 제고하는 것이었음
 - 그 일환으로서 과도한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내 법인이나 공장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는 정책을 구체화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두고, 기존의 법인이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유인하기 위한 조세특례제도가 다른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점에서 이전법인과 공장에 대한 조세특례의 목적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역설적인 제도임
 -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 확보 및 이에 따른 세수확보와 재정여력 개선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이라는 점임
 - 현재 수도권 중에서 서울의 산업 현황을 보면, 제조업의 비중은 매우 낮고, 대부분 서비스업이며, 이곳의 종사자 수는 전체 산업의 종사자 수의 80%를 넘음
 - 이는 수도권이전지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량규제의 효과라고도 할 수 있음
 - 따라서 공장이전보다는 본사이전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집중도가 두드러지게 감소하거나 공장이나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오히려 정책의 목적은 타당할 수 있으나 해당 정책을 악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정책 수단 및 사후관리 수단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전국 인구의 49.8%가 전 국토의 11.8%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장기간 지속된 상황임
 - 국세, 지방세, 지역내총생산을 보더라도 수도권이 거의 50% 내외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은행예금과 대출에서는 수도권이 각각 70%,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비수도권 대비 거의 2/3를 차지하는 수준임
 - 수도권 내 사업체 수는 약 47% 수준으로 보합상태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총량규제의 효과로 추정됨

-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전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9.8%가 몰려 살고 있어 인구집중률이 단연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서울공화국’이라는 자조가 나올 정도임. 이에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 인구도 계속 줄고 있어 인구 증가와 산업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상황임⁸⁾
 - 이 정도의 수준은 공장총량제를 비롯한 조세특례제도 등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제도로 인하여 그나마 이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제도마저 없어진다면,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될 수 있음
 - 수도권 집중의 가속화는 수도권에서의 물류비와 토지비, 주거비 등을 폭등시키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소외의식과 일자리 부족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양극화현상을 유발함
 - 수도권은 늘어난 인구와 공장,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책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해지고, 다시 물류비와 토지비, 주거비 등의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비수도권을 고사할 것이며, 심각한 경향 갈등, 남북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마저 있음

8) 현재 2001. 11. 29. 2000헌바78, 판례집 13-2, p. 655.

- 결론적으로 심층평가대상 규정의 목적의 정당성, 정부개입의 근거와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짐
- 그러나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에 있는 지역도 지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유치 및 유지, 일자리도 중요하므로 기존의 수도권 내에 있는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문제될 수 있음
 - 또한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외부불경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장용지를 공원 및 녹지로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장용지를 유지하여 다른 공장을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음. 또한 주택용지로 쉽게 바꾸지도 못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임
 - 따라서 기존지역의 산업과 경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임

〈표 III-1〉 지표별 수도권 집중 현황

(단위: km², 천명, 조원, 개)

지표	2018			2015			2012			
	전국	수도권	집중도	전국	수도권	집중도	전국	수도권	집중도	
국토면적 ¹⁾	100,377	11,856	11.8	100,295	11,830	11.8	100,188	11,818	11.8	
인구 ²⁾	51,607	25,675	49.8	51,015	25,247	49.5	50,200	24,805	49.4	
국세수입 ³⁾	284	141	49.6	208	93	44.7	192	89	46.4	
지방세수입 ⁴⁾	84	47	56.0	71	38	53.5	54	29	53.7	
지역내총생산 ⁵⁾	1,900	985	51.8	1,660	832	50.1	1,445	712	49.3	
산업 ⁶⁾	사업체수	4,103,172	1,934,910	47.2	3,874,167	1,834,652	47.4	3,602,476	1,709,193	47.4
	종사자수	22,235	11,456	51.5	20,889	10,744	51.4	18,569	9,454	50.9
	신설법인수	102,042	62,018	60.8	93,768	57,067	60.9	74,162	45,627	61.5
금융 ⁷⁾	은행예금	1,395	980	70.3	1,164	805	69.2	990	703	71.0
	은행대출	1,600	1,044	65.2	1,347	879	65.3	1,100	751	68.3

주: 1)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28, 검색일자: 2020. 3. 11.
 2)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07&stts_cd=100701&freq=Y, 검색일자: 2020. 3. 11.
 3) 국세청, <https://stats.nts.go.kr/national/major.asp#major>, 2017, 2019, 2-1-3, 검색일자: 2020. 3. 11.
 4)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050&stts_cd=105005&freq=Y, 검색일자: 2020. 3. 11.
 5)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08, 검색일자: 2020. 3. 11.
 6)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publication/publicationThema.do?pubcode=ZY>, 2012, 2015, 2018, 검색일자: 2020. 3. 11.
 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http://ecos.bok.or.kr/>), 검색일자: 2020. 3. 11., 예금은행 지역별 예대금말잔 기준

<표 III-2> 수도권·비수도권의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2006~2018)

(단위: 개, 천명, %)

지역	사업체 구분	2018				2017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국	계	4,103,172	100.0	22,235	100.0	4,019,872	100.0	21,627	100.0	
	단독	3,843,283	93.7	15,591	70.1	3,773,138	93.9	15,259	70.6	
	본사, 본점	52,687	1.3	2,759	12.4	49,732	1.2	2,682	12.4	
	공장, 지사(점), 영업소	207,202	5.0	3,885	17.5	197,002	4.9	3,686	17.0	
수도권	서울	계	823,385	20.1	5,211	23.4	822,863	20.5	5,120	23.7
		단독	764,989	19.9	3,261	20.9	766,329	20.3	3,253	21.3
		본사, 본점	16,740	31.8	1,167	42.3	16,088	32.3	1,122	41.8
		공장, 지사(점), 영업소	41,656	20.1	783	20.2	40,446	20.5	745	20.2
	경기	계	909,032	22.2	5,174	23.3	878,275	21.8	4,954	22.9
		단독	849,570	22.1	3,726	23.9	822,651	21.8	3,590	23.5
		본사, 본점	11,620	22.1	504	18.2	10,666	21.4	479	17.9
		공장, 지사(점), 영업소	47,842	23.1	945	24.3	44,958	22.8	885	24.0
	인천	계	202,493	4.9	1,070	4.8	196,705	4.9	1,034	4.8
		단독	190,942	5.0	792	5.1	185,721	4.9	774	5.1
		본사, 본점	2,139	4.1	111	4.0	2,005	4.0	105	3.9
		공장, 지사(점), 영업소	9,412	4.5	167	4.3	8,979	4.6	155	4.2
소계	계	1,934,910	47.2	11,456	51.5	1,897,843	47.2	11,108	51.4	
	단독	1,805,501	47.0	7,779	49.9	1,774,701	47.0	7,618	49.9	
	본사, 본점	30,499	57.9	1,782	64.6	28,759	57.8	1,706	63.6	
	공장, 지사(점), 영업소	98,910	47.7	1,895	48.8	94,383	47.9	1,784	48.4	
비수도권	계	2,168,262	52.8	10,779	48.5	2,122,029	52.8	10,519	48.6	
	단독	2,037,782	53.0	7,812	50.1	1,998,437	53.0	7,641	50.1	
	본사, 본점	22,188	42.1	977	35.4	20,973	42.2	976	36.4	
	공장, 지사(점), 영업소	108,292	52.3	1,990	51.2	102,619	52.1	1,902	51.6	

<표 III-2>의 계속

지역	사업체 구분	2016				2015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국	계	3,950,169	100.0	21,259	100.0	3,874,146	100.0	20,889	100.0	
	단독	3,714,536	94.0	15,051	70.8	3,649,605	94.2	14,757	70.6	
	본사, 본점	47,107	1.2	2,581	12.1	45,673	1.2	2,514	12.0	
	공장, 지사(점), 영업소	188,526	4.8	3,627	17.1	178,868	4.6	3,618	17.3	
수도권	서울	계	820,156	20.8	5,079	23.9	820,658	21.2	5,109	24.5
		단독	765,609	20.6	3,254	21.6	767,371	21.0	3,268	22.1
		본사, 본점	15,493	32.9	1,072	41.5	15,271	33.4	1,053	41.9
		공장, 지사(점), 영업소	39,054	20.7	754	20.8	38,016	21.3	788	21.8
	경기	계	856,162	21.7	4,803	22.6	827,982	21.4	4,650	22.3
		단독	804,013	21.6	3,491	23.2	779,024	21.3	3,374	22.9
		본사, 본점	9,808	20.8	455	17.6	9,279	20.3	435	17.3
		공장, 지사(점), 영업소	42,341	22.5	856	23.6	39,679	22.2	841	23.2
	인천	계	191,566	4.8	1,005	4.7	186,009	4.8	985	4.7
		단독	181,217	4.9	748	5.0	176,269	4.8	729	4.9
		본사, 본점	1,835	3.9	107	4.1	1,797	3.9	103	4.1
		공장, 지사(점), 영업소	8,514	4.5	150	4.1	7,943	4.4	153	4.2
	소계	계	1,867,884	47.3	10,887	51.2	1,834,649	47.4	10,744	51.4
		단독	1,750,839	47.1	7,492	49.8	1,722,664	47.2	7,372	50.0
		본사, 본점	27,136	57.6	1,634	63.3	26,347	57.7	1,591	63.3
		공장, 지사(점), 영업소	89,909	47.7	1,760	48.5	85,638	47.9	1,781	49.2
비수도권	계	2,082,285	52.7	10,372	48.8	2,039,497	52.6	10,145	48.6	
	단독	1,963,697	52.9	7,559	50.2	1,926,941	52.8	7,385	50.0	
	본사, 본점	19,971	42.4	947	36.7	19,326	42.3	923	36.7	
	공장, 지사(점), 영업소	98,617	52.3	1,867	51.5	93,230	52.1	1,837	50.8	

〈표 III-2〉의 계속

지역	사업체 구분	2014				2013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국	계	3,812,800	100.0	19,900	100.0	3,676,859	100.0	19,173	100.0	
	단독	3,588,232	94.1	14,066	70.7	3,468,383	94.3	13,542	70.6	
	본사, 본점	47,475	1.2	2,422	12.2	44,236	1.2	2,354	12.3	
	공장, 지사(점), 영업소	177,093	4.6	3,412	17.1	164,240	4.5	3,278	17.1	
수도권	서울	계	812,798	21.3	4,740	23.8	785,094	21.4	4,585	23.9
		단독	761,254	21.2	3,070	21.8	736,700	21.2	2,947	21.8
		본사, 본점	15,371	32.4	975	40.3	14,597	33.0	964	40.9
		공장, 지사(점), 영업소	36,173	20.4	695	20.4	33,797	20.6	674	20.6
	경기	계	810,259	21.3	4,472	22.5	773,215	21.0	4,259	22.2
		단독	760,320	21.2	3,231	23.0	727,714	21.0	3,081	22.8
		본사, 본점	9,815	20.7	433	17.9	8,976	20.3	415	17.6
		공장, 지사(점), 영업소	40,124	22.7	808	23.7	36,525	22.2	762	23.3
	인천	계	183,593	4.8	932	4.7	177,988	4.8	896	4.7
		단독	173,666	4.8	688	4.9	169,008	4.9	666	4.9
		본사, 본점	1,979	4.2	99	4.1	1,824	4.1	93	4.0
		공장, 지사(점), 영업소	7,948	4.5	144	4.2	7,156	4.4	137	4.2
	소계	계	1,806,650	47.4	10,143	51.0	1,736,297	47.2	9,740	50.8
		단독	1,695,240	47.2	6,989	49.7	1,633,422	47.1	6,694	49.4
		본사, 본점	27,165	57.2	1,507	62.2	25,397	57.4	1,472	62.6
		공장, 지사(점), 영업소	84,245	47.6	1,647	48.3	77,478	47.2	1,573	48.0
비수도권	계	2,006,150	52.6	9,756	49.0	1,940,562	52.8	9,433	49.2	
	단독	1,892,992	52.8	7,077	50.3	1,834,961	52.9	6,848	50.6	
	본사, 본점	20,310	42.8	915	37.8	18,839	42.6	881	37.4	
	공장, 지사(점), 영업소	92,848	52.4	1,765	51.7	86,762	52.8	1,705	52.0	

<표 III-2>의 계속

지역	사업체 구분	2012				2011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국	계	3,602,461	100.0	18,569	100.0	3,470,023	100.0	18,093	100.0	
	단독	3,403,515	94.5	13,211	71.1	3,286,595	94.7	12,885	71.2	
	본사, 본점	42,244	1.2	2,232	12.0	41,617	1.2	2,146	11.9	
	공장, 지사(점), 영업소	156,702	4.3	3,127	16.8	141,811	4.1	3,062	16.9	
수도권	서울	계	780,887	21.7	4,541	24.5	752,285	21.7	4,498	24.9
		단독	733,738	21.6	2,973	22.5	707,476	21.5	2,932	22.8
		본사, 본점	14,273	33.8	907	40.6	14,662	35.2	920	42.9
		공장, 지사(점), 영업소	32,876	21.0	662	21.2	30,147	21.3	646	21.1
	경기	계	751,107	20.8	4,041	21.8	720,850	20.8	3,920	21.7
		단독	708,631	20.8	2,952	22.3	682,162	20.8	2,867	22.3
		본사, 본점	8,521	20.2	397	17.8	8,141	19.6	350	16.3
		공장, 지사(점), 영업소	33,955	21.7	693	22.2	30,547	21.5	703	23.0
	인천	계	177,196	4.9	871	4.7	169,419	4.9	848	4.7
		단독	168,592	5.0	649	4.9	161,709	4.9	638	4.9
		본사, 본점	1,772	4.2	96	4.3	1,670	4.0	85	4.0
		공장, 지사(점), 영업소	6,832	4.4	127	4.1	6,040	4.3	125	4.1
	소계	계	1,709,190	47.4	9,454	50.9	1,642,554	47.3	9,267	51.2
		단독	1,610,961	47.3	6,573	49.8	1,551,347	47.2	6,437	50.0
		본사, 본점	24,566	58.2	1,400	62.7	24,473	58.8	1,355	63.1
		공장, 지사(점), 영업소	73,663	47.0	1,481	47.4	66,734	47.1	1,475	48.2
비수도권	계	1,893,271	52.6	9,115	49.1	1,827,469	52.7	8,826	48.8	
	단독	1,792,554	52.7	6,638	50.2	1,735,248	52.8	6,448	50.0	
	본사, 본점	17,678	41.8	832	37.3	17,144	41.2	791	36.9	
	공장, 지사(점), 영업소	83,039	53.0	1,645	52.6	75,077	52.9	1,588	51.8	

<표 III-2>의 계속

지역	사업체 구분	2010				2009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국	계	3,355,459	100.0	17,647	100.0	3,293,551	100.0	16,818	100.0	
	단독	3,180,319	94.8	12,434	70.5	3,129,514	95.0	12,215	72.6	
	본사, 본점	41,222	1.2	2,293	13.0	35,764	1.1	1,888	11.2	
	공장, 지사(점), 영업소	133,918	4.0	2,921	16.6	128,273	3.9	2,716	16.1	
수도권	서울	계	729,731	21.7	4,487	25.4	723,086	22.0	4,177	24.8
		단독	686,701	21.6	2,836	22.8	681,486	21.8	2,779	22.8
		본사, 본점	14,272	34.6	996	43.4	12,488	34.9	807	42.7
		공장, 지사(점), 영업소	28,758	21.5	655	22.4	29,112	22.7	591	21.8
	경기	계	687,021	20.5	3,749	21.2	660,007	20.0	3,559	21.2
		단독	651,257	20.5	2,731	22.0	625,628	20.0	2,642	21.6
		본사, 본점	8,299	20.1	379	16.6	7,160	20.0	315	16.7
		공장, 지사(점), 영업소	27,465	20.5	639	21.9	27,219	21.2	602	22.2
	인천	계	163,653	4.9	828	4.7	159,595	4.8	790	4.7
		단독	156,179	4.9	616	5.0	152,526	4.9	603	4.9
		본사, 본점	1,695	4.1	94	4.1	1,494	4.2	79	4.2
		공장, 지사(점), 영업소	5,779	4.3	118	4.0	5,575	4.3	108	4.0
	소계	계	1,580,405	47.1	9,064	51.4	1,542,688	46.8	8,526	50.7
		단독	1,494,137	47.0	6,184	49.7	1,459,640	46.6	6,024	49.3
		본사, 본점	24,266	58.9	1,469	64.1	21,142	59.1	1,201	63.6
		공장, 지사(점), 영업소	62,002	46.3	1,412	48.3	61,906	48.3	1,301	47.9
비수도권	계	1,775,054	52.9	8,583	48.6	1,750,863	53.2	8,292	49.3	
	단독	1,686,182	53.0	6,250	50.3	1,669,874	53.4	6,190	50.7	
	본사, 본점	16,956	41.1	824	35.9	14,622	40.9	687	36.4	
	공장, 지사(점), 영업소	71,916	53.7	1,509	51.7	66,367	51.7	1,414	52.1	

<표 III-2>의 계속

지역	사업체 구분	2008				2007				
		사업체		종사자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수	비중	
전국	계	3,264,776	100.0	16,288	100.0	3,262,921	100.0	15,944	100.0	
	단독	3,115,838	95.4	12,006	73.7	3,117,295	95.5	11,841	74.3	
	본사, 본점	30,257	0.9	1,733	10.6	27,705	0.8	1,633	10.2	
	공장, 지사(점), 영업소	118,681	3.6	2,550	15.7	117,921	3.6	2,470	15.5	
수도권	서울	계	719,687	22.0	4,079	25.0	728,614	22.3	4,006	25.1
		단독	682,828	21.9	2,802	23.3	692,120	22.2	2,785	23.5
		본사, 본점	10,546	34.9	730	42.1	9,788	35.3	700	42.9
		공장, 지사(점), 영업소	26,313	22.2	547	21.5	26,706	22.6	520	21.0
	경기	계	651,427	20.0	3,439	21.1	640,490	19.6	3,335	20.9
		단독	619,520	19.9	2,582	21.5	610,328	19.6	2,518	21.3
		본사, 본점	6,152	20.3	284	16.4	5,444	19.6	275	16.8
		공장, 지사(점), 영업소	25,755	21.7	572	22.4	24,718	21.0	542	21.9
	인천	계	157,979	4.8	765	4.7	158,698	4.9	766	4.8
		단독	151,355	4.9	585	4.9	152,097	4.9	584	4.9
		본사, 본점	1,236	4.1	75	4.3	1,171	4.2	78	4.8
		공장, 지사(점), 영업소	5,388	4.5	105	4.1	5,430	4.6	104	4.2
	소계	계	1,529,093	46.8	8,283	50.9	1,527,802	46.8	8,107	50.8
		단독	1,453,703	46.7	5,970	49.7	1,454,545	46.7	5,888	49.7
		본사, 본점	17,934	59.3	1,089	62.8	16,403	59.2	1,053	64.5
		공장, 지사(점), 영업소	57,456	48.4	1,224	48.0	56,854	48.2	1,165	47.2
비수도권	계	1,735,683	53.2	8,005	49.1	1,735,119	53.2	7,837	49.2	
	단독	1,662,135	53.3	6,036	50.3	1,662,750	53.3	5,953	50.3	
	본사, 본점	12,323	40.7	644	37.2	11,302	40.8	579	35.5	
	공장, 지사(점), 영업소	61,225	51.6	1,325	52.0	61,067	51.8	1,305	52.8	

<표 III-2>의 계속

지역	사업체구분	2006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	수	비중	
전국	계	3,226,565	100.0	15,436	100.0	
	단독	3,087,451	95.7	11,445	74.1	
	본사, 본점	27,323	0.8	1,610	10.4	
	공장, 지사(점), 영업소	111,791	3.5	2,380	15.4	
수도권	서울	계	733,759	22.7	3,895	25.2
		단독	698,011	22.6	2,713	23.7
		본사, 본점	9,875	36.1	682	42.4
		공장, 지사(점), 영업소	25,873	23.1	500	21.0
	경기	계	618,765	19.2	3,165	20.5
		단독	590,593	19.1	2,384	20.8
		본사, 본점	5,360	19.6	282	17.5
		공장, 지사(점), 영업소	22,812	20.4	498	20.9
	인천	계	155,433	4.8	745	4.8
		단독	149,133	4.8	568	5.0
		본사, 본점	1,121	4.1	74	4.6
		공장, 지사(점), 영업소	5,179	4.6	104	4.4
소계	계	1,507,957	46.7	7,805	50.6	
	단독	1,437,737	46.6	5,665	49.5	
	본사, 본점	16,356	59.9	1,038	64.5	
	공장, 지사(점), 영업소	53,864	48.2	1,102	46.3	
비수도권	계	1,718,608	53.3	7,631	49.4	
	단독	1,649,714	53.4	5,781	50.5	
	본사, 본점	10,967	40.1	572	35.5	
	공장, 지사(점), 영업소	57,927	51.8	1,279	53.7	

주: 「조특법」상 세액감면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업, 건설업, 해운중개업, 무점포소매업은 제외하였으며, 소비성서비스업은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 (조세특례의 적절성)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지원을 선택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성적 분석

- 「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과 조세지출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있을 수 있음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세지원과 재정지원이 있을 수 있으며, 과도한 지원은 오히려 비수혜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하나의 지원만 있는 것이 타당하고, 설령 두 지원이 모두 이루어지더라도 전체를 합쳤을 때 적정선이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세지원과 재정지원과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함

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 개관

- (정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함(「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
- (근거규정)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 및 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제도연혁) 국가균형발전법의 제정과 함께 지방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2004년부터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보조금 시행
 - 지방 신설 및 증설기업에 대한 보조금(2011년),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조금(2012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2014년)으로 확대됨

-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요건 등은 심층평가의 대상과 동일하게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에 관한 부분만 살펴봄
- (지원 대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업(매매·중개·임대),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판매업, 해운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투자사업장을 인수 또는 합병하여 단순히 소유관계가 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요건)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수도권 내 대상 지역에서 3년 이상 지원 대상 업종을 영위하며,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기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수도권 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
 - 기존 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할 것
 -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 투자금액이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것
 -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표 III-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한도

지원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매칭비율 (국비:지방비)
수도권 인접지역	(입지) 0% (설비) 6%	(입지) 0% (설비) 8%	(입지) 9% (설비) 11%	45:55
일반지역	(입지) 0% (설비) 8%	(입지) 10% (설비) 11%	(입지) 30% (설비) 14%	65:35
지원우대 지역	(입지) 0% (설비) 11%	(입지) 20% (설비) 19%	(입지) 40% (설비) 24%	75:25
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 등	(입지) 0% (설비) 14%	(입지) 25% (설비) 24%	(입지) 50% (설비) 34%	75:2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지방투자보조금으로 민간투자 1조 4천여억원 견인 지역일자리 3,350개 창출 유도」, 보도자료, 2019. 11. 26.,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2376, 검색일자: 2020. 4. 2.

- (지원 내용) 지방투자기업의 입지 및 설비 투자에 대해 지역별·기업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함
- (지원 절차)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투자기업을 유치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해진 매칭비율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임
- (전체 지방투자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075개 기업에 1조 1,088억원을 지원하여, 지방투자 20조 3,149억원 및 일자리 54,395개 창출⁹⁾
 - 2019년 기준, 지원 규모를 보면 71개 기업에 대해 총 2,722억원(국비 2,101억원, 지방비 621억원)에 이르고 기업들의 투자기간(최장 3년) 중 지방투자 1조 4,588억원, 일자리 3,350개가 창출됨¹⁰⁾

나.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조세지원과의 중복성 여부

- (심층대상 제도와의 중복성)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원방법, 중점목표, 중점대상 등이 본 제도와 비교할 때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제도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정지원인 것으로 판단됨¹¹⁾
 - 2017년 심층평가 당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세지원을 수혜받은 251개 기업 중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11개(4%)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됨
-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 한도에서 매칭비율을 보면, 국비가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지원 혜택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음

9) 산업통상자원부, 『2017~2018 산업통상자원백서 - 산업편-』, 2018, p. 217.

10)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지방투자보조금으로 민간투자 1조 4천여억원 견인 지역일자리 3,350개 창출 유도」, 보도자료, 2019. 11. 26., http://www.motie.go.kr/motie/nc/press/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2376, 검색일자: 2020. 4. 2.

11) 기획재정부,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Ⅶ)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2017, p. 120.

3. (조세특례제도 운용의 적절성) 조세특례제도 대상 설정, 감면 방법 등 조세특례제도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가. 감면 요건

1) 문제점

-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를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취지의 제도이고, 감면세액도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요건과 이전요건을 달리 규정하여 제도 운영의 복잡성을 야기하고 납세자들의 접근성을 어렵게 함
 - 수도권으로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라면 개인이나 법인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이나 본사 등의 이전을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규모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게 더 유리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타당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대기업이 이전하는 것이 일부 중소기업을 이전하는 것보다는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굳이 중소기업만을 특별히 별도의 규정에서 다루면서 유리한 감면요건을 적용할 만한 실익이 있는지 재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음

- 이전지역 요건 또한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을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양한 측면에서 수도권 비대화를 억제하는 것이므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지방광역시(광주광역시)에서 성장관리권역(경기도 안산시)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었으며, 2011년 12월 31일 「조특법」 개정시 이를 보완하여 수도권 밖에 있는 공장을 수도권(지방자치단체이더라도)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에서 제외하였던 적이 있음

- (업종별 제한)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업종별 제한을 둔 취지(소비성서비스, 지방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거의 없는 경우 등)를 고려할 때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요건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업종별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는 「조특법」 제5조 제1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소비성 서비스업만 제외될 뿐이며, 기타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임원의 이진율 50%와 관련하여, 임원만 이전하면 된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보임
 - 실질적인 정책목적 중 하나로서 수도권인구집중 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이전비율만을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봄
 - 따라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 및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도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대도시 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세대 전원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1978년에 시행한 적이 있음)
 - 이때 이주비용이나 주거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2) 개선방안

가) 장기적인 개선방안

- 취지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감면 요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이를 개선하여 두 규정을 통합함으로써 감면규정의 간소화 및 납세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나) 단기적인 개선방안

- 업종별 제한을 「조특법」 제63조의2의 경우에만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조특법」 제63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전지역 요건과 관련하여 수도권 정비 및 집중 억제와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심사대상 조문의 핵심목적이므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한정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확대 적용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감면 내용

1) 세액감면

가) 문제점

- 현행 「조특법」은 성장잠재력 확충, 중소기업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중산층 지원 등이라는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지원항목에 적용되는 감면비율도 실제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¹²⁾
- 처음 일정 기간 동안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감면비율은 100%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감면비율이 50%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다른 규정의 세액과 형평성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선택하는 이전 지역을 보면 수도권에 최인접한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전하는 경향이 있음¹³⁾
 -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으로 이전을 많이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기만 할 뿐이며, 수도권 인접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장려하지 못하는 현실임
 - 서울지역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기업은 서울과 경기의 접경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음
 - 경기지역에서 타 시도로 이전한 기업도 접경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있음

12)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1, p. 215.

13) 산업연구원 용역보고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요인 및 이전수요 조사』, 산업연구원, 2016, p. 64.

-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므로 인구수나 환경 유해 요소가 감소하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동 규정의 효과가 미비할 수 있음

나) 개선방안

-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유사한 방식인 수도권에서 떨어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더 높은 감면세액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수도권 인접지역, 일반 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감면세액을 차등 적용
 - 지역 간 기업이동성이 원천적으로 낮으며, 이전을 하더라도 근거리지역으로 이전하며, 대기업보다는 소규모기업의 이동유연성이 높고, 업력이 낮은 기업일 수록 이동유연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원거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외연을 점진적으로 확장하여 최종적으로 수도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고속도로나 철도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지역으로 일부 기업이 이전한다고 하여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2) 양도차익

가) 문제점

-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 조문은 세액공제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이전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등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를 간과할 수 없음
 - 지방이전이라는 하나의 사실 관계는 사전적으로 기존의 공장이나 본사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사후에 발생하는 이전 지역에서의 소득에 대한 지원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이중에 하나만 살펴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결집효과에 따른 조세부담의 집중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게다가 평가대상규정인 「조특법」 제63조의2 제5항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은 「조특법」 제60조를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조특법」 제63조에는 준용규정이 없음
- 기업의 경우 지방이전을 실현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공장 및 본사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인한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 증가분이라는 점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감면이 있어야 지방이전의 근본적인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음¹⁴⁾
-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부동산가격의 등락 여부에 따라 시대마다 달리 적용되었으며, <표 III-4>는 현행 「조특법」상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특례를 나타내고 있음
- 1980년대 말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SOC투자사업 시 공공용지 및 국민주택용지 수용 등을 위하여 100% 감면이 많이 활용되었으나, 지가상승과 보상가의 현실화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100% 감면이 지나친 특혜를 낳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게 되었다는 반성하에 축소되었음. 이후 현재 농어업 부문 지원, 임대주택사업 지원 등에 한하여 100% 감면을 적용하고, 기업구조조정 등에 50% 감면을, 이 외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하는 제도로 전환되었음
 - 현재 지방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도차익을 일정 기간 동안 과세이연하고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를 5년간 과세이연하는 것은 결코 높은 수준의 세제지원이라고 할 수 없으며, 향후 양도차익 지원을 세액감면 등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¹⁵⁾

14)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1, pp. 218~219.

15)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1, pp. 218~219.

<표 III-4> 현행 「조특법」상 양도차익 감면제도

감면 수준	해당 규정	감면내용
비과세 (100% 감면)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주주의 양도대금 중 법인에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이월과세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이월과세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양도차익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 감면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제9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제98조의7[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10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 6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미분양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60~100% 감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일정율 세액 감면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의 20%(채권수령분은 25%, 3년 만기보유특약 시 40%, 5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시 50%)감면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의 50%(20년 이전 취득분은 30%) 감면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50% 감면

〈표 III-4〉의 계속

감면 수준	해당 규정	감면내용
이월 과세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과세 이연	제33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인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50%감면 또는 과세이연
	제34조[기업의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차익 중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인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거주자의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이전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설립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처분시점까지 과세이연
	제38조의3[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제46조[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 양도차익은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차익에 대하여 내국법인인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거주자인 경우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차익에 대하여 내국법인인 경우 2년 거치 2년 분할 익금산입, 거주자인 경우 2년 거치 2년 분할 납부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양도차익중 대토보상분에 대하여 과세이연
	제85조의2[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차익에 대하여 내국법인인 경우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거주자인 경우 과세이연
	제85조의3[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양도차익을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이연
	제85조의4[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16[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 특례]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1년 이내에 대체취득 시 양도차익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기타 특례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소득세율을 20%로 적용하거나 사업소득 계산규정 준용
	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적용, 세율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자료: 관련 규정을 기초로 저자 작성

나) 개선방안

- 종합적인 측면에서 조세지출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감면 수준은 지금처럼 과세이연을 통한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방이전기업이 개별 기업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의 5년간 과세이연 및 5년간 분할납부 방식과 50% 세액감면 항목을 병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¹⁶⁾
 - 전자의 혼합방식은 실제로 양도소득에 대한 50% 감면과 유사한 조세지출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50% 세액감면제도도 고려할 수 있음

3) 감면한도 설정

가) 문제점

- 기간감면제도 중 감사원의 감사보고서¹⁷⁾에서 심층평가대상 규정과 비교대상으로 삼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를 비교하면 <표 III-5>와 같음
 - 두 규정에 따른 제도는 다음의 이유로 인해 비교대상이 되기 어려움
 - 첫째,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은 헌법적 요청에 따른 감면이며, 제121조의8에 따른 감면은 그렇지 않음. 둘째, 전자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수혜대상이지만 후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에 입주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이 부여됨. 셋째, 전자는 감면이 적절하지 않은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모든 업종이 감면대상이어서 형평성의 문제는 적으나 후자는 특정 업종에 한정되어 있음

16)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1, p. 222.

17) 감사원, 「감사보고서-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2020.

〈표 III-5〉 주요 기간감면제도 간의 비교

구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비교대상)
근거규정	「조특법」 제63조의2	「조특법」 제121조의8
도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역)균형발전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산업, 경제 등을 그 외의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것 - 지역경제 활성화(부수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 - 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 - 낙후지역경제 활성화 - 특정 지역을 지원하는 것임
수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한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 - 2019년 11월 30일 현재 입주한 기업은 122개임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대상소득/과세표준×감면비율(7년 100%, 3년 50%) - 감면대상소득=(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부동산양도차익,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 × 본사이전비율 × 위탁가공무역 외의 매출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3년), 50%(2년) 감면 -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익금산입 제한도 없음
감면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교대상과 같은 감면한도는 없음 -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으며, 본사이전비율도 고려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투자누계액의 50% +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함 - 투자누계액은 해당 특구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의 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과 건설 중인 자산 및 무형자산(특허권 등)을 말함 - 감면한도를 50%로 설정한 것과 관련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국가산업단지이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50% 또는 100%의 비용보조를 받음 (동법 시행령 제26조)

<표 III-5>의 계속

구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비교대상)
업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므로 업종간 불평등은 거의 없음 - 이전 이후에 추가업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이전지역 경제효과와 관련을 짓는다면 추가업종을 통해서 고용이 증대되었을 시 그 업종에 대해서도 일정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가 업종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음 - 따라서 제도의 주요 취지인 수도권의 집중도 완화가 강조되어야 하며, 지역경제활성화는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다시 말해서 우선적으로 수도권지역의 집중도를 억제하는 것이 우선이며, 부수적 효과로서 지역경제발전이 따르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만 해당 - 다른 업종이 해당 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업종 간 차별이 있으므로 세제혜택을 제한(감면한도설정)하는 것도 필요함
기업규모 제한	법인(없음)	기업(없음)
이전지역	<p>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밖 전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밖 어디를 가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지역에 따른 형평성은 유지되고 있음 - 다만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은 지적사항이 될 수 있음 - 국가산업단지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함 	<p>전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서 기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 - 전출지역 간 형평성문제가 있음(수도권과밀억제권역 출신인 경우 양 제도 중 선택할 수 있음) - 따라서 입주지역이 중점사항이므로 전출지역과 상관없이 동 규정의 수혜만 받아야 함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의 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 - 폐업이나 해산한 경우 그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징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에 사업을 미개시한 경우 그날부터 소급하여 4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추징

<표 III-5>의 계속

구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비교대상)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에 본사 또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설치일부 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추정 - 본사를 이전하였으나 수도권에 상시 근무인원 중 50% 이상을 사무소에 둔 경우 해당일부 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추정 -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지역 임원의 비율이 50%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일부 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추정 	
감면액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3,984억원 - 2017년 8,782억원 - 2018년 7,598억원 - 감사원보고서는 감면 규모만을 단순히 비교한 것으로서 이를 두고 과도한 감면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대부분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감면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복배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5억원 - 2017년 4억원 - 2018년 0.3억원
지역경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주는 것인데, 과연 고용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감사보고서」 45쪽에서 감면사례를 구체성이 없음, 법인세 감면액이 19억원에 불과하다고 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적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감면액은 적어도 매출이 많을 수도 있고,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자료: 근거 규정을 기초로 저자 작성

□ 감면세액에 대한 한도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도 다른 규정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음

○ 우선적으로 유의할 점은 법인세 전액 100%라는 것은 이전한 해당 공장 및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산출세액이 전액 감면되려면 감면대상소득과 과세표준이 동일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상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모든 소득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이와 달리 비교대상 규정은 제외되는 감면대상소득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임
- 그런 점에서 비교대상 규정은 감면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던 것으로 판단됨
- 지방이전법인의 법인세 세액감면의 법적 성격은 일정 기간 동안에 감면이 이루어지므로 ‘기간감면’의 성격을 가지며, 「조특법」상 이와 동일한 성격의 감면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음. 즉 감면방식만 동일할 뿐, 목적이나 제반 여건을 따지면 결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음.¹⁸⁾ 따라서 이를 단순히 비교하여 감면한도를 두지 않은 것을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 비교대상 규정은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면한도를 설정하였음[투자누계액의 50%+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예외, 2,000만원)]
 - 투자누계액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하며, <표 III-6>과 같음

<표 III-6>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1.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 자산
2. 해당 특구 등에 소재하거나 해당 특구 등에서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자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무형자산

- 또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감면대상소득에 한정하여 그에 대한 감면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감면한도를 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음
 -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와 비교하면 이들은 면제요건을 충족하면 무기한으로 감면된다는 점에서 ‘일반감면’이라고 할 수 있고, 두 경우에는 면제소득한도가 법정화되어 있음

18) 감사원, 「감사보고서 -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2020, p. 39 [표 31]에서 유사제도라고 하면서, 「조특법」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감면한도 있음)과 비교하여 지방이전특례제도(감면한도 없음)를 과도하게 세제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물론 일반감면이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에 대한 법인세는 감면비율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면제소득한도가 없지만,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 중 영농조합법인의 그 외 사업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면제소득한도가 범정화되어 있음
- 이는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전체가 아니라 식량작물재배업에 한정하여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비율을 100% 적용하고 별도의 감면한도를 두지 않은 것은 심층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정과도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는 것임

〈표 III-7〉 「조특법」상 기간감면제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100%, 2년간 50% • 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 - 5년간, 50% • 제99조의9(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지역 없음 - 5년간 100%, 2년간 50% - 감소된 상시근로자 수 •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 50%, 40%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 제121조의8(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100%, 2년간 50% • 제121조의9(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100%, 2년간 50%, 지정해제, 입주계약해지, 입주기업 폐업, 미투자 시 감면세액 추정 • 제121조의17(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100%, 2년간 50% 또는 3년간 50%, 2년간 25%(사업종류에 따라 다름) • 제121조의20(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100%, 2년간 50%, 미투자 시 감면세액 추정 • 제121조의21(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100%, 2년간 50%, 미투자 시 감면세액 추정 • 제121조의22(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간 100%, 2년간 50%

- 따라서 다른 규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다만,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점, 지방이전 후 투자 및 고용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합리

적인 감면한도 설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감면한도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내 다른 규정과 정합적으로 설정되어야 함

-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대상소득의 한도와 관련하여,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에 따르면, 감면대상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 및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그러나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개념이며, 이를 어느 것을 한도로 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함
 - 「조특법」 제63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 감면대상소득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과도 상충됨
 - 또한 본사 이전의 경우 감면대상소득의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면서, 공장과 본사이전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도 상충됨

나) 개선방안

- 「조특법」상 유사 감면사례 중에서 감면한도를 도입한 규정의 경우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조세감면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에 도입되었으며, 해당 입법자료를 통해서는 한도설정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의 감면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입법자가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는 여러 정책적 수단 중에 하나이지만 제121조의8에 따른 감면은 전혀 그렇지 않으며, 전자의 경우에는 비례원칙을 고려하여 더 낮은 감면수준을 유지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감면을 제도화하였다면 이는 과도하기 때문에 위헌 내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수도권기업이 조세감면을 위해 과도하게 지방이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현상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감면수준에도 불구하고 입법의도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면수준을 축소한다면,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특정 기업에 감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측면과 감면세액 산정 시 투자 및 고용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등 제도 운영상 부작용이 나타났음은 명백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감면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다. 감면 방법

-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에도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등의 지원으로 나눌 수 있음. 세액 및 소득공제는 직접적인 공제이며 준비금 등은 과세이연효과가 발생하므로 간접적인 공제라고 할 수 있고, 두 제도는 장단점이 있음

〈표 III-8〉 조세지원제도의 유형과 장단점

구분	장점	단점	유형 예시
직접지원	- 활용방식이 편리함 - 효과의 직접성	- 세수손실이 당장 큼	소득공제, 세액공제
간접지원	- 세부담의 이연으로 세수 손실이 당장 크지 않음	- 기장이 어려움 - 효과가 당장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음	과세이연, 분할납부, 준비금

자료: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1, p. 214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 과세이연과 분할납부의 혼합방식을 취하고 있는 「조특법」 제60조는 본 심사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정(세액감면방식)에서도 준용하므로 조세지원방식에 있어서 비교할 필요가 있음¹⁹⁾
 - 과세이연과 분할납부의 혼합방식인 경우, 5년 간의 과세이연은 현재의 일반 기업 담보대출금리를 연 6%로 가정하면, 전체 30% 정도의 이자소득에 상응하는 조세지원을 해주는 것과 동일함

19)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1, p. 214.

- 5년간의 분할납부도 매년 동일액을 분할로 납부한다면 최소 12% 정도의 이자소득에 상응하는 조세지원을 해주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양도소득에 대한 50% 감면과 동일한 규모의 세수손실이 발생함

- 조세지원의 바람직한 방향은 가능한 간편하되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어야 함²⁰⁾
 - 지방이전기업들은 그 형태와 규모 및 업종별로 다양하다는 점과 개별 기업이 처한 재무여건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정에 맞게 조세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음
 - 그러나 정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지원정책이 백화점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으며, 이는 납세협력비용을 증대시키고 세제를 복잡하게 하여 조세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함

- 본 심사평가의 대상이 되는 규정은 1977년 제도 도입 시기에 지방시설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방식과 공장을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되던 세액공제제도가 공존하였음
 - 1985년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을 위한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과 지방투자 세액공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가 공존하였음
 - 1999년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폐합되면서 간접지원방식인 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세액감면제도만 지금까지 존재함

- 따라서 현행 「조특법」 제63조의2에 의한 조세지원제도가 세액공제제도로 일원화되었다는 점은 과거에 공장과 본사로 나누어져서 다른 방식으로 조세지원이 이루어졌던 때보다 간소화되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음

20)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1, pp. 214~215.

라. 사후관리

1) 제도 개요

<표 III-9> 「조특법」상 지방이전기업의 사후관리제도 개요

구분	제60조	제61조	제63조	제63조의2
적용 대상	- 대도시 내 공장시설 갖추고 사업을 한 내국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	- 공장시설 갖추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3년 이상 본점·공장시설 갖추고 사업영위
이전 요건	- 선 지방이전 후 공장양도(2년 내) - 선 공장양도 후 기존 공장 취득(1년 내) - 선 공장양도 후 지방이전(3년 내)	- 선 지방이전 후 본사양도(2년 내) - 선 본사양도 후 지방이전(3년 내)	- 선 지방이전 후 공장양도(1년 내) - 선 공장양도 후 지방이전(1년, 3년 내)	- 선 지방이전 후 공장·본사양도(2년 내) - 선 공장·본사양도 후 지방이전(일정기한내)
사후 관리	- 지방공장 취득 후 사업 미개시 - 사업의 폐업·해산	- 지방 미이전 - 과밀억제권역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 존재 - 본점 처분대금용도 외 사용 - 사업의 폐업·해산	- 3년 내 폐업·해산 - 이전 후 사업 미개시 - 과밀억제권역 이전 공장과 같은 제품의 생산공장·본사설치	- 3년내 폐업·해산 - 이전 후 사업 미개시 - 수도권에 이전공장과 같은 제품 생산 공장·본사 설치 - 본사이전의 경우 수도권에 기준 이상 사무소 존재 - 이전본사 임원비율이 50% 미만
제재	-	-	- 사유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일정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이자를 납부해야 함	- 사유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일정한 법인세와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자상당액 추징 - 임원비율 위반 시 사유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법인세 감면 박탈

자료: 관련 규정을 기초로 저자 작성

2) 문제점

- 「조특법」의 입법적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세지원제도마다 「조특법」에 과세감면의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적용범위와 요건을 일일이 열거하여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입법론적으로 불가능한 한계라 할 수 있음²¹⁾
 - 이러한 점으로 인해 해당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감면을 승인하는 담당 세무 공무원,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 등의 해석차이로 인하여 다양한 분쟁이 있을 수 있음²²⁾
 -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세지원제도의 입법적 한계이며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중국에는 세수누출로 이어질 수 있음
 - 본 심사평가의 대상이 되는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와 같은 직접지원방식인 세액감면 규정은 조세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강력한 사후관리 규정이 필요함

- 중복혜택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는 2년 또는 3년 간 사업을 영위했던 것을 신청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폐업하고 바로 개업을 하여 2년이나 3년간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중복혜택의 우려는 반감됨
 - 이전지역에서 3년 내에 폐업이나 해산하는 경우 추정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중복혜택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음
 - 사업상·경제상 어려움으로 폐업 또는 해산하는 경우까지 추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또한 3년이 지난 뒤에 폐업이나 해산을 하고, 다시 동일 업종을 수도권지역에 개업하여 2년이나 3년 간 사업을 영위하고 다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음
 - 그러나 「조특법」 제6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감면기간 내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이전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일정한 세액을 소득세나 법인세로 납부해야 함²³⁾

21)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을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1, p. 219.

22)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을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1, p. 219.

23) 해당 규정에 따라 추정된 사례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다만, 이 판례에서는 추정규정의 적용시기 이전에 공장을 이전하였으므로,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음.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는 수도권 이전에 따른 법인세액 감면

-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는 수도권에 본사 또는 제1항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음
- 물론 이렇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에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다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 세제혜택을 못 받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없음
- 디지털기업이나 벤처기업 등 이전이 용이한 업종인 경우 충분히 악용할 수 있음

3) 개선방안

- 조세특례 적용 대상인 지방이전기업이 사후에 폐업 후 다시 사업을 하거나 횡수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중복으로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사후관리 요건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보장이라는 조세법률주의 테두리 안에서 강화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무수행지침에 해당 요건의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²⁴⁾
 - 다만 법률·시행령·시행규칙보다는 국세청 업무수행지침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세법 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의해야 함
- 중복혜택과 관련하여 이전지역에서는 과거에 혜택을 받은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마. 일몰 규정

- 「조특법」상 일몰규정을 두어 일정시점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되도록 한 취지는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와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개별 조세지원제도가 항구화 및 기득권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세입확보와 조세지출을 통제하기 위한 것임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 하나만을 선택(이중혜택 방지)하여야 하지만, 수도권으로 재이전한 경우 추징규정에 따라 수도권이전에 따른 법인세액 감면은 박탈되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허점이 보임

24)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의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1, p. 220.

- 특히 본 심사평가대상 규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1977년부터 지금까지 적용(물론 일부 개정이 있었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몰기한의 연장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정책목표 달성의 정도에 따라 조세지원의 내용이나 수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에서는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 효과성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 1. 본 조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분석
 - 2. 본 조가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 이를 위하여 과세 미시 행정자료, 선행연구의 설문조사 자료 등을 이용함
 - 2009~2018년 기간 동안 동 제도로 조세감면을 받은 법인 전수와 같은 기간 무작위로 추출한 비감면법인의 소재지, 업태, 법인세 수입금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금액, 감면세액 등의 정보를 이용함
 - 과거 심층평가를 포함한 기존의 모든 연구에서 과세 미시 행정자료를 이용하지 않았음
 - 그 외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지방이전 지원세제 심층평가』
 - 산업연구원(2016),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현황 및 이전요인 분석』
 - 기획재정부(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VI)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1.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분석

- 지방이전 촉진효과를 before-and-after, difference-in-differences 등 정책효과 추정방법론으로 분석하는 것은 어려움
 -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 모두 2000년도 이전에 도입되어 이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으며, 도입 이후에도 대조군을 구성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상 특성을 찾기 어려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기업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제도의 효과를 통
제하기 어려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감면제도의 지방이전 촉진효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정책대상 기업²⁵⁾ 중에서 과밀억제권역 혹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극
히 일부임
 - 최근 10년 간(2009~2018년) 연평균 수혜기업 수는 제63조의 경우 369개, 제
63조의2의 경우 167개임
 - 같은 기간 한 번이라도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수는 제63조의 경우 1,231개,
제63조의2의 경우 589개임
 - 즉 동 제도가 정책대상 기업의 지방이전 결정에 미친 평균적인 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상당한 비중이 조세감면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했을 것으로 보임
 -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전기업의 약 8.7%(제63조), 14.7%
(제63조2)만이 동 제도가 없었다면 이전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답변함
 - 그 외 지방이전 결정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많은 기업이 조세
감면 혜택이 없었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즉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이전촉진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아래에서는 위의 주장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자 함

-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모든 실증분석 방법론의 기본 아이디어는 아래의 conceptual
framework과 같이 가상적인 상황의 potential outcomes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
 - 정책이 특정 개인에게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
문에, 연구자들은 정책이 관심집단에 미친 평균효과를 추정함

25) 제63조의 적용대상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
는 내국 중소기업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됨. 제63조2의 적용대상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업, 해운중개업은 제외되며, 이전공공
기관은 포함됨

- 본 연구에서 관심집단은 앞에서 설명한 정책대상자로 정의할 수 있음
 - 정책이 관심집단에게 미친 평균적인 효과를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 ATE)라고 함
 - 평균처리효과 = $E[Y_{1i} - Y_{0i}]$
 - Y 는 관심변수 값으로, 본 절에서는 과밀억제권역 혹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함
 - Y_{1i} 은 동 제도가 존재하는 경우 기업 i 의 관심변수 값
 - Y_{0i} 은 동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기업 i 의 관심변수 값
 - $E[\]$ 는 $[\]$ 안에 있는 random variable의 기댓값, 평균
 - potential outcomes 중 반사실적 상황(counterfactual)은 직접 관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험적·준실험적 실증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추정해야 함
 - 본 절에서 평균처리효과 = $E[Y_{1i} - Y_{0i}]$ 는 동 제도로 인해 기업이 과밀억제권역 혹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의미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 제도의 이전효과를 추정할 경우 평균처리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최근 10년 간(2009~2018년) 연평균 수혜기업 수는 제63조의 경우 369개, 제63조의2의 경우 167개임
 - 같은 기간 한 번이라도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수는 제63조의 경우 1,231개, 제63조의2의 경우 589개임
 - 즉 정책대상 기업들의 대부분이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Y_{1i} = 0$), 이들은 조세감면혜택이 없었을 경우에도 이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Y_{0i} = 0$)
 - 즉 이전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Y_{1i} - Y_{0i} = 0$
 - 지방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받은 기업들의 경우($Y_{1i} = 1$), 과반이 조세감면혜택이 없었더라도 이전하였을 것이라고 답변함($Y_{0i} = 1$)
 -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감면제도가 없었을 경우의 이전 결정을 물었는데, 약 91.3%(제63조), 85.3%(제63조2)가 이전을 했을 것이라고 답변함²⁶⁾

- 즉 수혜기업의 대다수가 $Y_{1i} - Y_{0i} = 0$
- 수혜기업 중에 소수만이 조세감면 혜택이 없었다면 이전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답함
 -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감면제도가 없었을 경우의 이전결정을 물었는데, 약 8.7%(제63조), 14.7%(제63조2)가 이전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답변함²⁷⁾
 - 즉 전체 정책대상자 중에 소수의 기업들의 경우에만 $Y_{1i} - Y_{0i} = 1$
- 따라서 본 조가 기업이전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평균처치효과, $E[Y_{1i} - Y_{0i}]$)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표 IV-1> 조세감면 혜택이 없었을 경우의 이전 결정(제63조 수혜기업 대상)

(단위: 개, %)

구분	기업 수	비중
현재와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139	76.0
이전을 연기했을 것이다	28	15.3
이전을 포기했을 것이다	16	8.7
합계	68	100

자료: 기획재정부(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p. 148, <표 IV-30>

[그림 IV-1] 조세감면 혜택이 없었을 경우의 이전 결정(「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 대상)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p. 148, <표 IV-30>

- 26) 일몰연장을 원하는 수혜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음
- 27) 일몰연장을 원하는 수혜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유인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과대 추정되었을 수 있음

<표 IV-2> 조세감면 혜택이 없었을 경우의 이전결정(제63조의2 수혜기업 대상)

(단위: 개, %)

구분	기업 수	비중
현재와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40	58.8
이전을 연기했을 것이다	18	26.5
이전을 포기했을 것이다	10	14.7
합계	68	100

자료: 기획재정부(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VI)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p. 140, <표 IV-17>

[그림 IV-2] 조세감면 혜택이 없었을 경우의 이전 결정(「조특법」 제63조의2 수혜기업 대상)

(단위: %)



자료: 기획재정부(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VI)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p. 140, <표 IV-17>

- 위에서는 감면제도가 없었을 경우 기업의 이전결정을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충자료로서 이전요인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2014년 수행된 설문조사에서 조세감면 혜택을 지방이전 요인 1순위로 선택한 기업은 17.58%임(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²⁸⁾
 - 회사 규모 확장을 1순위로 선택한 기업의 비중이 38.46%로 가장 높음
 - 2016년 수행된 설문조사에서 동 제도를 포괄하는 “조세/재정지원”의 중요도는 15개의 요인 중에서 9위를 차지함(산업연구원, 2016)²⁹⁾

28) 설문조사 표본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182개 기업

29) 설문조사 표본은 설문 당시 5년 이내에 사업장을 이전한 경험이 있거나 향후 5년 이내 사업장 이전 계획이 있는 424개 사업체

- 요인 중요도 순으로 토지, 판매처 접근성, 원료/부품 접근성, 노동, 기반시설, 입지지원, 시장규모, 행정지원, 조세/재정지원, 자본, 집적화, 도시접근성, 자원인프라, 연구기반시설, 정주여건임
- 2017년 수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수혜기업의 16.9%(제63조), 38.2%(제63조2)가 동 제도를 현재의 지역으로 이전한 이유 1순위로 꼽음(기획재정부 2017)³⁰⁾
 - 제63조의2의 경우 동 제도를 이전요인 1순위로 선택한 기업의 비중이 높은데, 동일한 설문조사의 다른 문항에서 약 14.7%만이 동 제도가 없었다면 이전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조사 결과의 상이성은 설문 문항 내용, 조사 방식, 조사 대상의 차이 등에 기인할 수 있음
 - 특히 동 제도의 이전촉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과 같이 지방이전을 하게 된 이유를 묻는 것이 적절함
 - 기획재정부(2017)와 같이 현재의 지역으로 이전한 요인을 조사한 설문결과는 지방이전을 전제로 하고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에 대한 선택을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함
-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지방이전기업들의 상당수가 조세감면이 없다 하더라도 이전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IV-3> 지방이전을 고려하게 된 주된 이유

(단위: 개, %)

구분	기업 수	비중
1. 조세감면혜택	32	17.6
2.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13	7.1
3. 회사규모 확장	70	38.5
4. 지가 및 임대료의 절감	16	8.8
5. 주 거래처와의 접근 용이성	25	13.7
6. 물류비용 절감	10	5.5
7. 기존 입지의 규제 및 환경규제	8	4.40
8. 기타	6	3.3
모름/거절	2	1.1
합계	68	100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 “지방이전 지원세제 심층평가” p. 54, <표 IV-14>

30) 설문조사 표본은 동 조의 수혜기업인 251개 기업

<표 IV-4> 이전 요인 중요도

순위	항목
1	(토지) 지가, 임대료 수준, 토지확보 용이성
2	(판매처접근성) 제품판매(납품)처와의 접근성, 대기업 유무
3	(원료/부품접근성) 원부자재 조달처와의 접근성
4	(노동)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인력확보 용이성
5	(기반시설) 도로, 항만, 전력, 용수, 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수준
6	(입지지원) 임대료 및 분양가 감면, 환경규제 완화
7	(시장규모) 주변 시장 규모(잠재력)
8	(행정지원) 인허가 간소화, 공장설립 대행 등 적극적 행정지원
9	(조세/재정지원) 조세감면, 투자보조(이전보조금)
10	(자본) 자금조달 용이성, 건설비용 등 투자금액 수준
11	(집적화) 유관업종 집적도, 클러스터 구축 정도
12	(도시접근성)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
13	(지원인프라) 기술 및 각종 경영지원서비스 구축 수준
14	(연구기반시설) 연구·실험시설활용용이성
15	(정주여건) 정주, 문화·복지, 보육, 의료, 교육여건수준

자료: 산업연구원(2016),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현황 및 이전요인 분석』, p. 38, <그림 III-7>

<표 IV-5> 현재의 지역으로 이전한 이유 1순위(「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 대상)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31	16.9	16.9	16.9
② 금융지원, 보조금 등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	12	6.6	6.6	23.5
③ 지역의 경쟁 여건(교통인프라, 인력수급, 교육 여건 등)	21	11.5	11.5	35.0
④ 관련 업체(종)들이 주변 지역에 다수 존재	17	9.3	9.3	44.3
⑤ 저렴한 부지 임대료(분양가)	95	51.9	51.9	96.2
⑥ 창업자의 지역 연고	4	2.2	2.2	98.4
⑦ 기타	3	1.6	1.6	100.0
합계	183	100.0	100.0	-

자료: 기획재정부(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p. 146, <표 VI-27>

<표 IV-6> 현재의 지역으로 이전한 이유 1순위(「조특법」 제63조의2 수혜기업 대상)

구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①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제도	26	38.2	38.2	38.2
② 금융지원, 보조금 등 해당 지역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기업지원 정책	13	19.1	19.1	57.4
③ 지역의 경쟁 여건(교통인프라, 인력수급, 교육 여건 등)	10	14.7	14.7	72.1
④ 관련 업체(종)들이 주변 지역에 다수 존재	6	8.8	8.8	80.9
⑤ 저렴한 부지 임대료(분양가)	11	16.2	16.2	97.1
⑥ 기타	2	2.9	2.9	100.0
합계	68	100.0	100.0	-

자료: 기획재정부(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VI)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p. 138, <표 VI-15>

- 본 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조세감면의 이전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어 주의가 필요함
 - 이전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사회전체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님
 - 기업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혜택(예, 국가 균형발전 등)이 사회적 비용(예, 집적효과 감소)보다 큰 경우에만 기업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기업의 이전으로 인한 혜택과 비용을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 문제에 대한 신뢰할 만한 판단근거를 제시할 수 없음

2.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 동 조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기업으로 하여금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집계(aggregate)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통계분석은 큰 의미가 없음
 - 그보다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함

- 1. 이전기업의 특성
- 2. 조세감면과 기업 활동
- 3. 이전지역의 낙후도

가. 이전기업의 특성

- 이전기업의 기업 규모, 고용 수준 등이 클수록 균형발전 효과도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이에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의 매출액, 순이익 등을 비교해 보고자 함
 - 법인세 미사자료와 선행연구 결과를 활용함
 - 수혜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었던 만큼, 비감면기업에 비하여 기업 규모 등이 어느 정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먼저 법인세 미사자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과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을 살펴보고, 그 다음 선행연구에서 KIS-data를 활용하여 고용 및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겠음
 - (법인세 미사자료를 이용한 분석) 「조특법」 제63조의 수혜기업을 수도권 내 이전 수혜기업과 수도권 외 이전 수혜기업으로 나누고, 「조특법」 제63조의2 수혜기업을 공장이전 기업과 본사이전 기업으로 나누어, 각각을 수도권 내/외 비수혜기업과 비교함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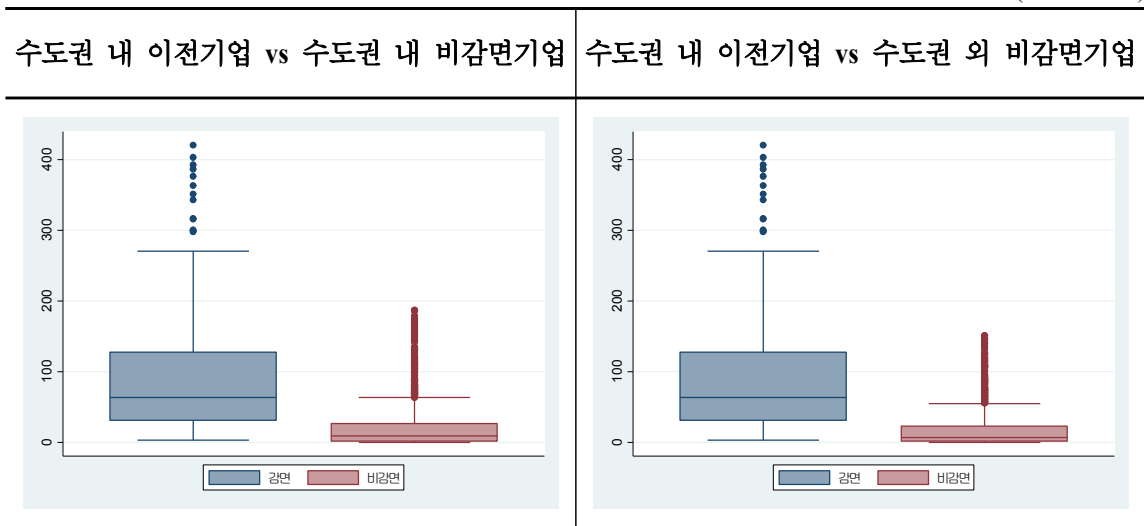
-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내 이전 수혜기업의 법인세 수입금액은 수도권 내/외 비감면기업의 수입금액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내 이전 수혜기업과 수도권 내/외 비감면기업의 평균 수입금액 격차는 각각 1.50, 1.51 표준편차 수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수도권 내 이전 수혜기업의 수입금액 1사분위수는 30.8억원, 중위수는 63.65억원, 3사분위수는 127.54억원임

31) 지방이전 이후 기업 활동의 영향을 제외한 사전적 특성을 보기 위하여 가장 이른 연도인 2009년 자료만 이용함

- 수도권 내 비감면기업의 수입금액 1사분위수는 1.93억원, 중위수는 9.12억원, 3사분위수는 26.64억원임
- 수도권 외 비감면기업의 수입금액 1사분위수는 1.76억원, 중위수는 6.98억원, 3사분위수는 23.05억원임

[그림 IV-3]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내 이전 수혜기업의 수입금액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표 IV-7> 수입금액 비교 분석 결과(「조특법」 제63조 수도권 내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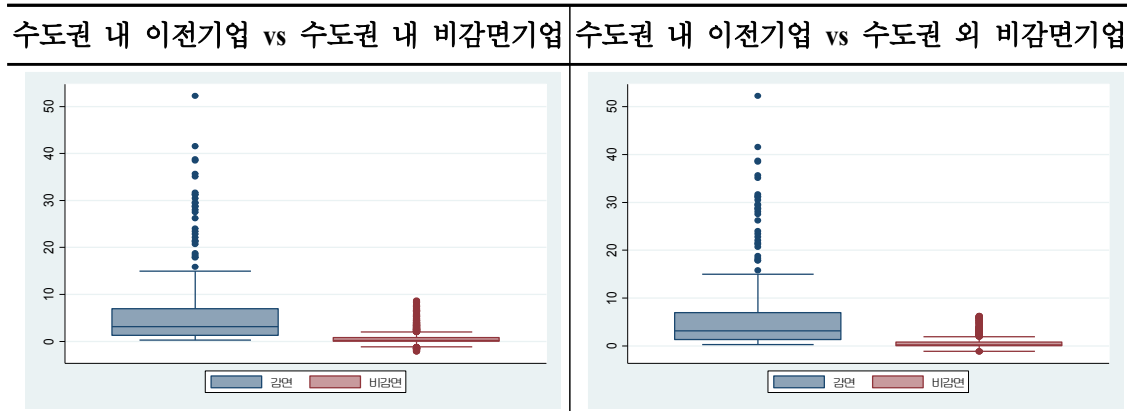
구분	수도권 내 이전기업 vs 수도권 내 비감면기업				수도권 내 이전기업 vs 수도권 외 비감면기업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원자료	93.246	21.537	71.709***	0.000	93.246	18.639	74.607***	0.000
	(5.784)	(0.741)	(5.832)		(5.785)	(0.730)	(5.831)	
z-score	1.328	-0.169	1.497***	0.000	1.294	-0.216	1.510***	0.000
	(0.121)	(0.015)	(0.122)		(0.117)	(0.015)	(0.118)	
-	234	1,837	2,071	-	234	1,404	1,638	-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조특법」 제63조) 법인세 결산서상당기순손익금액도 수도권 내 이전수혜기업이 비감면기업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내 이전 수혜기업과 수도권 내/외 비감면기업의 평균 당기순손익금액 격차는 각각 1.61, 1.46 표준편차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수도권 내 이전 수혜기업의 당기순손익금액 1사분위수는 1.31억원, 중위수는 3.15억원, 3사분위수는 6.98억원임
- 수도권 내 비감면기업의 당기순손익금액 1사분위수는 0억원, 중위수는 0.23억원, 3사분위수는 0.8억원임
- 수도권 외 비감면기업의 당기순손익금액 1사분위수는 0.03억원, 중위수는 0.2억원, 3사분위수는 0.79억원임

[그림 IV-4]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내 이전 수혜기업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표 IV-8>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분석 결과(수도권 내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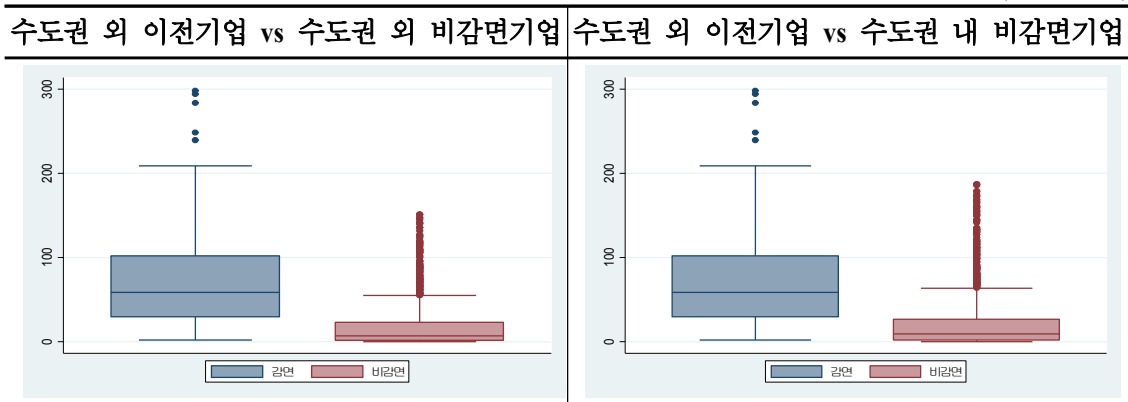
구분	수도권 내 이전기업 vs 수도권 내 비감면기업				수도권 내 이전기업 vs 수도권 외 비감면기업			
	평균/표준편차/ 관측치 수		격차/ 표준오차	P값	평균/표준편차/ 관측치 수		격차/ 표준오차	P값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원자료	6.909 (0.624)	0.599 (0.033)	6.310*** (0.625)	0.000	6.909 (0.624)	0.640 (0.033)	6.269*** (0.625)	0.000
z-score	1.426 (0.159)	-0.181 (0.009)	1.607*** (0.159)		0.000	1.255 (0.146)	-0.209 (0.008)	
-	221	1,740	1,961	-	221	1,330	1,551	-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외 이전 수혜기업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과를 찾을 수 있었음

- 즉 수입금액, 당기순손익금액 모두 비감면기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외 이전 수혜기업과 수도권 내/외 비감면기업의 평균 수입금액 격차는 각각 1.48, 1.65 표준편차 수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수도권 외 이전기업의 법인세 수입금액 1사분위수는 29.52억원, 중위수는 58.65억원, 3사분위수는 101.85억원임
- 수도권 외 이전 수혜기업과 수도권 내/외 비감면기업의 평균 당기순손익금액 격차는 각각 2.22, 2.11 표준편차 수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수도권 외 이전기업의 당기순손익금액 1사분위수는 1.36억원, 중위수는 2.94억원, 3사분위수는 7.84억원임

[그림 IV-5]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외 이전 수혜기업의 수입금액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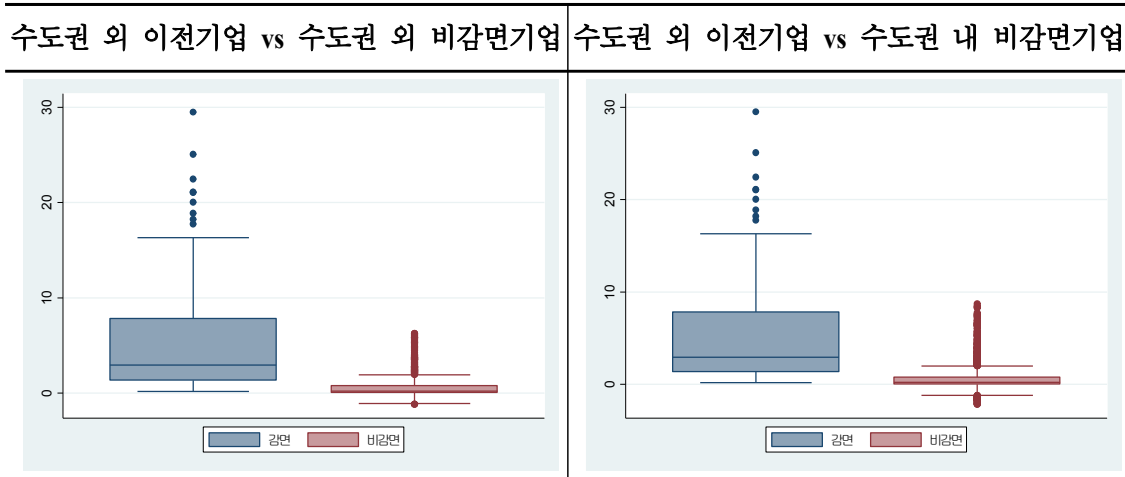
<표 IV-9> 수입금액 비교 분석 결과(「조특법」 제63조 수도권 외 이전)

구분	수도권 외 이전기업 vs 수도권 외 비감면기업				수도권 외 이전기업 vs 수도권 내 비감면기업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원자료	75.026 (6.534)	18.639 (0.730)	56.387*** (6.575)	0.000	75.026 (6.534)	21.537 (0.741)	53.489*** (6.576)	0.000
z-score	1.543 (0.191)	-0.108 (0.021)	1.651*** (0.193)	0.000	1.405 (0.181)	-0.075 (0.020)	1.480*** (0.182)	0.000
-	98	1,404	1,502	-	98	1,837	1,935	-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6] 「조특법」 제63조 수도권 외 이전 수혜기업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표 IV-10>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비교 분석 결과(「조특법」 제63조 수도권 외 이전)

구분	수도권 외 이전기업 vs 수도권 외 비감면기업				수도권 외 이전기업 vs 수도권 내 비감면기업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원자료	5.670 (0.682)	0.640 (0.033)	5.030*** (0.682)	0.000	5.670 (0.682)	0.599 (0.033)	5.071*** (0.682)	0.000
z-score	1.977 (0.286)	-0.137 (0.014)	2.114*** (0.287)		0.000	2.108 (0.298)	-0.111 (0.015)	
-	92	1,330	1,422	-		92	1,740	1,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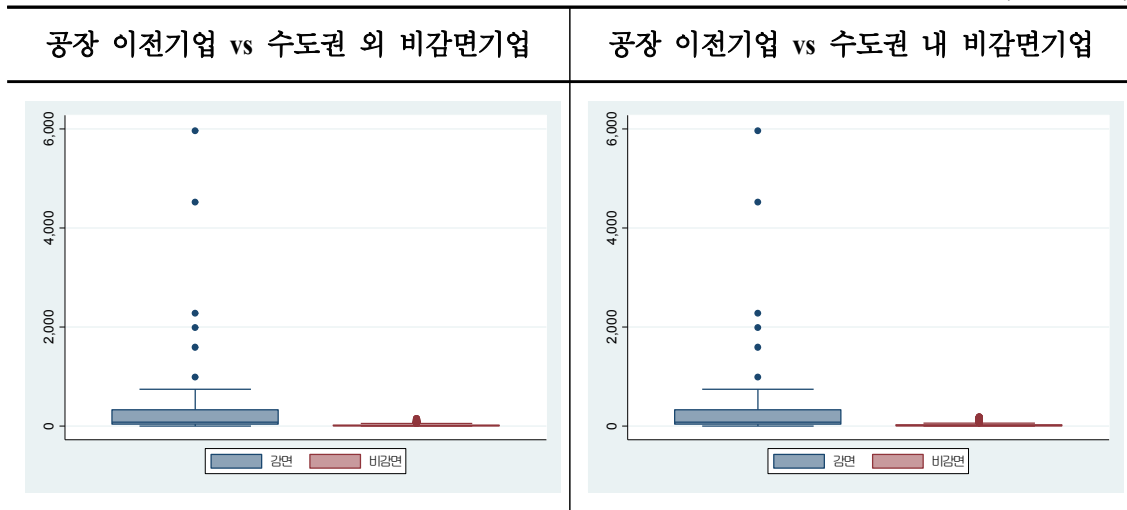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의 법인세 수입금액, 당기순손익금액은 비감면기업에 비하여 모두 높게 나타남
 - 공장이전 수혜기업과 수도권 내/외 비감면기업의 평균 수입금액 격차는 각각 2.14, 1.90 표준편차 수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공장이전 기업의 수입금액 1사분위수는 37.63억원, 중위수는 79.75억원, 3사분위수는 332.7억원임

- 수도권 내/외 비감면기업 대비 당기순손익금액 격차는 각각 1.76, 1.53 표준편차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공장 이전기업의 당기순손익금액 1사분위수는 1.26억원, 중위수는 3.84억원, 3사분위수는 16.65억원임

[그림 IV-7] 수입금액 비교(공장이전)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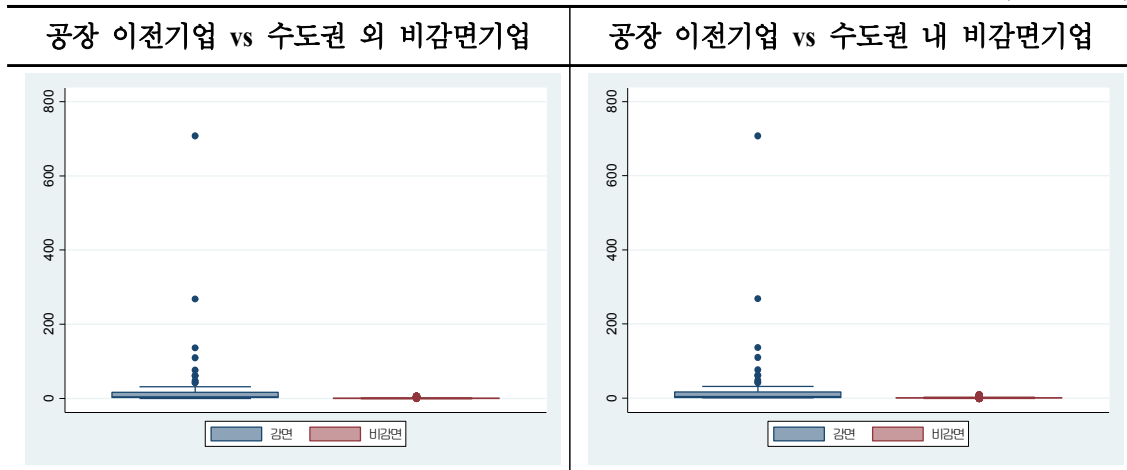
<표 IV-11> 수입금액 분석 결과(공장이전)

구분	공장 이전기업 vs 수도권 외 비감면기업				공장 이전기업 vs 수도권 내 비감면기업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원자료	438.304	18.639	419.665***	0.002	438.304	21.537	416.767***	0.002
	(136.53)	(0.730)	(136.532)		(136.52)	(0.741)	(136.521)	
z-score	1.826	-0.074	1.900***	0.002	2.073	-0.064	2.137***	0.002
	(0.618)	(0.003)	(0.618)		(0.700)	(0.004)	(0.700)	
-	57	1,404	1,461	-	57	1,837	1,894	-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8]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비교(공장이전)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표 IV-12>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분석 결과(공장이전)

구분	공장이전기업 vs 수도권 외 비감면기업				공장이전기업 vs 수도권 내 비감면기업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원자료	33.398 (13.937)	0.640 (0.033)	32.757** (13.937)	0.019	33.398 (13.936)	0.599 (0.033)	32.798** (13.936)	0.019
z-score	1.482 (0.656)	-0.060 (0.002)	1.543** (0.656)		0.019	1.703 (0.746)	-0.053 (0.002)	
-	54	1,330	1,384	-		54	1,740	1,794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도 비감면기업에 비하여 수입금액, 당기순손익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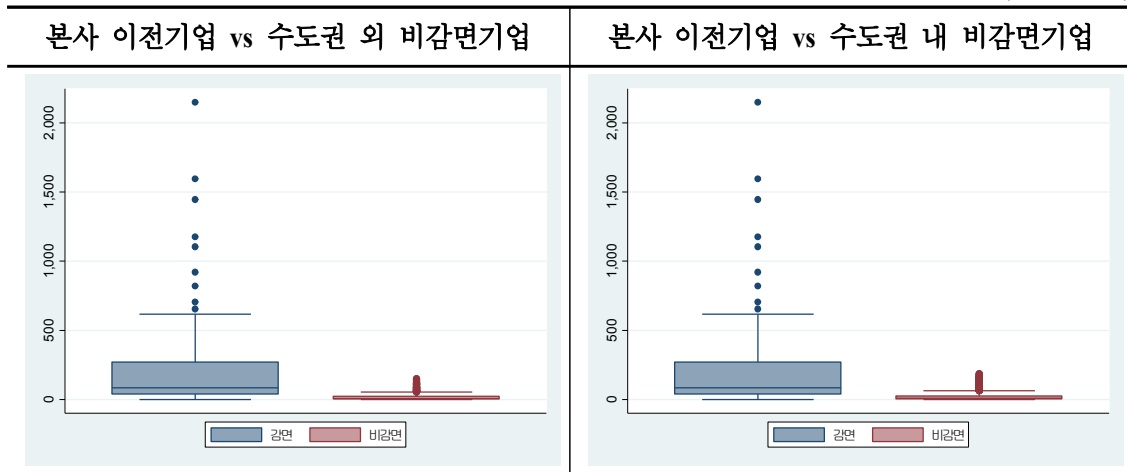
○ 본사이전 수혜기업과 수도권 내/외 비감면기업의 평균 수입금액 격차는 각각 2.21, 2.01 표준편차 수준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본사 이전기업의 법인세 수입금액 1사분위수는 39.63억원, 중위수는 86.36억원, 3사분위수는 270.8억원

- 수도권 내/외 비감면기업 대비 당기순손익금액 격차는 각각 2.43, 2.16 표준편차임
- 본사 이전기업의 당기순손익금액 1사분위수는 1.31억원, 중위수는 4.96억원, 3사분위수는 22.86억원

[그림 IV-9] 수입금액 비교(본사이전)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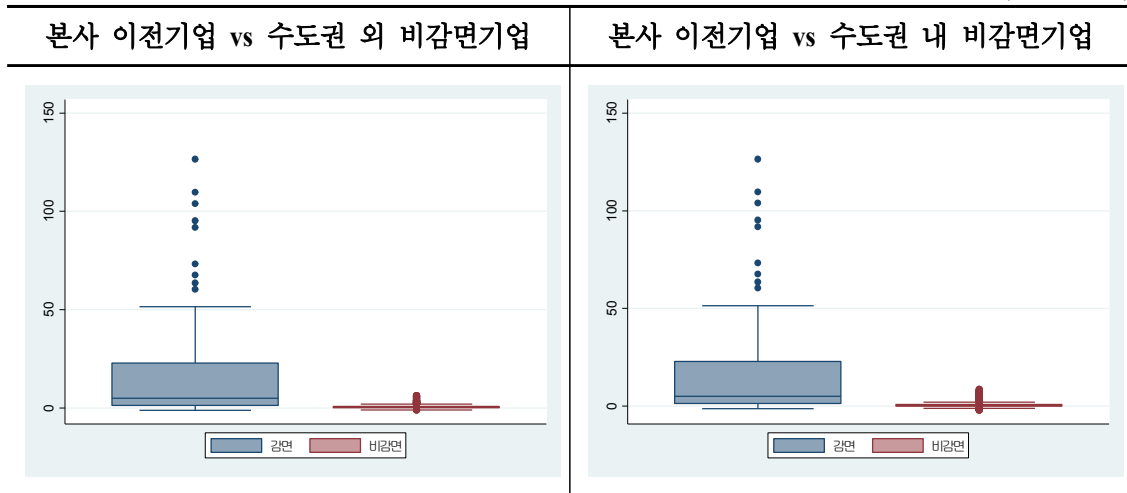
<표 IV-13> 수입금액 분석 결과(본사이전)

	본사 이전기업 vs 수도권 외 비감면기업				본사 이전기업 vs 수도권 내 비감면기업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원자료	236.567 (38.744)	18.639 (0.730)	217.928*** (38.751)	0.000	236.567 (38.741)	21.537 (0.741)	215.030*** (38.748)	0.000
z-score	1.889 (0.358)	-0.122 (0.007)	2.012*** (0.358)		0.000	2.103 (0.398)	-0.104 (0.008)	
-	91	1,404	1,495	-		91	1,837	1,928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10]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비교(본사이전)

(단위: 억원)



자료: 저자 작성

<표 IV-14> 결산서상 당기순손익금액 분석 결과(본사이전)

구분	본사 이전기업 vs 수도권 외 비감면기업				본사 이전기업 vs 수도권 내 비감면기업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평균/표준편차/관측치 수		격차/표준오차	P값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감면	비감면	감면 - 비감면	
원자료	18.368	0.640	17.728***	0.000	18.368	0.599	17.769***	0.000
	(3.044)	(0.033)	(3.044)		(3.043)	(0.033)	(3.044)	
z-score	2.024	-0.131	2.155***	0.000	2.314	-0.114	2.428***	0.000
	(0.370)	(0.004)	(0.370)		(0.416)	(0.005)	(0.416)	
-	86	1,330	1,416	-	86	1,740	1,826	-

주: *, **, ***는 각각 통계적으로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자료: 저자 작성

- KIS-data를 이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용 및 생산성에 있어서도 동 제도의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기획재정부(2017)에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수혜기업의 매출액, 소재지 등의 정보와 KIS-Data의 외부감사 기업 재무정보자료를 활용하여 <표 IV-15, 16>과 같은 비교분석을 수행함³²⁾

32) 국세청 자료와 KIS-data를 활용하여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불균형패널을 구성하였으며 154개의 수혜기업을 식별함

-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의 수혜기업은 비수혜기업에 비하여 종업원 수, 종업원 업력,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유형자산에서 모두 큰 값을 지님

<표 IV-15> 「조특법」 제63조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 비교

변수명	전체기업	수도권 내		수도권 외	
		감면기업	미감면기업	감면기업	미감면기업
1인당 부가가치	11.135	11.382	11.187	11.342	11.098
유형자산	11.859	14.383	11.661	14.467	12.035
종업원수	2.357	3.256	2.443	3.220	2.273
업력	12.885	13.621	12.918	13.110	12.848
업력 ¹⁾	1687.038	228.646	1415.436	223.478	1946.781
매출액	14.325	15.597	14.440	15.523	14.209
1인당 인건비	10.651	10.735	10.747	10.692	10.581
부채비율	4.619	4.612	4.707	4.786	4.537

주: 1) 평균을 의미

자료: 기획재정부(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p. 174, <표 IV-57>

<표 IV-16> 「조특법」 제63조의2 감면기업과 비감면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 비교

구분	수혜기업		비수혜기업
	공장이전	본사이전	
1인당 부가가치	11.25	11.68	11.22
유형자산	15.27	14.14	12.48
종업원 수	3.73	3.02	2.54
업력	20.06	16.12	13.40
업력 ²⁾	588.62	349.49	265.07
매출액	16.28	16.08	15.06
1인당 인건비	9.93	10.52	9.94
부채비율	4.13	4.13	4.58
관측치	89	164	415,735

주: 1인당 부가가치, 유형자산, 종업원 수, 매출액, 1인당 인건비, 부채비율은 로그를 취한 값임

자료: 기획재정부(2017),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p. 171, <표 IV-52>

□ 이하에서는 추가적으로 동 제도의 수혜기업별 업종을 살펴봄

- 법인세 미시자료의 업태 정보를 활용함

- (「조특법」 제63조) 기업이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함
 - 감면건수 기준 92.63%, 수입금액 기준 94.76%를 차지함
 - 그 외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이 건수와 수입금액 기준으로 2% 이상을 차지함

<표 IV-17> 「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의 업종(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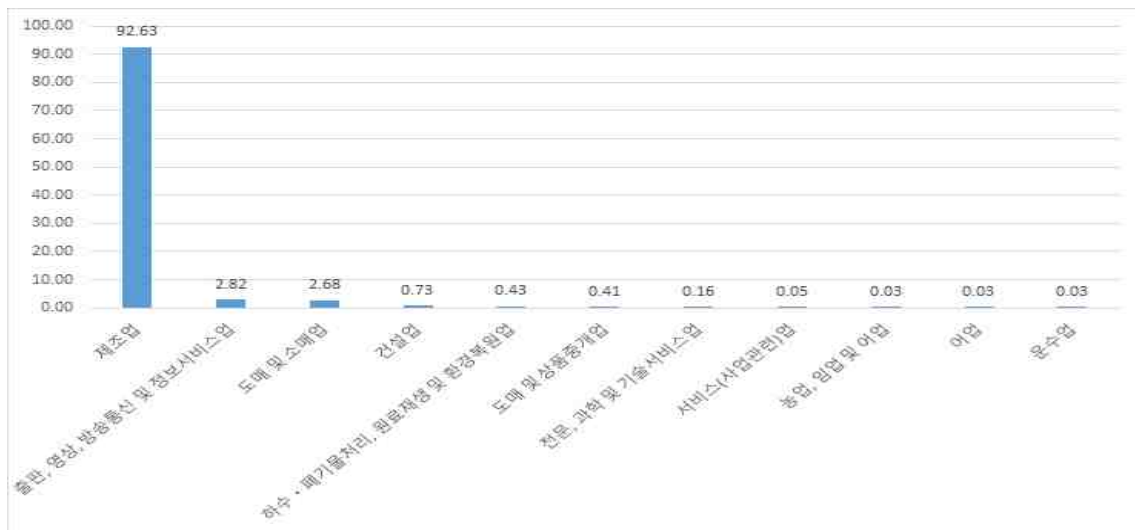
(단위: 건, %)

업태	건수	비중
제조업	3,418	92.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04	2.82
도매 및 소매업	99	2.68
건설업	27	0.73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6	0.43
도매 및 상품중개업	15	0.4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	0.16
서비스(사업 관련)업	2	0.05
농업, 임업 및 어업	1	0.03
어업	1	0.03
운수업	1	0.03
총합	3,690	100.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11] 「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의 업종 비중(건수 기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표 IV-18> 「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의 업종(수입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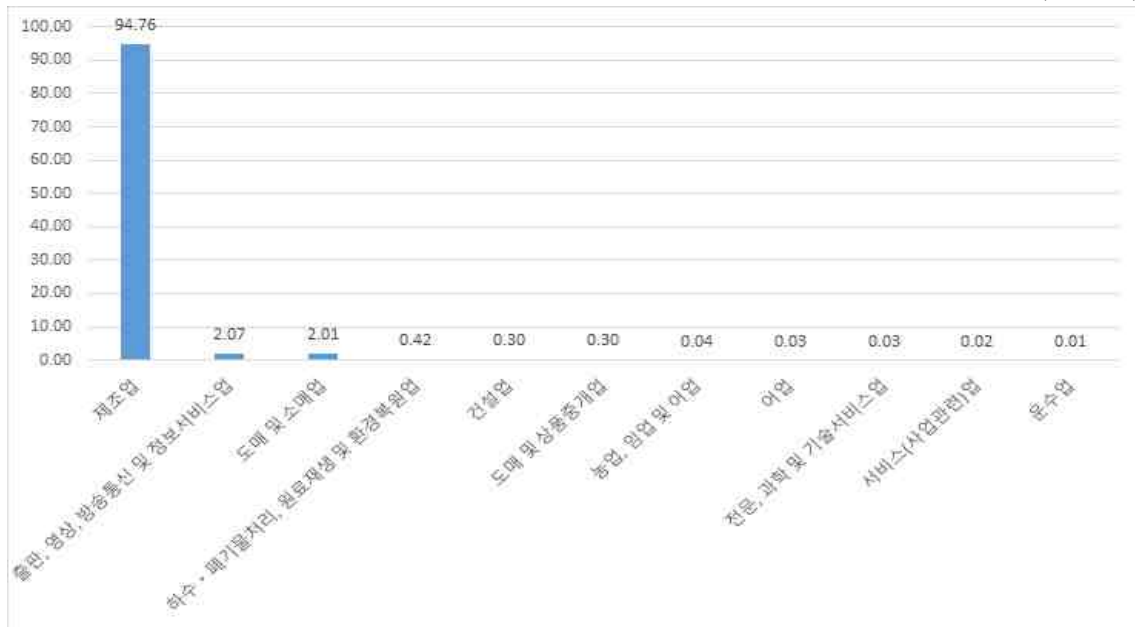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업태	수입금액	비중
제조업	401,679	94.7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761	2.07
도매 및 소매업	8,521	2.0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797	0.42
건설업	1,292	0.30
도매 및 상품중개업	1,264	0.30
농업, 임업 및 어업	184	0.04
어업	134	0.0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19	0.03
서비스(사업 관련)업	75	0.02
운수업	48	0.01
총합	423,876	100.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12] 「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의 업종 비중(수입금액 기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공장이전으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업종 역시 대부분 제조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도 상당 부분 차지함
- 제조업의 비중은 감면건수 기준 91.42%, 수입금액 기준 70.86%

-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은 감면건수 기준 4.85%, 수입금액 기준 19.61%
- 도매 및 상품중개업의 비중은 감면건수 기준 1.12%, 수입금액 기준 9.31%

<표 IV-19>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의 업종(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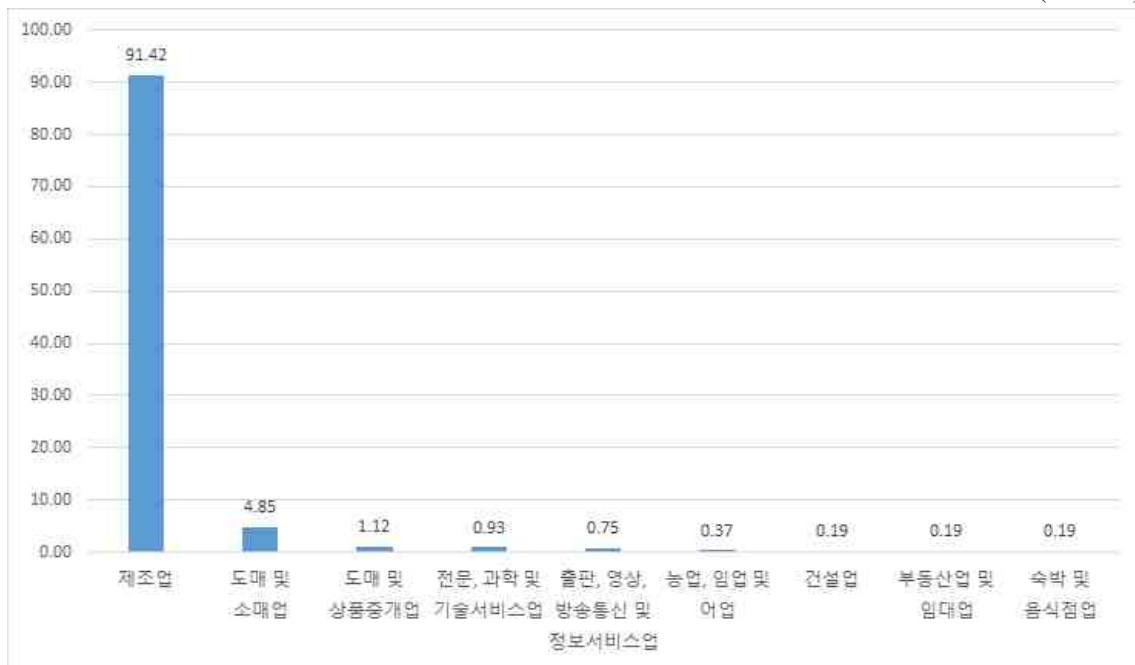
(단위: 건, %)

업태	건수	비중
제조업	490	91.42
도매 및 소매업	26	4.85
도매 및 상품중개업	6	1.1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	0.9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0.75
농업, 임업 및 어업	2	0.37
건설업	1	0.1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0.19
숙박 및 음식점업	1	0.19
총합	536	100.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13]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의 업종 비중(건수 기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표 IV-20>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의 업종(수입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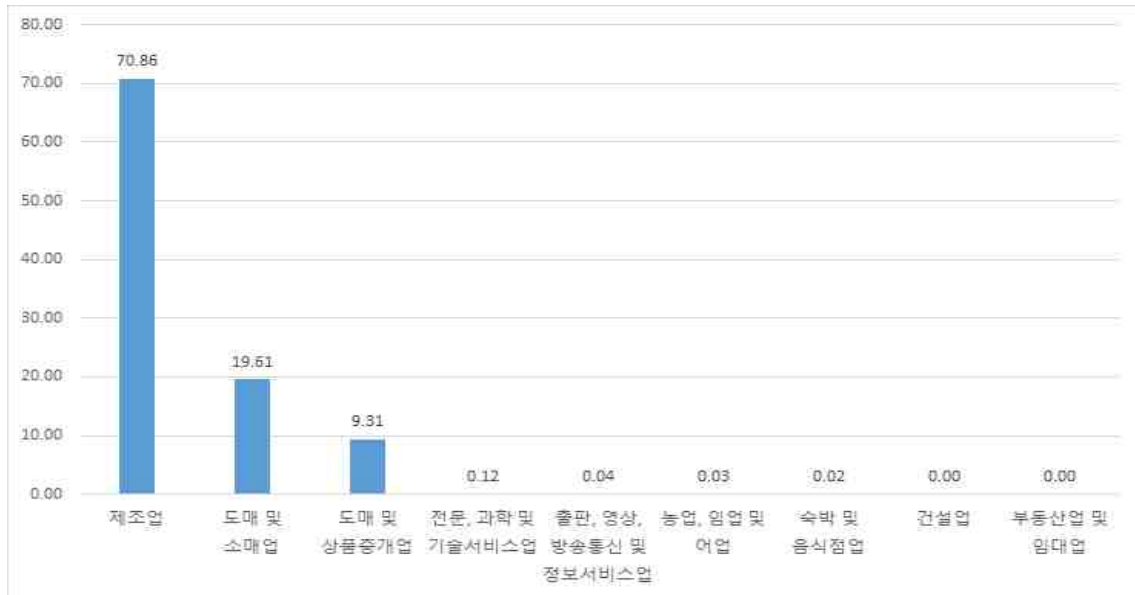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업태	수입금액	비중
제조업	738,157	70.86
도매 및 소매업	204,290	19.61
도매 및 상품중개업	97,021	9.3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267	0.1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22	0.04
농업, 임업 및 어업	308	0.03
숙박 및 음식점업	163	0.02
건설업	52	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	0.00
총합	1,041,698	100.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14]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의 업종 비중(수입금액 기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 (「조특법」 제63조2 본사이전) 본사이전으로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업종은 건수 기준으로는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순으로 많으며,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많음

- 제조업의 비중은 감면건수 기준 40.30, 수입금액 기준 6.07%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건수 기준 1.41%이나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67.4%

<표 IV-21>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의 업종(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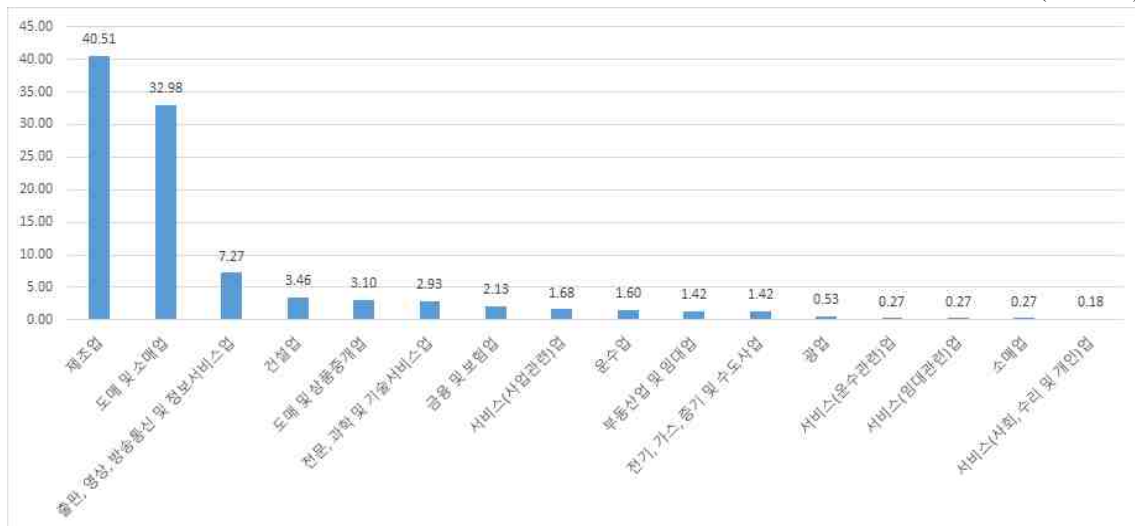
(단위: 건, %)

업태	건수	비중
제조업	457	40.51
도매 및 소매업	372	32.9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2	7.27
건설업	39	3.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35	3.1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3	2.93
금융 및 보험업	24	2.13
서비스(사업관련)업	19	1.68
운수업	18	1.6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	1.4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6	1.42
광업	6	0.53
서비스(운수 관련)업	3	0.27
서비스(임대 관련)업	3	0.27
소매업	3	0.27
서비스(사회, 수리 및 개인)업	2	0.18
총합	1,128	100.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15]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의 업종 비중(건수 기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표 IV-22〉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의 업종(수입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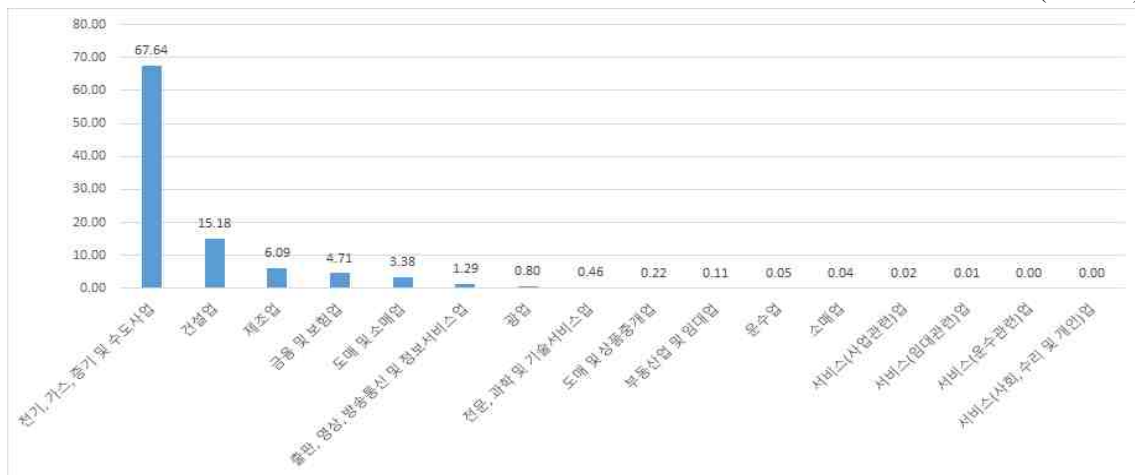
(단위: 억원, %)

업태	수입금액	비중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2,443,237	67.40
건설업	548,283	15.12
제조업	219,926	6.07
금융 및 보험업	170,236	4.70
도매 및 소매업	122,275	3.3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6,572	1.28
광업	28,858	0.80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27	0.46
금융업	11,318	0.31
도매 및 상품중개업	8,025	0.22
부동산업 및 임대업	3,994	0.11
운수업	1,848	0.05
소매업	1,284	0.04
도소매(자동차 관련)업	1,075	0.03
서비스(사업 관련)업	602	0.02
서비스(임대 관련)업	508	0.0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57	0.01
농업, 임업 및 어업	143	0.00
서비스(운수 관련)업	82	0.00
어업	63	0.00
서비스(사회, 수리 및 개인)업	21	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11	0.00
총합	3,625,143	100.00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16]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의 업종 비중(수입금액 기준)

(단위: %)



자료: 저자 작성

나. 조세감면과 기업 활동

- 수혜기업의 기업 활동이 지방이전 후 집적이익의 감소 등으로 크게 위축된다면 의도했던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전기업의 기업 활동이 counterfactual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감소하지만 않는다면,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법인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감면세액 및 세액감면 여부는 기업의 매출·이윤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매출·이윤 등의 성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이전을 하였고, 이전 후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체 근로자 수 및 채용 근로자 수가 이전 후 유의미하게 증가함

1) 기업의 타 지역 이전 현황

- 분석에 앞서 기업의 타 지역 이전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조세특례 제도 변화와 비교함
 - <표 IV-23>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연도별 사업체 타 지역 이전 비율을 나타냄
 - 사업체패널은 2년 주기로 조사되며, 표에서의 수치는 지난 조사시점과 이번 조사시점 사이(대략 2년)에 이전한 기업의 비율을 나타냄
 - 예를 들어 2005년 조사와 2007년 조사 사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2.77%
 - 이 비율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3.11%로 가장 높음
 - 서울에 위치한 기업이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비중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3.25%
 - 이 비율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4.79%로 가장 높으며, 2013년과 2015년 사이 4.61%로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보임

-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상당수는 인천·경기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임
-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비율은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2.30%로 다른 시기에 비해 특히 높음

<표 IV-23> 사업체 이전 현황

(단위: %)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전체 기업	2.77	0.12	3.11	0.90	0.87	1.46
서울에서 타지역으로 이전	3.25	0.19	4.79	2.26	4.61	3.12
서울·인천·경기에서 타지역으로 이전	0.49	0	1.15	0.58	2.30	1.06
타지역에서 서울로 이전	0.79	0.08	1.40	0.16	0.03	0.48
타지역에서 서울·인천·경기로 이전	0.22	0.12	0.46	0	0	0.31
서울·인천·경기 내에서 이전	2.69	0.11	4.13	1.04	1.22	1.4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저자가 분석

- 시기별 기업의 이전 현황을 조세특례 제도 변화와 비교해 볼 수 있음
 -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비율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인천·경기에서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3년과 2015년 사이 가장 높았음
 - <표 IV-24, 2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9년과 2011년 사이에는 감면기간이 재설계되어 낙후지역의 경우 감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됨
 - 다만 감면기간의 연장이 2009년과 2011년 사이의 기업 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내기는 어려움
 - 이 시기 대부분의 이전은 서울·인천·경기 내에서 이루어져 제도 변경으로 인한 수혜 대상이 아님
 - 또한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13년과 2015년 사이에는 제도의 큰 변화가 없음
 - 이러한 총량 단위의 자료와 단순 제도 변화를 이용한 분석으로는 본 조세특례 제도가 기업의 이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움

〈표 IV-2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의 주요 변경 사항

개정연도	주요 개정 내용
1989	수도권 안에서 공장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이전 세액감면 도입
1998	일몰 도입(2000년까지)
1999	감면기간 연장(6년 → 9년)
2000	일몰 연장(2003년까지)
2002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을 갖추고 사업 영위하는 요건 도입
2003	감면기간 축소(9년 → 7년) 및 일몰 연장(2005년까지)
2005	일몰 연장(2008년까지)
2008	일몰 연장(2011년까지)
2010	감면기간 재설계(낙오지역 10년간, 그 외 지역 7년간)
2011	일몰 연장(2014년까지)
2014	일몰 연장(2017년까지) 및 감면 기산일을 최소소득발생일로 변경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p. 44, <표 I-2>

〈표 IV-25〉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조세특례의
주요 변경 사항

개정연도	주요 개정 내용
1999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 세액감면 도입
2000	감면소득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과세표준으로 변경
2001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제외
2003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제외, 감면기간 축소(11년 → 7년)
2004	감면요건 강화: 임원의 50% 이전
2005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 및 일몰연장(2008년까지)
2008	일몰 연장(2011년까지)
2010	감면기간 재설계(낙오지역 10년 간, 그 외 지역 7년 간)
2011	일몰 연장(2014년까지)
2014	일몰 연장(2017년까지), 무점포판매업·해운중개업 제외, 감면대상소득에 위탁가공무역 비율 제외, 서식신설 등

자료: 기획재정부,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Ⅵ)』,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p. 48, <표 I-3>

2) 조세감면과 기업 활동

- 본 절에서는 「조특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제도의 조세감면과 기업 활동의 연관성에 대하여 분석함

- 구체적으로 각 제도의 감면세액 규모 및 감면 여부와 기업 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함
 - 기업 활동의 척도로 매출과 이윤을 이용함
 - 법인세 미시자료를 이용함
- 이를 통해 감면기업의 기업 활동이 지방이전 후 집적이익의 감소 등으로 위축되지는 않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 다만 이하의 분석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마) 「조특법」 제63조

- 「조특법」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세액감면과 기업 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함
 - 기업의 매출액(수입금액)과 이윤(결산서상당기순손익)의 연관성을 각각 분석
 - 법인세 자료에 별도로 제공된 수도권 내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과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을 경우에 따라 합하여, 또는 별도로 분석
 - <표 IV-26, 27>은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 통계를 보여줌

<표 IV-26> 「조특법」 제63조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기초 통계(전체 연도)

(단위: 억원, 개)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매출	10,820	112.9575	234.8866	0	5478.014
이윤	10,820	76.28991	368.6556	-18657.02	5288.047
세액감면 수혜 여부	10,820	.3393715	.4735179	0	1
수도권외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수혜 여부	10,820	.0960259	.2946403	0	1
수도권내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수혜 여부	10,820	.2433457	.4291219	0	1
총 세액감면액	10,820	.4933648	2.583419	0	74.52042
수도권외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10,820	.1125047	1.516172	0	74.52042
수도권내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10,820	.3808601	2.112104	0	66.21677
이전기업	10,820	.978281	.1457713	0	1
수도권 외 이전 기업 수	10,820	.3731054	.4836521	0	1
수도권 내 이전 기업 수	10,820	.8049908	.3962261	0	1
서울 소재	10,820	.0299445	.1704422	0	1
제조업	10,820	.8987061	.3017314	0	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27〉 「조특법」 제63조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기초 통계(2017년)

(단위: 억원, 개)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매출	1,155	137.5786	273.0681	0	3274.823
이윤	1,155	90.45304	352.1102	-1678.172	4227.271
세액감면 수혜 여부	1,155	.4398268	.496581	0	1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수혜 여부	1,155	.1021645	.3029957	0	1
수도권 내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수혜 여부	1,155	.3376623	.4731176	0	1
총 세액감면액	1,155	.4539583	1.92083	0	41.89346
수도권외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1,155	.0528114	.3235905	0	4.937008
수도권내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1,155	.4011469	1.904543	0	41.89346
이전기업	1,155	.9774892	.148402	0	1
수도권외 이전 기업	1,155	.3627706	.4810077	0	1
수도권내 이전 기업	1,155	.8008658	.3995222	0	1
서울 소재	1,155	.0034632	.0587724	0	1
제조업	1,155	.9134199	.2813406	0	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먼저 공제감면세액과 기업 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감면세액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매출이 늘어남
- 수도권 내 이전으로 인한 감면세액과 수도권 외 이전으로 인한 감면세액을 합하여 분석
 - 각각의 분석에서는 아래의 회귀식에 따라 계수를 추정

$$\log(\text{매출})_{i,t} = \alpha + \beta_1 \times \log(\text{감면세액})_{i,t} + \beta_2 \times \text{수혜기업}_i + \beta_3 \times \text{서울소재}_{i,t} + \beta_4 \times \text{제조업}_i + \sum_{t=2008}^{2017} \gamma_t \times I(t) + \epsilon_{i,t}$$

- i 는 기업, t 는 연도를 나타냄
- 감면세액 $_{i,t}$ 은 수도권 내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과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을 합산한 금액
- 수혜기업 $_i$ 의 경우 이전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모든 연도에 대해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기업은 모든 연도에 대해 0의 값을 가짐
- 서울소재 $_{i,t}$ 는 i 기업이 t 년도에 서울에 소재할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짐
- 제조업 $_i$ 는 기업 i 의 업종이 제조업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짐

- $T(t)$ 는 연도가 t 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을 가짐. 따라서 $\sum_{t=2008}^{2017} \gamma_t \times T(t)$ 는 연도 더미를 의미
- $\epsilon_{i,t}$ 는 오차항을 나타냄
- <표 IV-28>에서는 Pooled OLS regression 분석 결과와 Panel regression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며, Panel regression의 경우 Random effect 분석 결과와 Fixed effect 분석 결과를 동시에 제시
 - 기업 간 비교에는 Random effect 분석이 더욱 적합하며 시점 간 비교 즉, 시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는 데는 Fixed effect 분석이 더욱 적합함
-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면세액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매출이 늘어남
 - 구체적인 분석 방법에 따라 규모는 다르지만 대략 감면세액이 1% 늘어날 때 매출은 0.03%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기업 이전에 따라 감면세액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61~96% 정도 더 큼

<표 IV-28> 「조특법」 제63조 감면세액과 기업 매출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log(총감면세액)	0.0352*** (0.00276)	0.0290*** (0.00193)	0.0284*** (0.00194)
이전기업	0.607* (0.323)	0.960*** (0.275)	
서울소재	-0.677** (0.277)	-0.515*** (0.115)	-0.386*** (0.123)
제조업	0.499*** (0.128)	0.508*** (0.0722)	0.510*** (0.0806)
상수	20.69*** (0.340)	20.08*** (0.281)	21.11*** (0.0843)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0,820	10,820	10,820
R-squared	0.042	0.038	0.034
기업수(패널)	-	1,231	1,23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즉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험이 없는 기업에 비해 이전 경험이 있는 기업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훨씬 큼
- 서울에 소재한 기업은 매출 규모가 작으며, 제조업은 매출 규모가 큼

□ 감면세액 대신 감면 여부와 매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 양(+)의 관계가 나타남

- 앞선 분석의 회귀식에서 $\log(\text{감면세액})_{i,t}$ 를 제도수혜여부 $_{i,t}$ 로 대체하며, 이 변수는 i기업이 t년도에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가짐
- <표 IV-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매출이 35~42%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29> 「조특법」 제63조 감면 여부와 기업 매출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세액감면 여부	0.352*** (0.0422)	0.406*** (0.0289)	0.417*** (0.0291)
이전기업	0.662** (0.323)	0.969*** (0.278)	- -
서울소재	-0.726*** (0.278)	-0.516*** (0.115)	-0.382*** (0.123)
제조업	0.519*** (0.128)	0.518*** (0.0724)	0.515*** (0.0807)
상수	20.77*** (0.340)	20.14*** (0.284)	21.17*** (0.0840)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0,820	10,820	10,820
R-squared	0.032	0.030	0.026
기업 수(패널)	-	1,231	1,23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표 IV-30>은 수도권 내 이전과 수도권 외 이전을 분리하여 분석함

- 분석 결과, 두 경우 모두 제도와 매출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표 IV-30> 「조특법」 제63조 감면세액과 기업 매출(수도권 내 vs 수도권 외)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log(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0.0264*** (0.00432)	0.0270*** (0.00338)	0.0273*** (0.00339)
log(수도권 내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0.0392*** (0.00293)	0.0297*** (0.00220)	0.0289*** (0.00221)
수도권 외 이전기업	-0.0937 (0.0920)	0.0126 (0.102)	- -
수도권 내 이전기업	0.323*** (0.116)	0.484*** (0.122)	- -
서울소재	-0.658** (0.285)	-0.513*** (0.115)	-0.386*** (0.123)
제조업	0.505*** (0.126)	0.510*** (0.0722)	0.509*** (0.0806)
상수	20.99*** (0.171)	20.56*** (0.149)	21.05*** (0.0850)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0,820	10,820	10,820
R-squared	0.049	0.045	0.035
기업 수(패널)	-	1,231	1,23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31> 「조특법」 제63조 감면 여부와 기업 매출(수도권 내 vs 수도권 외)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수도권 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여부	0.228*** (0.0657)	0.368*** (0.0502)	0.388*** (0.0504)
수도권 내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여부	0.413*** (0.0444)	0.421*** (0.0330)	0.428*** (0.0332)
수도권 외 이전기업	-0.0704 (0.0930)	0.0180 (0.103)	- -
수도권 내 이전기업	0.354*** (0.116)	0.489*** (0.124)	- -
서울소재	-0.703** (0.285)	-0.514*** (0.115)	-0.382*** (0.123)
제조업	0.524*** (0.127)	0.519*** (0.0723)	0.515*** (0.0807)
상수	21.15*** (0.170)	20.69*** (0.150)	21.18*** (0.0840)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0,820	10,820	10,820
R-squared	0.039	0.037	0.027
기업 수(패널)	-	1,231	1,23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다음의 네 개의 표는 앞선 분석에서 종속변수인 매출을 이윤으로 대체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임

- 분석 결과는 매출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매우 비슷함
 - 계수의 크기만 다를 뿐, 전체적인 방향은 동일

<표 IV-32> 「조특법」 제63조 감면세액과 기업 이윤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log(총감면세액)	0.0534*** (0.00302)	0.0431*** (0.00175)	0.0421*** (0.00176)
이전기업	0.400** (0.202)	0.424 (0.265)	- -
서울소재	-0.179 (0.232)	-0.00685 (0.105)	0.0714 (0.112)
제조업	0.431*** (0.117)	0.281*** (0.0685)	0.219*** (0.0765)
상수	17.71*** (0.228)	17.68*** (0.271)	18.23*** (0.0797)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9,798	9,798	9,798
R-squared	0.069	0.065	0.061
기업 수(패널)	-	1,230	1,23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33> 「조특법」 제63조 감면 여부와 기업 이윤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세액감면 여부	0.510*** (0.0465)	0.548*** (0.0264)	0.558*** (0.0266)
이전기업	0.501** (0.202)	0.455* (0.271)	- -
서울소재	-0.269 (0.233)	-0.0321 (0.106)	0.0537 (0.113)
제조업	0.463*** (0.119)	0.307*** (0.0691)	0.244*** (0.0770)
상수	17.82*** (0.229)	17.76*** (0.276)	18.33*** (0.0800)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9,798	9,798	9,798
R-squared	0.042	0.040	0.037
기업 수(패널)	-	1,230	1,23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34> 「조특법」 제63조 감면세액과 기업 이윤(수도권 내 vs 수도권 외)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log(수도권외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0.0437*** (0.00476)	0.0402*** (0.00303)	0.0401*** (0.00305)
log(수도권내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0.0584*** (0.00327)	0.0442*** (0.00198)	0.0429*** (0.00199)
수도권외이전기업	-0.174* (0.0978)	-0.101 (0.0957)	- -
수도권내이전기업	0.230** (0.114)	0.337*** (0.115)	- -
서울소재	-0.164 (0.235)	-0.00533 (0.105)	0.0708 (0.112)
제조업	0.443*** (0.115)	0.285*** (0.0684)	0.219*** (0.0765)
상수	17.86*** (0.156)	17.76*** (0.140)	18.14*** (0.0803)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9,798	9,798	9,798
R-squared	0.079	0.074	0.062
기업 수(패널)	-	1,230	1,23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35> 「조특법」 제63조 감면 여부와 기업 이윤(수도권 내 vs 수도권 외)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수도권외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여부	0.370*** (0.0720)	0.499*** (0.0452)	0.517*** (0.0455)
수도권내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여부	0.585*** (0.0505)	0.568*** (0.0300)	0.574*** (0.0302)
수도권외이전기업	-0.132 (0.100)	-0.0860 (0.0979)	- -
수도권내이전기업	0.285** (0.116)	0.355*** (0.118)	- -
서울소재	-0.247 (0.236)	-0.0298 (0.106)	0.0531 (0.113)
제조업	0.472*** (0.117)	0.310*** (0.0691)	0.244*** (0.0770)
상수	18.12*** (0.159)	17.95*** (0.142)	18.33*** (0.0800)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9,798	9,798	9,798
R-squared	0.052	0.049	0.038
기업 수(패널)	-	1,230	1,230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바) 「조특법」 제63조의2

- 「조특법」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에 따른 세액감면과 기업 활동의 연관성을 분석함
 - 기업의 매출(수입금액)과 이윤(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연관성을 각각 분석
 - 법인세 자료에 별도로 제공된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과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경우에 따라 합하여, 또는 별도로 분석
 - 분석 방법은 앞서 「조특법」 제63조를 분석한 경우와 동일
 - <표 IV-36>은 본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기초 통계를 보여줌

<표 IV-36> 「조특법」 제63조2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기초 통계(전체 연도)

(단위: 억원)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매출	5,313	3050.462	26370.33	0	602895.8
이윤	5,313	1002.314	21182.02	-495440.3	1016565
세액감면 수혜 여부	5,313	.2811971	.4496258	0	1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수혜 여부	5,313	.0843215	.2778955	0	1
본사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수혜 여부	5,313	.1968756	.3976749	0	1
총 세액감면액	5,313	5.977264	67.6824	0	2063.279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5,313	.8870152	8.858217	0	264.1938
본사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5,313	5.090249	67.16748	0	2063.279
이전기업	5,313	.8740824	.3317877	0	1
공장 이전 기업	5,313	.30623	.4609698	0	1
본사 이전 기업	5,313	.6230002	.4846805	0	1
서울 소재	5,313	.085639	.2798566	0	1
제조업	5,313	.561453	.4962559	0	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37> 「조특법」 제63조2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기초 통계(2017년)

(단위: 억원)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매출	510	3563.901	30508.66	0	599657.4
이윤	510	1637.113	17559.73	-153541.2	276070.8
세액감면 수혜 여부	510	.3058824	.4612326	0	1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수혜 여부	510	.0882353	.2839153	0	1
본사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수혜 여부	510	.2176471	.4130513	0	1
총 세액감면액	510	14.83806	135.5956	0	2063.279
공장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510	.6362539	4.612637	0	74.78414
본사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510	14.2018	135.5839	0	2063.279
이전기업	510	.8882353	.3153861	0	1
공장 이전 기업	510	.3078431	.4620545	0	1
본사 이전 기업	510	.6352941	.4818202	0	1
서울 소재	510	.0568627	.2318075	0	1
제조업	510	.572549	.4951944	0	1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표 IV-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면세액이 1% 늘어날 때마다 기업의 매출은 0.04~0.08% 증가
 - 이전하여 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과 비교할 때 매출상 큰 차이는 없음

<표 IV-38> 「조특법」 제63조2 감면세액과 기업 매출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log(총감면세액)	0.0808*** (0.00734)	0.0426*** (0.00405)	0.0389*** (0.00406)
이전기업	-0.000578 (0.245)	0.225 (0.315)	- -
서울소재	0.931** (0.402)	-0.976*** (0.190)	-1.486*** (0.211)
제조업	0.897*** (0.227)	0.964*** (0.137)	1.077*** (0.170)
상수	21.35*** (0.288)	21.32*** (0.319)	21.64*** (0.129)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5,313	5,313	5,313
R-squared	0.056	0.025	0.016
기업 수(패널)	-	587	587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Pooled OLS regression에서는 서울에 소재한 기업의 매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Panel regression에서는 반대로 나타남
 - 이는 전체적으로 서울에 소재한 기업의 매출 규모가 크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일 수 있음

□ <표 IV-39>에서는 감면세액 대신 감면 여부와 매출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 양(+)의 관계가 나타남

-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매출이 61~95% 정도 증가

<표 IV-39> 「조특법」 제63조2 감면 여부와 기업 매출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세액감면 여부	0.954*** (0.124)	0.640*** (0.0652)	0.607*** (0.0654)
이전기업	0.109 (0.247)	0.240 (0.322)	- -
서울소재	0.941** (0.413)	-1.005*** (0.191)	-1.492*** (0.211)
제조업	0.900*** (0.231)	0.976*** (0.138)	1.087*** (0.170)
상수	21.52*** (0.287)	21.41*** (0.326)	21.73*** (0.127)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5,313	5,313	5,313
R-squared	0.041	0.017	0.011
기업 수(패널)	-	587	587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표 IV-40, 41>에서는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과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을 각각 별도로 포함하여 분석

- 분석 결과, 두 경우 모두 제도와 매출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남

<표 IV-40> 「조특법」 제63조2 감면세액과 기업 매출(공장이전 vs 본사이전)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log(공장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0.0811*** (0.00975)	0.0305*** (0.00708)	0.0253*** (0.00708)
log(본사 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0.0844*** (0.00947)	0.0486*** (0.00485)	0.0451*** (0.00485)
공장이전 기업	-0.0333 (0.223)	0.174 (0.291)	- -
본사이전 기업	-0.314 (0.222)	-0.123 (0.278)	- -
서울소재	0.879** (0.400)	-0.955*** (0.191)	-1.462*** (0.211)
제조업	0.777*** (0.236)	0.926*** (0.143)	1.089*** (0.170)
상수	21.42*** (0.274)	21.47*** (0.285)	21.56*** (0.131)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5,313	5,313	5,313
R-squared	0.057	0.026	0.015
기업 수(패널)	-	587	587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41> 「조특법」 제63조2 감면 여부와 기업 매출(공장이전 vs 본사이전)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여부	1.049*** (0.158)	0.454*** (0.115)	0.396*** (0.115)
본사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여부	0.978*** (0.161)	0.729*** (0.0776)	0.700*** (0.0777)
공장이전 기업	0.0290 (0.226)	0.183 (0.298)	- -
본사이전 기업	-0.224 (0.225)	-0.111 (0.284)	- -
서울소재	0.880** (0.408)	-0.986*** (0.191)	-1.468*** (0.211)
제조업	0.768*** (0.239)	0.938*** (0.144)	1.096*** (0.170)
상수	21.81*** (0.272)	21.65*** (0.290)	21.72*** (0.127)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5,313	5,313	5,313
R-squared	0.042	0.018	0.010
기업 수(패널)	-	587	587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다음의 네 개의 표는 앞선 분석에서 종속변수인 매출을 이윤으로 대체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임

- 분석 결과는 매출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매우 비슷함
 - 계수의 크기만 다를 뿐, 전체적인 방향은 동일

<표 IV-42> 「조특법」 제63조2 감면세액과 기업 이윤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log(총감면세액)	0.0710*** (0.00707)	0.0355*** (0.00285)	0.0330*** (0.00285)
이전기업	-0.0217 (0.244)	0.154 (0.260)	- -
서울소재	1.291*** (0.348)	-0.0609 (0.142)	-0.377** (0.154)
제조업	-0.00383 (0.195)	0.154 (0.106)	0.297** (0.128)
상수	19.09*** (0.271)	19.19*** (0.261)	19.40*** (0.0961)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4,444	4,444	4,444
R-squared	0.070	0.041	0.019
기업 수(패널)	-	583	583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43> 「조특법」 제63조2 감면 여부와 기업 이윤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세액감면 여부	0.676*** (0.109)	0.489*** (0.0459)	0.474*** (0.0461)
이전기업	0.146 (0.245)	0.188 (0.269)	- -
서울소재	1.283*** (0.365)	-0.101 (0.143)	-0.397** (0.155)
제조업	-0.00569 (0.200)	0.173 (0.107)	0.312** (0.129)
상수	19.23*** (0.272)	19.26*** (0.269)	19.48*** (0.0956)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4,444	4,444	4,444
R-squared	0.042	0.016	0.004
기업 수(패널)	-	583	583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44> 「조특법」 제63조2 감면세액과 기업 이윤(공장이전 vs 본사이전)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log(공장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0.0726*** (0.0144)	0.0242*** (0.00487)	0.0207*** (0.00487)
log(본사이전에 따른 감면세액)	0.0724*** (0.00738)	0.0411*** (0.00343)	0.0389*** (0.00342)
공장 이전 기업	-0.0961 (0.225)	0.0492 (0.238)	- -
본사 이전 기업	-0.167 (0.212)	-0.0137 (0.228)	- -
서울소재	1.273*** (0.346)	-0.0343 (0.142)	-0.353** (0.154)
제조업	-0.0380 (0.204)	0.162 (0.111)	0.310** (0.128)
상수	19.05*** (0.250)	19.25*** (0.231)	19.33*** (0.0974)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4,444	4,444	4,444
R-squared	0.070	0.039	0.017
기업 수(패널)	-	583	583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45> 「조특법」 제63조2 감면 여부와 기업 이윤(공장이전 vs 본사이전)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공장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여부	0.880*** (0.203)	0.369*** (0.0793)	0.336*** (0.0794)
본사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여부	0.623*** (0.123)	0.547*** (0.0550)	0.538*** (0.0551)
공장 이전 기업	-0.0226 (0.230)	0.0509 (0.247)	- -
본사 이전 기업	-0.0126 (0.217)	0.0235 (0.236)	- -
서울소재	1.248*** (0.361)	-0.0815 (0.143)	-0.380** (0.155)
제조업	-0.0581 (0.210)	0.176 (0.112)	0.320** (0.129)
상수	19.39*** (0.252)	19.39*** (0.238)	19.48*** (0.0956)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4,444	4,444	4,444
R-squared	0.042	0.014	0.004
기업 수(패널)	-	583	583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기업이 「조특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 매출과 이윤이 증가함
 - 조세감면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분석에 있어서 설명변수의 외생적인 변이(exogenous variation)를 활용하지 않음
 - 그보다는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매출, 이윤 등의 성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하는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이전을 하였고, 이전 후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감면기업의 기업 활동이 지방이전 후 집적이익의 감소 등으로 위축되지는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기업 이전과 기업 활동

- 정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밖 지역에서의 고용 창출
 - 법인세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는 자료의 한계상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지 못함
 - 본 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고용과 생산성(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분석
 - <표 IV-46, 47>은 본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를 제시함

<표 IV-46>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전체 연도)

(단위: 억원)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근로자 수	15,221	328.6789	829.5773	1	33983
정규직 근로자 수	6,299	197.0084	433.168	0	9082
비정규직 근로자 수	6,299	32.21273	214.6993	0	12122
외국인 근로자 수	15,221	1.519742	13.9016	0	1000
채용 근로자 수	15,221	60.31069	210.1913	0	6842
이직 근로자 수	15,221	56.76145	201.1095	0	6413
매출	11,419	7423.583	33291.02	0	1583721
이윤	11,365	387.6404	3144.81	-53051.37	179295.2
자산총액	11,375	12487.97	72432.09	0	2379915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8,382	1.12061	4.466422	-44.6562	270.7492
이전 기업	15,221	.0559753	.2298816	0	1
서울 소재	15,221	.2838184	.4508646	0	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47> 분석에 사용한 주요 변수의 기초 통계(2017년)

(단위: 억원)

변수	N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전체 근로자 수	2,868	238.0516	506.5157	1	8815
정규직 근로자 수	2,868	208.6112	457.5149	0	8659
비정규직 근로자 수	2,868	29.44038	170.4493	0	7465
외국인 근로자 수	2,868	1.169456	5.963546	0	137
채용 근로자 수	2,868	50.09937	197.513	0	6684
이직 근로자 수	2,868	47.95188	193.9201	0	6262
매출	2,003	6077.717	25175.74	2.31	416048.7
이윤	2,003	262.4421	1786.855	-16262.06	27889.12
자산총액	2,003	11161.09	63529.45	1.1	1736829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	1,375	1.300952	2.055572	-11.3556	35.4348
이전 기업	2,868	.0369596	.1886954	0	1
서울 소재	2,868	.1987448	.3991251	0	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가) 기업 이전과 고용

□ <표 IV-48>에서는 기업 이전이 고용(근로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각각의 분석에서는 아래의 회귀식에 따라 계수를 추정

$$\log(\text{근로자수})_{i,t} = \alpha + \beta_1 \times \text{이전이후}_{i,t} + \beta_2 \times \text{이전기업}_i + \beta_3 \times \log(\text{매출액})_{i,t} + \beta_4 \times \log(\text{자산총액})_{i,t} + \sum_{t=1}^7 \gamma_t \times T(t) + \epsilon_{i,t}$$

- i는 기업, t는 연도를 나타냄
- 이전이후_{i,t}는 이전한 기업이 이전한 이후 시기에 대해서는 1, 그렇지 않은 경우. 즉, 이전한 기업이더라도 이전하기 전의 시기 및 이전하지 않은 기업의 모든 시기에 대해 0의 값을 가짐
- 이전기업_i의 경우 이전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모든 연도에 대해 1의 값을, 그렇지 않은 기업은 모든 연도에 대해 0의 값을 가짐
- 매출액_{i,t} 및 자산총액_{i,t}은 i기업의 t년도 매출액과 자산총액을 나타냄
- T(t)는 시기가 t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을 가짐, 따라서 $\sum_{t=1}^7 \gamma_t \times T(t)$ 는 시기 더미를 의미
- 각각의 시기는 사업체패널 조사연도를 나타내며, t=1인 2005, t=2는 2007년, ... t=7은 2017년을 나타냄
- $\epsilon_{i,t}$ 는 오차항을 나타냄

- 이상적으로는 전체 기업을 이전한 기업과 이전하지 않은 기업, 이렇게 두 집단($X = 0$ or 1)으로 나누고, 시기를 이전하기 전의 시기와 후 시기인 두 시기($T = 0$ or 1)로 나누어 회귀식에 X 와 T , 그리고 교차항($X \times T$)을 포함시키는 이중차분법 (Difference-in-differences)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본 분석의 경우 이전한 기업마다 이전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이중차분법을 적용할 수 없음
 - 위 회귀식에서 이전기업 _{i} 는 X , 이전이후 _{i,t} 는 $X \times T$ 에 해당됨
 - 다만 T 자체는 이전한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음
 - 부록에서는 사업체패널 전체 시기 중 기업 이전이 가장 많았던 두 시기만을 선택해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함
- 이하 표에서는 Pooled OLS regression 분석 결과와 Panel regression 분석 결과를 함께 제시하며, Panel regression의 경우 Random effect 분석 결과와 Fixed effect 분석 결과를 동시에 제시
 - 기업 간 비교에는 Random effect 분석이 더욱 적합하며, 시점 간 비교 즉, 시기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 변화를 분석하는 데는 Fixed effect 분석이 더욱 적합함
- 전체 기업(이전한 기업 및 이전하지 않음 기업)에 대한 분석에 앞서 이전한 경험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봄
 - <표 IV-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nel 분석 결과 이전한 경험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가 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48>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이전한 기업 전체)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176 (0.118)	-0.0881* (0.0458)	-0.0905** (0.0461)
log(매출)	0.323*** (0.0877)	0.122*** (0.0286)	0.0565* (0.0306)
log(자산총액)	0.0511 (0.0734)	0.111*** (0.0263)	0.0833*** (0.0292)
상수	1.226*** (0.419)	2.655*** (0.238)	3.768*** (0.309)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765	765	765
R-squared	0.441	0.425	0.411
기업 수(패널)	-	162	16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다음의 네 개의 표에서는 이전 방향에 따라 전체 근로자 수 변화를 비교
 - 이전에 따른 근로자 수 감소는 주로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한 기업의 고용 감소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그 외 다른 방향으로의 이전인 경우 유의한 수준의 고용 감소가 나타나지 않음
 - 타 지역에서 서울·인천·경기로 이전한 기업의 경우 유의한 수준에서 고용이 증가

<표 IV-49>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231 (0.167)	-0.0842 (0.0675)	-0.0786 (0.0683)
log(매출)	0.338*** (0.112)	0.0802** (0.0375)	0.0250 (0.0402)
log(자산총액)	0.00158 (0.0934)	0.129*** (0.0370)	0.133*** (0.0421)
상수	1.777*** (0.586)	3.078*** (0.362)	3.706*** (0.464)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405	405	405
R-squared	0.376	0.331	0.300
기업 수(패널)		82	8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50>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464* (0.242)	0.0756 (0.0680)	0.0864 (0.0647)
log(매출)	0.440*** (0.105)	0.0605* (0.0351)	0.00512 (0.0346)
log(자산총액)	0.00698 (0.0760)	0.148*** (0.0382)	0.0894** (0.0423)
상수	0.608 (0.534)	3.170*** (0.407)	4.507*** (0.477)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270	270	270
R-squared	0.556	0.450	0.371
기업 수(패널)	-	49	49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51>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서울로 이전한 기업)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0466 (0.198)	-0.307** (0.119)	-0.345*** (0.121)
log(매출)	0.311*** (0.102)	0.0510 (0.0609)	-0.0229 (0.0647)
log(자산총액)	0.000864 (0.0929)	0.130** (0.0568)	0.120* (0.0626)
상수	1.687*** (0.622)	3.033*** (0.444)	4.028*** (0.543)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83	183	183
R-squared	0.401	0.345	0.246
기업 수(패널)	-	41	4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52>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타 지역에서 서울·인천·경기로 이전한 기업)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959** (0.384)	0.667*** (0.221)	0.439* (0.230)
log(매출)	0.143 (0.118)	0.118 (0.0929)	0.108 (0.104)
log(자산총액)	0.172 (0.125)	0.181** (0.0910)	-0.0540 (0.174)
상수	1.497** (0.610)	1.660*** (0.603)	4.451*** (1.432)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57	57	57
R-squared	0.681	0.672	0.390
기업 수(패널)	-	12	12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기업 이전에 따른 고용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전하지 않은 기업도 분석에 포함하여 비교해야 함

○ <표 IV-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이전한 기업에서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음

- 이전을 경험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전체 근로자 수가 16~18% 정도 더 많음
- 규모가 작은 기업보다 큰 기업이 더 많이 이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표 IV-53>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00550 (0.0788)	0.0167 (0.0280)	0.00462 (0.0277)
이전 기업	0.181** (0.0848)	0.159** (0.0701)	- -
log(매출)	0.317*** (0.0168)	0.188*** (0.00628)	0.106*** (0.00742)
log(자산총액)	-0.00312 (0.0140)	0.0373*** (0.00498)	0.0157*** (0.00556)
상수	1.842*** (0.0946)	2.677*** (0.0530)	3.805*** (0.0786)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1,347	11,347	11,347
R-squared	0.372	0.367	0.363
기업 수(패널)	-	3,978	3,97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조세특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임
- 따라서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변화를 다른 기업(이전하지 않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전)의 변화와 비교해 볼 수 있음
 -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이전 관련 변수에 1을 부여하고, 나머지 경우는 0을 부여
 - <표 IV-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근로자 수가 1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54> 기업 이전 후 전체 근로자 수 변화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0342 (0.142)	0.132*** (0.0454)	0.135*** (0.0447)
이전 기업	0.434*** (0.147)	0.391*** (0.124)	- -
log(매출)	0.317*** (0.0168)	0.188*** (0.00628)	0.105*** (0.00741)
log(자산총액)	-0.00358 (0.0140)	0.0374*** (0.00498)	0.0158*** (0.00555)
상수	1.851*** (0.0937)	2.685*** (0.0530)	3.812*** (0.0786)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1,347	11,347	11,347
R-squared	0.373	0.368	0.365
기업 수(패널)	-	3,978	3,97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다음의 여섯 개의 표에서는 전체 근로자 수 변화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 비정규직 근로자 수,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를 분석

<표 IV-55> 기업 이전 후 정규직 근로자 수 변화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332* (0.200)	0.110 (0.106)	0.0741 (0.109)
이전 기업	0.0451 (0.210)	0.239* (0.127)	- -
log(매출)	0.244*** (0.0212)	0.176*** (0.0153)	0.0402* (0.0242)
log(자산총액)	0.0537*** (0.0185)	0.0809*** (0.0137)	0.0111 (0.0305)
상수	1.577*** (0.108)	2.003*** (0.0842)	4.221*** (0.299)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4,335	4,335	4,335
R-squared	0.323	0.322	0.319
기업 수(패널)	-	2,701	2,7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56> 기업 이전 후 정규직 근로자 수 변화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379 (0.268)	-0.00857 (0.173)	0.0892 (0.178)
이전 기업	0.957*** (0.257)	0.649*** (0.205)	- -
log(매출)	0.244*** (0.0212)	0.176*** (0.0152)	0.0401* (0.0243)
log(자산총액)	0.0536*** (0.0185)	0.0808*** (0.0137)	0.0113 (0.0305)
상수	1.586*** (0.107)	2.007*** (0.0841)	4.222*** (0.299)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4,335	4,335	4,335
R-squared	0.325	0.323	0.319
기업 수(패널)	-	2,701	2,7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57> 기업 이전 후 비정규직 근로자 수 변화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201 (0.234)	-0.167 (0.155)	-0.151 (0.168)
이전 기업	0.653*** (0.236)	0.588*** (0.164)	- -
log(매출)	0.194*** (0.0227)	0.169*** (0.0184)	0.0398 (0.0372)
log(자산총액)	-0.0964*** (0.0221)	-0.0786*** (0.0163)	-0.00364 (0.0468)
상수	1.825*** (0.106)	1.907*** (0.0942)	2.502*** (0.459)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4,335	4,335	4,335
R-squared	0.055	0.055	0.024
기업 수(패널)	-	2,701	2,7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58> 기업 이전 후 비정규직 근로자 수 변화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693** (0.306)	-0.536** (0.253)	-0.444 (0.273)
이전 기업	1.431*** (0.268)	1.269*** (0.268)	- -
log(매출)	0.193*** (0.0227)	0.169*** (0.0184)	0.0409 (0.0372)
log(자산총액)	-0.0963*** (0.0221)	-0.0787*** (0.0163)	-0.00481 (0.0468)
상수	1.836*** (0.105)	1.914*** (0.0940)	2.504*** (0.458)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4,335	4,335	4,335
R-squared	0.058	0.058	0.011
기업 수(패널)	-	2,701	2,70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59> 기업 이전 후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00660 (0.0199)	-0.00410 (0.0189)	-0.00524 (0.0199)
이전 기업	-0.00782 (0.0185)	-0.00846 (0.0181)	- -
log(매출)	0.00266 (0.00306)	0.00196 (0.00303)	0.00576 (0.00534)
log(자산총액)	-0.00430* (0.00258)	-0.00255 (0.00252)	0.00106 (0.00400)
상수	2.423*** (0.0167)	2.413*** (0.0182)	2.335*** (0.0566)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1,347	11,347	11,347
R-squared	0.004	0.004	0.001
기업 수(패널)	-	3,978	3,97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60〉 기업 이전 후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0107 (0.00724)	0.00136 (0.0313)	-0.00389 (0.0322)
이전 기업	-0.0529*** (0.0177)	-0.0511* (0.0298)	- -
log(매출)	0.00260 (0.00306)	0.00194 (0.00303)	0.00577 (0.00534)
log(자산총액)	-0.00415 (0.00260)	-0.00245 (0.00252)	0.00106 (0.00400)
상수	2.422*** (0.0169)	2.413*** (0.0181)	2.335*** (0.0566)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1,347	11,347	11,347
R-squared	0.004	0.004	0.001
기업 수(패널)	-	3,978	3,97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전체 근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채용 근로자 수와 이직 근로자 수는 많을 수 있음
 -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직한 근로자 수와 이전하면서 채용한 근로자 수가 비슷하다면, 전체 근로자 수는 크게 변하지 않음
 - <표 IV-61, 62>는 기업 이전 후 채용 근로자 수 변화를 보여줌
 - Panel 분석에 따르면, 이전한 기업은 이전 후 채용 근로자 수가 12~15%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이전 후 채용 근로자 수가 2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61> 기업 이전 후 채용 근로자 수 변화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125 (0.0888)	0.149*** (0.0532)	0.117** (0.0545)
이전 기업	0.0867 (0.0876)	0.0418 (0.0698)	- -
log(매출)	0.188*** (0.0156)	0.141*** (0.00984)	0.0902*** (0.0146)
log(자산총액)	-0.0603*** (0.0127)	-0.0226*** (0.00808)	0.0145 (0.0109)
상수	2.354*** (0.0860)	2.395*** (0.0655)	2.520*** (0.155)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1,347	11,347	11,347
R-squared	0.098	0.096	0.088
기업 수(패널)	-	3,978	3,97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62> 기업 이전 후 채용 근로자 수 변화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0381 (0.151)	0.212** (0.0870)	0.202** (0.0881)
이전 기업	0.226 (0.158)	0.130 (0.119)	- -
log(매출)	0.187*** (0.0155)	0.141*** (0.00984)	0.0894*** (0.0146)
log(자산총액)	-0.0600*** (0.0128)	-0.0222*** (0.00808)	0.0147 (0.0109)
상수	2.355*** (0.0848)	2.394*** (0.0654)	2.524*** (0.155)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1,347	11,347	11,347
R-squared	0.098	0.096	0.087
기업 수(패널)	-	3,978	3,97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표 IV-63, 64>는 기업 이전 후 이직 근로자 수 변화를 나타냄
 - 기업 이전 후 이직자 수 증가는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남

-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이전 후 이직 근로자 수가 19~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63> 기업 이전 후 이직 근로자 수 변화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114 (0.0842)	0.114** (0.0526)	0.0803 (0.0540)
이전 기업	0.0566 (0.0834)	0.0447 (0.0674)	- -
log(매출)	0.180*** (0.0147)	0.139*** (0.00964)	0.0738*** (0.0145)
log(자산총액)	-0.0532*** (0.0122)	-0.0258*** (0.00793)	8.93e-05 (0.0108)
상수	2.303*** (0.0823)	2.396*** (0.0636)	2.801*** (0.153)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1,347	11,347	11,347
R-squared	0.100	0.098	0.094
기업 수(패널)	-	3,978	3,97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64> 기업 이전 후 이직 근로자 수 변화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107 (0.159)	0.200** (0.0861)	0.186** (0.0872)
이전 기업	0.102 (0.160)	0.0537 (0.115)	- -
log(매출)	0.180*** (0.0147)	0.139*** (0.00964)	0.0730*** (0.0145)
log(자산총액)	-0.0527*** (0.0122)	-0.0253*** (0.00793)	0.000311 (0.0108)
상수	2.305*** (0.0815)	2.396*** (0.0636)	2.806*** (0.153)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1,347	11,347	11,347
R-squared	0.099	0.098	0.094
기업 수(패널)	-	3,978	3,97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표 IV-65>는 기업 이전 후 채용근로자/이직근로자 비율 변화를 분석한 결과임
 - 기업 이전 후, 채용근로자/이직근로자 비율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임

<표 IV-65> 기업 이전 후 채용근로자/이직근로자 비율 변화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0105 (0.0360)	0.0196 (0.0387)	0.0366 (0.0437)
이전 기업	0.0301 (0.0295)	0.0211 (0.0296)	- -
log(매출)	0.00761 (0.00596)	0.00679 (0.00543)	0.0164 (0.0117)
log(자산총액)	-0.00709 (0.00491)	-0.00572 (0.00456)	0.0144 (0.00877)
상수	0.0505 (0.0344)	0.0449 (0.0310)	-0.281** (0.124)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1,347	11,347	11,347
R-squared	0.005	0.005	0.0004
기업 수(패널)	-	3,978	3,97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66> 기업 이전 후 채용근로자/이직근로자 비율 변화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0691 (0.0533)	-0.0427 (0.0647)	0.0158 (0.0706)
이전 기업	0.123*** (0.0420)	0.110** (0.0468)	- -
log(매출)	0.00770 (0.00595)	0.00688 (0.00543)	0.0164 (0.0117)
log(자산총액)	-0.00726 (0.00489)	-0.00589 (0.00456)	0.0144 (0.00877)
상수	0.0507 (0.0343)	0.0447 (0.0309)	-0.282** (0.124)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11,347	11,347	11,347
R-squared	0.005	0.005	0.0004
기업 수(패널)	-	3,978	3,978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나) 기업 이전과 생산성

- 본 절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 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
 - 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로 측정
 - 아래 분석의 종속변수는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 log(0) 값을 피하기 위해 로그를 취한 모든 변수에 10을 더한 후 로그를 취함
 - 부가가치가 음(-)인 기업은 부가가치의 절대값에 10을 더하여 로그를 취한 후 (-1)을 곱함(즉 $x < 0$ 인 경우 $\log x = -\log(|x| + 10)$ 으로 정의)
 - 분석 결과 기업의 이전이 1인당 부가가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분석(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분석 중 Random effect Panel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긴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높진 않음

<표 IV-67> 기업 이전 후 1인당 부가가치 변화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0941*	0.0428	0.0228
	(0.0571)	(0.0384)	(0.0399)
이전 기업	-0.0888*	-0.0349	-
	(0.0456)	(0.0445)	-
log(매출)	-0.00883	0.0544***	0.108***
	(0.0177)	(0.00834)	(0.0134)
log(자산총액)	0.170***	0.111***	-0.0105
	(0.0163)	(0.00735)	(0.0125)
상수	2.574***	2.506***	3.222***
	(0.0583)	(0.0474)	(0.158)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8,132	8,132	8,132
R-squared	0.313	0.307	0.235
기업 수(패널)	-	3,181	3,18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68> 기업 이전 후 1인당 부가가치 변화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144 (0.0894)	0.120* (0.0654)	0.104 (0.0672)
이전 기업	-0.0253 (0.0773)	0.0401 (0.0770)	- -
log(매출)	-0.00864 (0.0177)	0.0541*** (0.00834)	0.108*** (0.0135)
log(자산총액)	0.170*** (0.0163)	0.111*** (0.00735)	-0.0101 (0.0125)
상수	2.570*** (0.0580)	2.507*** (0.0473)	3.227*** (0.158)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8,132	8,132	8,132
R-squared	0.313	0.307	0.236
기업 수(패널)	-	3,181	3,18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 <표 IV-69, 70>에서의 분석은 부가가치가 음수인 기업을 제외한 분석
 - 전체 기업 대상 분석과 비슷한 결과를 보임

<표 IV-69> 기업 이전 후 1인당 부가가치 변화(부가가치>0)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0941* (0.0571)	0.0428 (0.0384)	0.0228 (0.0399)
이전 기업	-0.0888* (0.0456)	-0.0349 (0.0445)	- -
log(매출)	-0.00883 (0.0177)	0.0544*** (0.00834)	0.108*** (0.0134)
log(자산총액)	0.170*** (0.0163)	0.111*** (0.00735)	-0.0105 (0.0125)
상수	2.574*** (0.0583)	2.506*** (0.0474)	3.222*** (0.158)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8,132	8,132	8,132
R-squared	0.313	0.307	0.235
기업 수(패널)	-	3,181	3,18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표 IV-70> 기업 이전 후 1인당 부가가치 변화
(부가가치>0, 서울·인천·경기에서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변수	(1) Pooled OLS	(2) Random	(3) Fixed
이전 이후	0.144 (0.0894)	0.120* (0.0654)	0.104 (0.0672)
이전 기업	-0.0253 (0.0773)	0.0401 (0.0770)	- -
log(매출)	-0.00864 (0.0177)	0.0541*** (0.00834)	0.108*** (0.0135)
log(자산총액)	0.170*** (0.0163)	0.111*** (0.00735)	-0.0101 (0.0125)
상수	2.570*** (0.0580)	2.507*** (0.0473)	3.227*** (0.158)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N	8,132	8,132	8,132
R-squared	0.313	0.307	0.236
기업 수(패널)	-	3,181	3,18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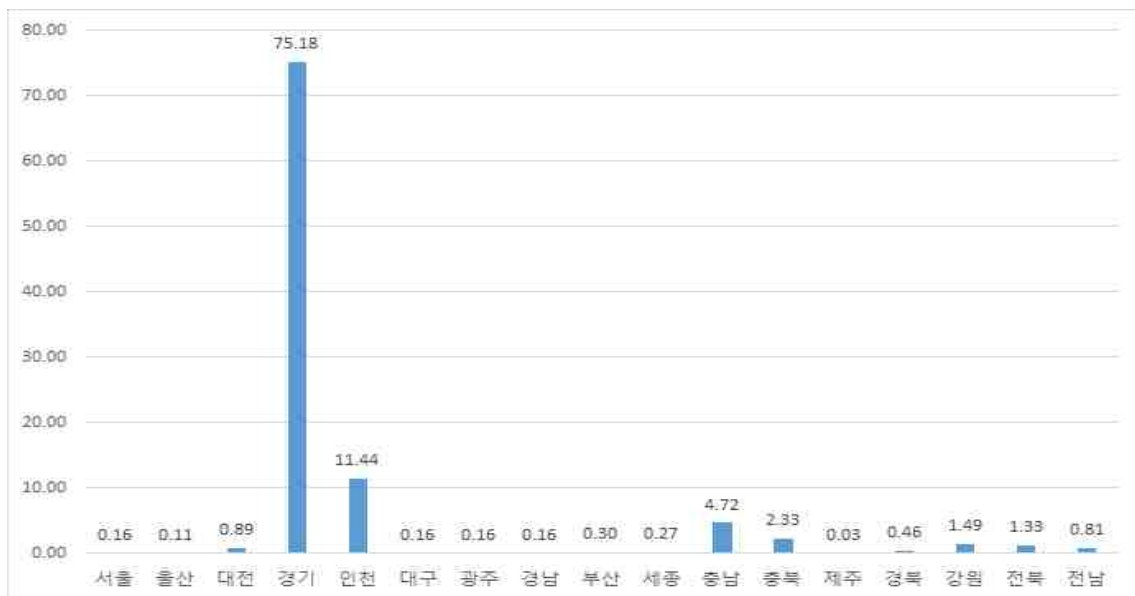
다. 이전지역의 낙후도

- 균형발전 효과는 기업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할 때 극대화 될 수 있으므로, 수혜기업들의 이전지역을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음
 - 예를 들어, 「조특법」 제63조의 경우 수혜기업이 수도권 내로 이전하는 것보다 전남으로 이전하는 것이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지역낙후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KDI에서 재정, 인프라, 인구, 기업 등 관련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하여 점수화한 지수를 이용할 수 있음
 - 지수가 높을수록 지역발전 정도가 크단 것을 의미
 - 시도별 지표만 있어 시도 내 낙후 정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그림 IV-17, 18]에서는 법인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 2 수혜기업이 이전한 지역을 살펴봄
 - 구체적으로 수혜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은 연도에 어느 시도에 위치해 있는지를 살펴봄

- 아래 그래프에서 좌측으로 갈수록 지역발전 정도가 큰 지역임
 - 서울, 울산, 대전, 경기, 인천, 대구, 광주, 경남, 부산, 세종, 충남, 충북, 제주, 경북, 강원, 전북, 전남
 - 즉 그래프에서 우측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많을수록 기업이전으로 인한 균형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수도권 내 이전이 가능한 조특법 제63조의 경우 대부분의 수혜기업이 경기, 인천으로 이전함³³⁾
- 제63조의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한 경우에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건수 기준으로는 경기가 75.2%, 인천이 11.4%를 차지하며,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경기가 77.7%, 11.5%를 차지함
 - 그 외의 지역으로는 충남, 충북, 강원 등의 순으로 이전기업이 많음
 - 중소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집적이익의 감소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혜기업의 수도권 내 이전 비중이 높은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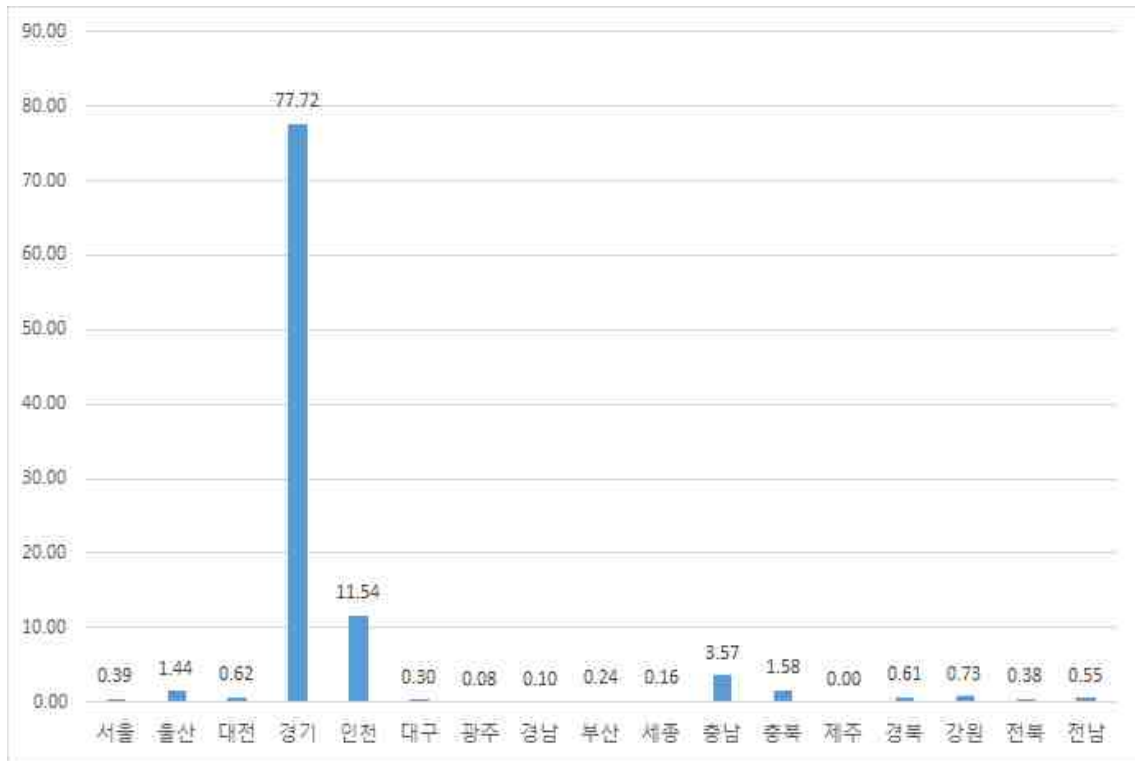
[그림 IV-17] 「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 이전지역 비중(건수 기준)



자료: 저자 작성

33) 「조특법」 제63조의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할 경우에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그림 IV-18] 「조특법」 제63조 수혜기업 이전지역 비중(수입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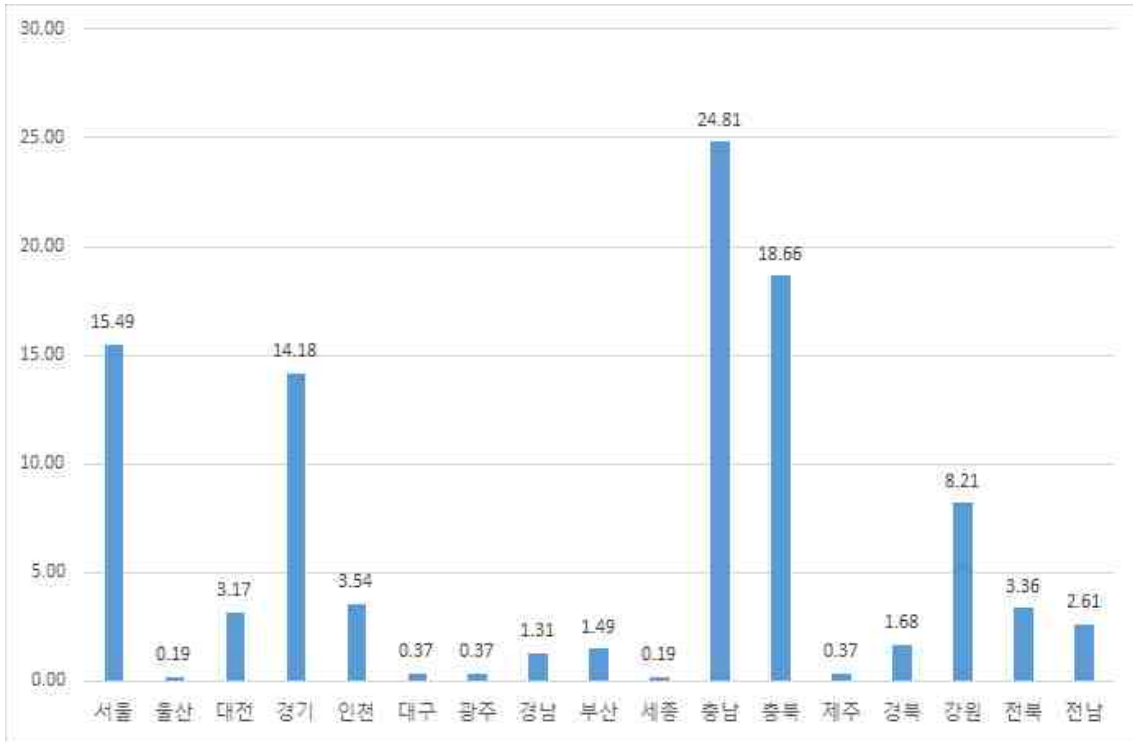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조특법」 제63조의2의 경우 수도권 내 이전이 불가능함에도 상당한 비중의 수혜 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은 연도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법인세 자료 특성상 본점의 위치와 관할 세무서에 따라 시도가 기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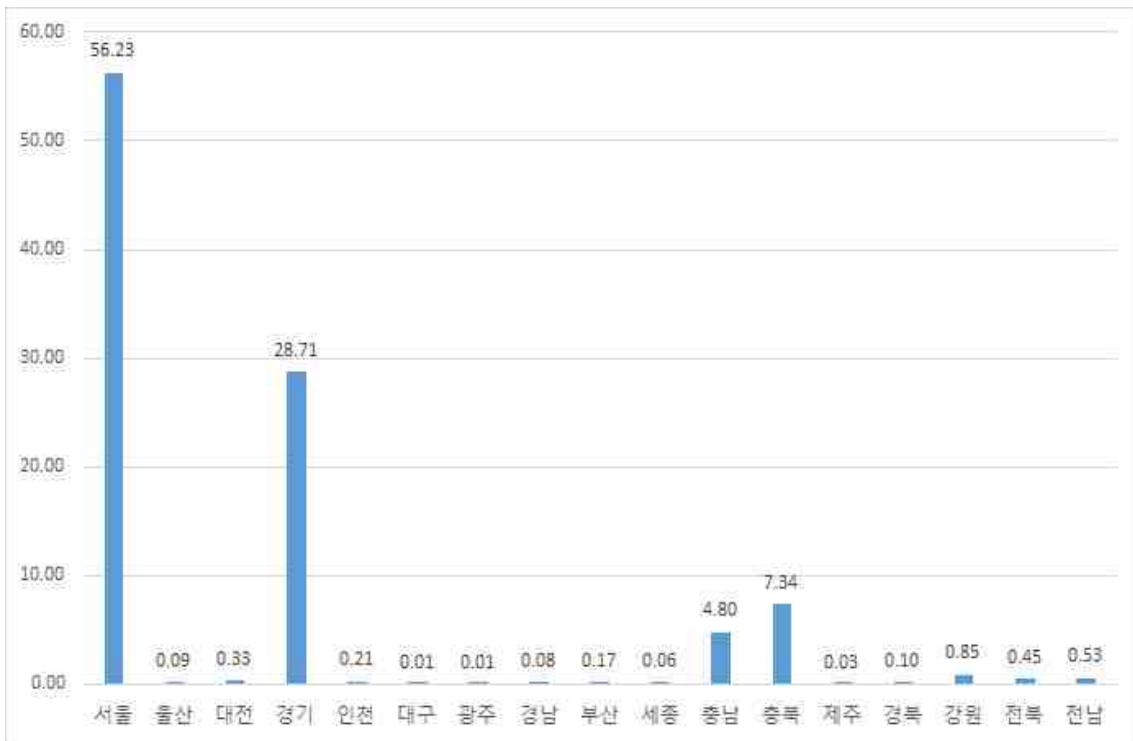
- 즉 공장이 이전한 경우 수도권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서울, 경기, 인천이 건수 기준으로는 33.2%,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85.2%를 차지함
 - 수도권을 제외하면 충남, 충북, 강원의 비중이 높음
- 본사가 이전한 경우에 건수 기준으로는 충남, 충북, 강원의 비중이 높으나, 수입금액 기준으로는 전남(35.3%), 대구(18.69%), 경남(18.1%)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

[그림 IV-19]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 이전지역 비중(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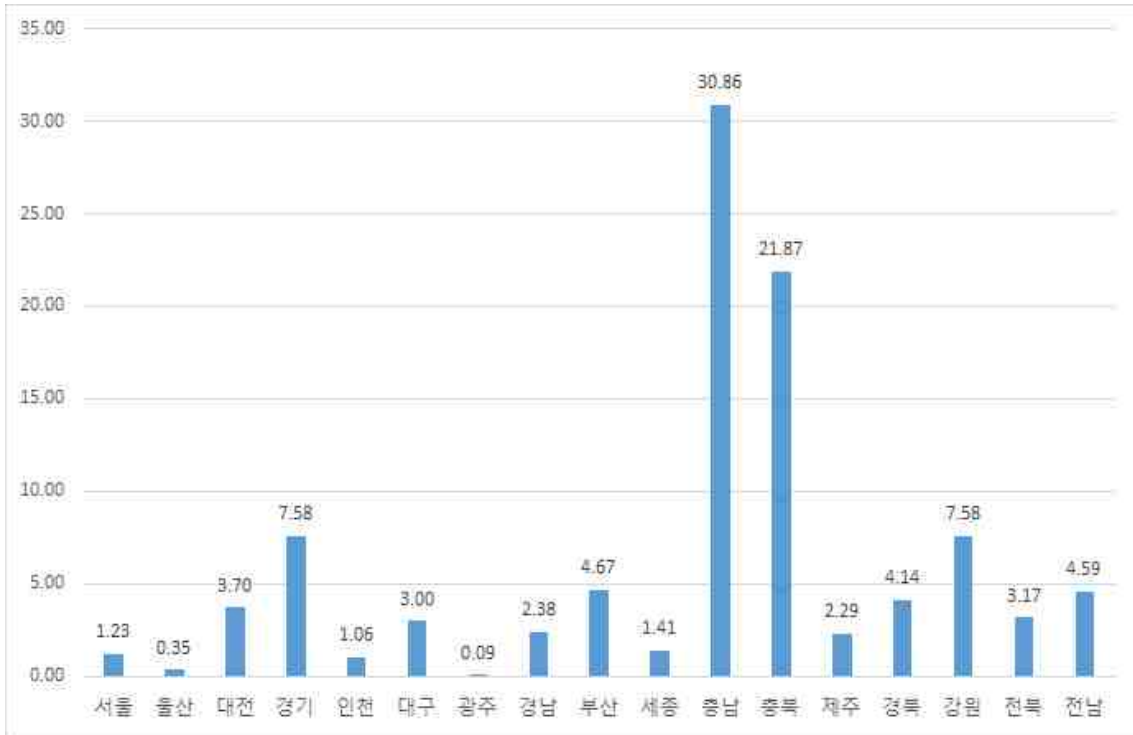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20] 「조특법」 제63조의2 공장이전 수혜기업 이전지역 비중(수입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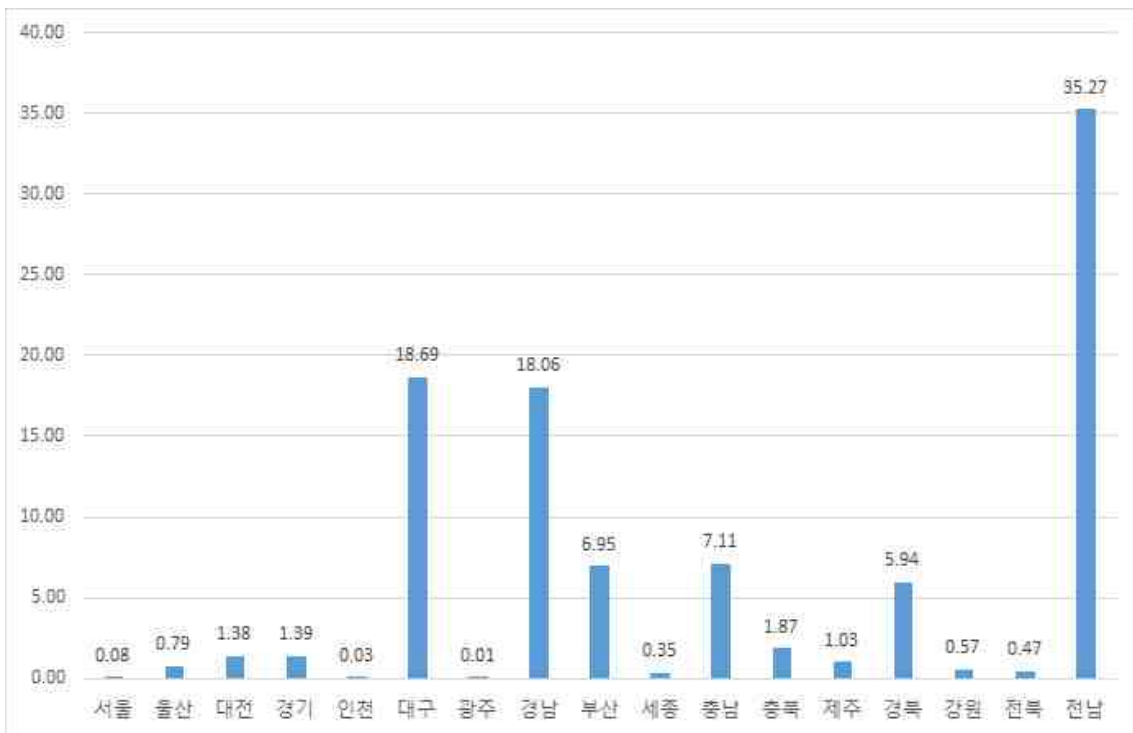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21]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 이전지역 비중(건수 기준)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V-22] 「조특법」 제63조의2 본사이전 수혜기업 이전지역 비중(수입금액 기준)



자료: 저자 작성

3. 소결

- 효과성 분석에서는 과세 미시 행정자료, 선행연구의 설문조사 자료 등을 이용하여 「조특법」 제63조와 제63조의2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 균형발전 도모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 효과성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 1. 본 조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분석
 - 2. 본 조가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 동 감면제도의 지방이전 촉진효과는 다음의 이유에 따라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정책대상 기업³⁴⁾ 중에서 과밀억제권역 혹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극히 일부임
 - 최근 10년간(2009~2018년) 연평균 수혜기업 수는 「조특법」 제63조의 경우 369개, 제63조의2의 경우 167개임
 - 같은 기간 한 번이라도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수는 제63조의 경우 1,231개, 제63조의2의 경우 589개임
 - 즉 동 제도가 정책대상 기업의 지방이전 결정에 미친 평균적인 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상당수는 조세감면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했을 것으로 보임
 -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 이전기업의 약 8.7%(제63조), 14.7%(제63조2)만이 동 제도가 없었다면 이전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답변함
 - 그 외 지방이전 결정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많은 기업이 조세감면혜택이 없었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즉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이전촉진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34) 「조특법」 제63조의 적용대상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 중소기업으로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만 해당됨. 제63조2의 적용대상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서비스업, 무점포 판매업, 해운중개업은 제외되며, 이전공공기관은 포함됨

- 동 조가 정책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집계(aggregate)변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하는 통계분석은 큰 의미가 없음
 - 그보다는 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함
 - 1. 이전기업의 특성
 - 2. 조세감면과 기업 활동
 - 3. 이전지역의 낙후도

- (1. 이전기업의 특성) 이전기업의 기업 규모, 고용 수준 등이 클수록 균형발전 효과도 더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수혜기업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었던 만큼 비감면기업에 비하여 기업 규모 등이 어느 정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법인세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혜기업의 수입금액, 당기순손익금액은 비수혜기업보다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격차는 1.5~2.2 표준편차 수준임
 - KIS-data를 이용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용 및 생산성에 있어서도 수혜기업이 비수혜기업에 비하여 평균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2. 조세감면과 기업 활동) 수혜기업의 기업 활동이 지방이전 후 집적이익의 감소 등으로 크게 위축된다면 의도했던 국가 균형발전 효과는 실현되지 않을 수 있음
 - 법인세 미시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감면세액 및 세액감면 여부는 기업의 매출·이윤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매출·이윤 등의 성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이전을 하였고, 이전 후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자료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 기업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전체 근로자 수 및 채용 근로자 수가 이전 후 유의미하게 증가함
 - 지방이전이 외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3. 이전지역의 낙후도) 균형발전 효과는 기업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이전할 때 극대화될 수 있음
 - 수도권 내 이전이 가능한 「조특법」 제63조의 경우 전체 수혜기업의 80%가량이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전함
 - 중소기업이 낙후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집적이익의 감소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혜기업의 수도권 내 이전 비중이 높은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음
 - 지역발전 정도가 가장 낮은 전라도, 강원도 등으로 이전한 비중은 높지 않음

V. 종합평가 및 결론



V. 종합평가 및 결론

-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결 요건은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기업이 이전하는 것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고용의 증대는 후속 효과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기업들은 경제인프라의 부족은 물론, 교통·교육 등 제반 여건을 들어 지방으로의 이전을 꺼리고 있음
 - 이와 같은 제약을 극복하고 좀 더 확실한 유인을 위해서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함
 - 그러나 「조특법」이나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단들은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수도권과밀억제의 사회적 필요성에 비해 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감면제도는 더 과감하지 못해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음

-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책임이 있음
 - 특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문제시되는 산업·금융·인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집중도를 완화하고 외부불경제로 인한 비용을 감소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공장신설과 증설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총량제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공장총량의 범위 확대를 시사하기도 했음
 - 이와 더불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과 본사가 이전하도록 유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되, 이전 공장과 본사가 지방의 경제활성화나 고용증대를 부수적 효과로 하여 「조특법」상 세액감면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고, 고용을 한 기업에 한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집중도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조세감면으로 인한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됨
 - 정책대상 기업 중에서 과밀억제권역 혹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은 극히 일부이며,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의 상당수는 조세감면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으로 이전했을 것으로 보임
 - 수혜기업의 이전 지역을 살펴본 결과, 성장관리구역 등 수도권 내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의 80%가량이 경기, 인천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그 외의 경우에도 지역발전 정도가 가장 낮은 전라도, 강원도 등으로 이전한 비중은 높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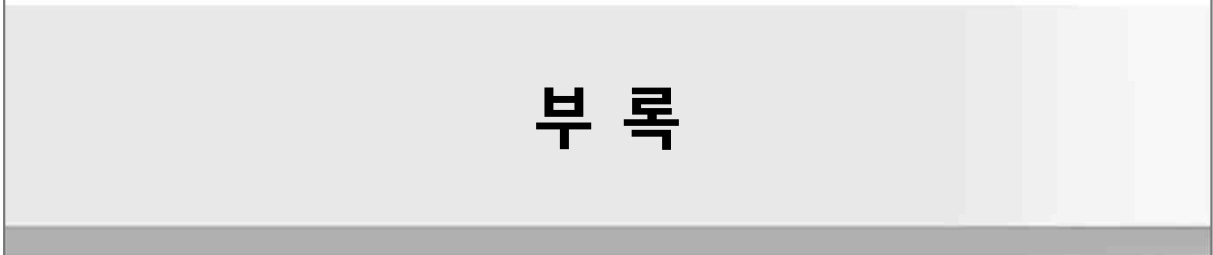
- 다만 조세특례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 재정 수입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함
 - 따라서 헌법적 차원에서 심층평가대상제도의 존치는 유지하되, 과도한 혜택이 소수의 특정 기업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억제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심층평가대상 제도에서 감면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2019.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3~2018.
- _____, 『2017년 조세특례 심층평가(VI) 「법인의 공장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2017.
- 산업연구원,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현황 및 이전요인 분석』, 2016.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올해 지방투자보조금으로 민간투자 1조 4천여억원 견인 지역일자리 3,350개 창출 유도」, 보도자료, 2019. 11. 26.
- 윤충식·장태희·강지현,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 정지선·이기욱, 「지방이전기업을 조세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1권 제3호, 2011.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06~2018.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방이전 지원세제 심층평가』, 2014.
- 국세청 내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부 록



부 록

〈부표 1〉 지역별·신고연도별 건수(「조특법」 제63조)

(단위: 건)

구분	순위 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1	0	0	0	1	0	0	4	0	1	0	6
울산	2	1	0	0	1	1	1	0	0	0	0	4
대전	3	1	4	4	3	4	6	3	3	3	2	33
경기	4	263	268	282	274	231	240	259	272	314	371	2,774
인천	5	37	30	30	27	21	22	42	58	74	81	422
대구	6	1	1	1	0	1	1	1	0	0	0	6
광주	7	0	1	2	0	0	0	0	0	1	2	6
경남	8	0	0	0	0	1	1	1	1	1	1	6
부산	9	1	3	2	2	1	1	1	0	0	0	11
세종	10	0	0	0	0	1	1	1	3	2	2	10
충남	10	19	15	17	15	19	14	15	21	19	20	174
충북	11	10	10	11	9	8	6	6	7	8	11	86
제주	12	0	0	0	0	0	0	0	0	0	1	1
경북	13	4	3	1	1	0	1	1	2	2	2	17
강원	14	7	7	7	6	5	3	2	6	6	6	55
전북	15	4	4	5	5	7	4	5	5	5	5	49
전남	16	0	0	0	3	2	3	5	5	6	6	30
총합	-	348	346	362	347	302	304	346	383	442	510	3,690

주: 1) 순위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의미함

2) 세종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충남의 순위(10위)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2> 지역별·신고연도별 건수 비중(「조특법」 제63조)

(단위: %)

구분	순위 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1	0.00	0.00	0.00	0.29	0.00	0.00	1.16	0.00	0.23	0.00	0.16
울산	2	0.29	0.00	0.00	0.29	0.33	0.33	0.00	0.00	0.00	0.00	0.11
대전	3	0.29	1.16	1.10	0.86	1.32	1.97	0.87	0.78	0.68	0.39	0.89
경기	4	75.57	77.46	77.90	78.96	76.49	78.95	74.86	71.02	71.04	72.75	75.18
인천	5	10.63	8.67	8.29	7.78	6.95	7.24	12.14	15.14	16.74	15.88	11.44
대구	6	0.29	0.29	0.28	0.00	0.33	0.33	0.29	0.00	0.00	0.00	0.16
광주	7	0.00	0.29	0.55	0.00	0.00	0.00	0.00	0.00	0.23	0.39	0.16
경남	8	0.00	0.00	0.00	0.00	0.33	0.33	0.29	0.26	0.23	0.20	0.16
부산	9	0.29	0.87	0.55	0.58	0.33	0.33	0.29	0.00	0.00	0.00	0.30
세종	10	0.00	0.00	0.00	0.00	0.33	0.33	0.29	0.78	0.45	0.39	0.27
충남	10	5.46	4.34	4.70	4.32	6.29	4.61	4.34	5.48	4.30	3.92	4.72
충북	11	2.87	2.89	3.04	2.59	2.65	1.97	1.73	1.83	1.81	2.16	2.33
제주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0	0.03
경북	13	1.15	0.87	0.28	0.29	0.00	0.33	0.29	0.52	0.45	0.39	0.46
강원	14	2.01	2.02	1.93	1.73	1.66	0.99	0.58	1.57	1.36	1.18	1.49
전북	15	1.15	1.16	1.38	1.44	2.32	1.32	1.45	1.31	1.13	0.98	1.33
전남	16	0.00	0.00	0.00	0.86	0.66	0.99	1.45	1.31	1.36	1.18	0.81
총합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순위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의미함

2) 세종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충남의 순위(10위)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3> 지역별·신고연도별 수입금액(「조특법」 제63조)

(단위: 억원)

구분	순위 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1	-	-	-	24.39	-	-	366.27	-	1,259.69	-	1,650.35
울산	2	2,223.53	-	-	1,294.40	1,438.32	1,165.26	-	-	-	-	6,121.51
대전	3	115.46	222.56	344.88	336.87	363.85	423.29	417.71	135.50	228.36	48.94	2,637.42
경기	4	31,127.15	32,102.49	43,180.34	42,647.64	25,830.09	29,750.13	26,891.53	29,921.81	34,233.49	33,732.44	329,417.11
인천	5	4,550.28	4,783.93	5,040.02	5,763.54	3,655.50	2,738.37	3,826.42	5,519.95	6,822.38	6,228.60	48,928.99
대구	6	294.15	205.67	270.06	-	162.45	173.06	181.91	-	-	-	1,287.30
광주	7	-	86.08	118.75	-	-	-	-	-	34.75	79.29	318.87
경남	8	-	-	-	-	57.60	47.16	81.22	67.35	70.23	90.68	414.24
부산	9	131.71	332.29	242.60	266.73	10.17	13.24	9.21	-	-	-	1,005.95
세종	10	-	-	-	-	114.33	82.07	63.10	182.78	105.12	116.35	663.75
충남	10	1,492.00	1,328.53	2,690.29	1,629.05	1,345.90	574.66	734.95	2,638.35	1,344.06	1,337.31	15,115.10
충북	11	742.44	680.22	848.35	664.35	804.79	629.30	676.92	365.17	519.72	762.72	6,693.98
제주	12	-	-	-	-	-	-	-	-	-	0.53	0.53
경북	13	520.46	712.78	469.14	335.43	-	461.04	8.93	14.30	28.07	46.58	2,596.73
강원	14	447.04	316.39	401.03	332.76	150.09	79.75	186.16	323.19	476.01	389.86	3,102.28
전북	15	46.63	78.38	128.70	154.25	356.73	186.01	163.18	160.52	134.44	199.95	1,608.79
전남	16	-	-	-	141.18	94.97	304.91	372.25	499.32	311.24	588.85	2,312.72
총합	-	41,690.85	40,849.32	53,734.16	53,590.59	34,384.79	36,628.25	33,979.76	39,828.24	45,567.56	43,622.10	423,875.62

주: 1) 순위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의미함

2) 세종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충남의 순위(10위)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4> 지역별·신고연도별 수입금액 비중(「조특법」 제63조)

(단위: %)

구분	순위 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1	0.00	0.00	0.00	0.05	0.00	0.00	1.08	0.00	2.76	0.00	0.39
울산	2	5.33	0.00	0.00	2.42	4.18	3.18	0.00	0.00	0.00	0.00	1.44
대전	3	0.28	0.54	0.64	0.63	1.06	1.16	1.23	0.34	0.50	0.11	0.62
경기	4	74.66	78.59	80.36	79.58	75.12	81.22	79.14	75.13	75.13	77.33	77.72
인천	5	10.91	11.71	9.38	10.75	10.63	7.48	11.26	13.86	14.97	14.28	11.54
대구	6	0.71	0.50	0.50	0.00	0.47	0.47	0.54	0.00	0.00	0.00	0.30
광주	7	0.00	0.21	0.22	0.00	0.00	0.00	0.00	0.00	0.08	0.18	0.08
경남	8	0.00	0.00	0.00	0.00	0.17	0.13	0.24	0.17	0.15	0.21	0.10
부산	9	0.32	0.81	0.45	0.50	0.03	0.04	0.03	0.00	0.00	0.00	0.24
세종	10	0.00	0.00	0.00	0.00	0.33	0.22	0.19	0.46	0.23	0.27	0.16
충남	10	3.58	3.25	5.01	3.04	3.91	1.57	2.16	6.62	2.95	3.07	3.57
충북	11	1.78	1.67	1.58	1.24	2.34	1.72	1.99	0.92	1.14	1.75	1.58
제주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북	13	1.25	1.74	0.87	0.63	0.00	1.26	0.03	0.04	0.06	0.11	0.61
강원	14	1.07	0.77	0.75	0.62	0.44	0.22	0.55	0.81	1.04	0.89	0.73
전북	15	0.11	0.19	0.24	0.29	1.04	0.51	0.48	0.40	0.30	0.46	0.38
전남	16	0.00	0.00	0.00	0.26	0.28	0.83	1.10	1.25	0.68	1.35	0.55
총합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순위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의미함

2) 세종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충남의 순위(10위)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5> 공장이전 수혜기업 지역별·신고연도별 건수(「조특법」 제63조의2)

(단위: 건)

구분	순위 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1	7	6	9	11	11	9	8	8	7	7	83
울산	2	0	0	0	0	0	0	1	0	0	0	1
대전	3	2	1	1	2	4	2	3	0	2	0	17
경기	4	6	4	5	5	5	4	13	10	10	14	76
인천	5	4	3	2	3	1	1	0	1	1	3	19
대구	6	0	0	0	0	1	0	0	0	0	1	2
광주	7	0	0	0	0	0	1	0	0	1	0	2
경남	8	2	1	2	1	0	0	1	0	0	0	7
부산	9	0	1	3	1	1	1	1	0	0	0	8
세종	10	1	0	0	0	0	0	0	0	0	0	1
충남	10	15	15	21	15	14	13	8	9	12	11	133
충북	11	14	13	13	11	8	12	8	6	8	7	100
제주	12	0	0	0	0	0	0	0	1	1	0	2
경북	13	2	2	1	0	1	0	2	1	0	0	9
강원	14	4	3	4	5	5	3	5	5	5	5	44
전북	15	2	1	1	2	2	2	2	2	2	2	18
전남	16	1	0	1	0	3	0	1	1	3	4	14
총합	-	60	50	63	56	56	48	53	44	52	54	536

주: 1) 순위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의미함

2) 세종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충남의 순위(10위)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6〉 공장이전 수혜기업 지역별·신고연도별 건수 비중(「조특법」 제63조의2)

(단위: %)

구분	순위 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1	11.67	12.00	14.29	19.64	19.64	18.75	15.09	18.18	13.46	12.96	15.49
울산	2	0.00	0.00	0.00	0.00	0.00	0.00	1.89	0.00	0.00	0.00	0.19
대전	3	3.33	2.00	1.59	3.57	7.14	4.17	5.66	0.00	3.85	0.00	3.17
경기	4	10.00	8.00	7.94	8.93	8.93	8.33	24.53	22.73	19.23	25.93	14.18
인천	5	6.67	6.00	3.17	5.36	1.79	2.08	0.00	2.27	1.92	5.56	3.54
대구	6	0.00	0.00	0.00	0.00	1.79	0.00	0.00	0.00	0.00	1.85	0.37
광주	7	0.00	0.00	0.00	0.00	0.00	2.08	0.00	0.00	1.92	0.00	0.37
경남	8	3.33	2.00	3.17	1.79	0.00	0.00	1.89	0.00	0.00	0.00	1.31
부산	9	0.00	2.00	4.76	1.79	1.79	2.08	1.89	0.00	0.00	0.00	1.49
세종	10	1.6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9
충남	10	25.00	30.00	33.33	26.79	25.00	27.08	15.09	20.45	23.08	20.37	24.81
충북	11	23.33	26.00	20.63	19.64	14.29	25.00	15.09	13.64	15.38	12.96	18.66
제주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27	1.92	0.00	0.37
경북	13	3.33	4.00	1.59	0.00	1.79	0.00	3.77	2.27	0.00	0.00	1.68
강원	14	6.67	6.00	6.35	8.93	8.93	6.25	9.43	11.36	9.62	9.26	8.21
전북	15	3.33	2.00	1.59	3.57	3.57	4.17	3.77	4.55	3.85	3.70	3.36
전남	16	1.67	0.00	1.59	0.00	5.36	0.00	1.89	2.27	5.77	7.41	2.61
총합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순위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의미함

2) 세종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충남의 순위(10위)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7> 공장이전 수혜기업 지역별·신고연도별 수입금액(「조특법」 제63조의2)

(단위: 억원)

구분	순위 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1	66,544.36	58,573.33	67,646.87	92,522.96	97,529.92	51,865.09	46,795.07	42,392.65	36,738.97	25,089.88	585,699.10
울산	2	-	-	-	-	-	-	941.13	-	-	-	941.13
대전	3	1,319.43	355.66	314.11	204.35	466.38	298.12	276.59	-	228.28	-	3,462.92
경기	4	24,656.37	388.71	50,139.34	24,707.38	20,065.93	5,360.84	47,282.41	40,278.18	39,597.65	46,643.86	299,120.67
인천	5	510.30	601.24	275.72	356.74	39.64	45.11	-	69.38	323.10	15.48	2,236.71
대구	6	-	-	-	-	4.08	-	-	-	-	99.11	103.19
광주	7	-	-	-	-	-	35.07	-	-	47.22	-	82.29
경남	8	21.75	14.98	143.10	15.35	-	-	594.89	-	-	-	790.07
부산	9	-	10.97	1,596.86	134.67	20.04	22.79	15.02	-	-	-	1,800.35
세종	10	675.99	-	-	-	-	-	-	-	-	-	675.99
충남	10	2,707.10	3,037.18	5,050.82	4,305.07	4,278.15	4,014.56	1,989.65	3,100.65	12,268.46	9,204.24	49,955.88
충북	11	8,078.73	6,427.74	9,807.22	5,889.25	7,189.70	10,286.24	6,871.04	6,648.80	9,442.66	5,790.73	76,432.11
제주	12	-	-	-	-	-	-	-	241.64	118.10	-	359.74
경북	13	112.97	95.18	47.43	-	443.75	-	193.27	133.42	-	-	1,026.02
강원	14	528.49	405.43	978.15	827.27	974.35	687.37	963.92	1,159.80	1,331.90	969.82	8,826.50
전북	15	43.83	6.07	7.80	45.78	51.75	60.27	1,084.56	1,085.44	1,118.06	1,167.02	4,670.58
전남	16	8.45	-	9.15	-	161.10	-	908.00	1,089.50	1,771.78	1,566.54	5,514.52
총합	-	105,207.77	69,916.49	136,016.57	129,008.82	131,224.79	72,675.46	107,915.55	96,199.46	102,986.18	90,546.68	1,041,697.77

주: 1) 순위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의미함

2) 세종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충남의 순위(10위)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8> 공장이전 수혜기업 지역별·신고연도별 수입금액 비중(「조특법」 제63조의2)

(단위: %)

구분	순위 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1	63.25	83.78	49.73	71.72	74.32	71.37	43.36	44.07	35.67	27.71	56.23
울산	2	0.00	0.00	0.00	0.00	0.00	0.00	0.87	0.00	0.00	0.00	0.09
대전	3	1.25	0.51	0.23	0.16	0.36	0.41	0.26	0.00	0.22	0.00	0.33
경기	4	23.44	0.56	36.86	19.15	15.29	7.38	43.81	41.87	38.45	51.51	28.71
인천	5	0.49	0.86	0.20	0.28	0.03	0.06	0.00	0.07	0.31	0.02	0.21
대구	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1	0.01
광주	7	0.00	0.00	0.00	0.00	0.00	0.05	0.00	0.00	0.05	0.00	0.01
경남	8	0.02	0.02	0.11	0.01	0.00	0.00	0.55	0.00	0.00	0.00	0.08
부산	9	0.00	0.02	1.17	0.10	0.02	0.03	0.01	0.00	0.00	0.00	0.17
세종	10	0.6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6
충남	10	2.57	4.34	3.71	3.34	3.26	5.52	1.84	3.22	11.91	10.17	4.80
충북	11	7.68	9.19	7.21	4.56	5.48	14.15	6.37	6.91	9.17	6.40	7.34
제주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5	0.11	0.00	0.03
경북	13	0.11	0.14	0.03	0.00	0.34	0.00	0.18	0.14	0.00	0.00	0.10
강원	14	0.50	0.58	0.72	0.64	0.74	0.95	0.89	1.21	1.29	1.07	0.85
전북	15	0.04	0.01	0.01	0.04	0.04	0.08	1.01	1.13	1.09	1.29	0.45
전남	16	0.01	0.00	0.01	0.00	0.12	0.00	0.84	1.13	1.72	1.73	0.53
총합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순위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의미함

2) 세종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충남의 순위(10위)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9> 본사이전 수해기업 지역별·신고연도별 건수(「조특법」 제63조의2)

(단위: 건)

구분	순위 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1	3	4	1	4	0	0	2	0	0	0	14
울산	2	0	0	0	0	0	0	1	1	1	1	4
대전	3	7	8	9	6	3	1	3	0	1	4	42
경기	4	8	12	9	8	7	5	8	7	10	12	86
인천	5	0	1	0	0	0	2	3	2	3	1	12
대구	6	1	2	3	6	4	4	4	4	4	2	34
광주	7	1	0	0	0	0	0	0	0	0	0	1
경남	8	3	2	1	3	1	3	4	2	4	4	27
부산	9	7	5	2	1	2	3	8	9	10	6	53
세종	10	2	4	3	2	2	0	0	0	1	2	16
충남	10	33	38	41	47	41	36	30	23	34	27	350
충북	11	19	18	21	34	28	34	32	23	21	18	248
제주	12	0	1	1	2	2	4	4	3	4	5	26
경북	13	2	5	4	2	5	4	5	5	8	7	47
강원	14	6	12	8	8	6	11	10	6	8	11	86
전북	15	3	3	4	3	5	4	5	3	3	3	36
전남	16	0	0	0	0	0	1	8	11	16	16	52
총합	-	95	115	107	126	106	112	127	99	128	119	1,134

주: 1) 순위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의미함

2) 세종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충남의 순위(10위)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0> 본사이전 수혜기업 지역별·신고연도별 건수 비중(「조특법」 제63조의2)

(단위: %)

구분	순위 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1	3.16	3.48	0.93	3.17	0.00	0.00	1.57	0.00	0.00	0.00	1.23
울산	2	0.00	0.00	0.00	0.00	0.00	0.00	0.79	1.01	0.78	0.84	0.35
대전	3	7.37	6.96	8.41	4.76	2.83	0.89	2.36	0.00	0.78	3.36	3.70
경기	4	8.42	10.43	8.41	6.35	6.60	4.46	6.30	7.07	7.81	10.08	7.58
인천	5	0.00	0.87	0.00	0.00	0.00	1.79	2.36	2.02	2.34	0.84	1.06
대구	6	1.05	1.74	2.80	4.76	3.77	3.57	3.15	4.04	3.13	1.68	3.00
광주	7	1.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9
경남	8	3.16	1.74	0.93	2.38	0.94	2.68	3.15	2.02	3.13	3.36	2.38
부산	9	7.37	4.35	1.87	0.79	1.89	2.68	6.30	9.09	7.81	5.04	4.67
세종	10	2.11	3.48	2.80	1.59	1.89	0.00	0.00	0.00	0.78	1.68	1.41
충남	10	34.74	33.04	38.32	37.30	38.68	32.14	23.62	23.23	26.56	22.69	30.86
충북	11	20.00	15.65	19.63	26.98	26.42	30.36	25.20	23.23	16.41	15.13	21.87
제주	12	0.00	0.87	0.93	1.59	1.89	3.57	3.15	3.03	3.13	4.20	2.29
경북	13	2.11	4.35	3.74	1.59	4.72	3.57	3.94	5.05	6.25	5.88	4.14
강원	14	6.32	10.43	7.48	6.35	5.66	9.82	7.87	6.06	6.25	9.24	7.58
전북	15	3.16	2.61	3.74	2.38	4.72	3.57	3.94	3.03	2.34	2.52	3.17
전남	16	0.00	0.00	0.00	0.00	0.00	0.89	6.30	11.11	12.50	13.45	4.59
총합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순위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의미함

2) 세종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충남의 순위(10위)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1> 본사이전 수혜기업 지역별·신고연도별 수입금액(「조특법」 제63조의2)

(단위: 억원)

구분	순위 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1	460.38	806.56	73.86	1,342.22	-	-	96.55	-	-	-	2,779.57
울산	2	-	-	-	-	-	-	10.06	12,685.62	9,104.35	6,949.35	28,749.38
대전	3	1,709.41	13,096.25	16,624.09	16,818.68	103.52	16.61	1,502.01	-	15.16	277.27	50,163.00
경기	4	798.14	27,322.42	14,083.51	2,369.32	1,358.26	188.25	1,592.23	1,323.84	651.20	732.91	50,420.08
인천	5	-	38.80	-	-	-	599.99	78.51	73.20	410.78	26.44	1,227.72
대구	6	265.00	336.00	289.97	1,080.94	718.82	722.64	1,671.12	256,616.71	203,699.00	211,984.14	677,384.34
광주	7	381.75	-	-	-	-	-	-	-	-	-	381.75
경남	8	504.23	201.76	38.99	121.08	205.45	1,101.95	45,611.72	49,679.37	276,365.09	280,721.69	654,551.33
부산	9	5,142.98	4,965.50	3,301.20	2,673.57	3,255.88	3,463.43	14,939.59	82,564.02	87,987.26	43,746.80	252,040.23
세종	10	743.45	575.45	258.05	69.95	50.75	-	-	-	6,467.94	4,585.60	12,751.19
충남	10	10,930.28	15,502.34	15,423.66	15,368.31	14,744.61	14,495.20	21,512.71	23,149.33	103,044.52	23,603.79	257,774.75
충북	11	8,581.72	3,776.80	6,570.93	8,295.03	9,004.08	8,463.08	6,387.82	7,097.18	5,945.47	3,836.82	67,958.93
제주	12	-	32.64	10.85	208.12	69.42	5,126.78	4,512.55	6,887.48	8,794.71	11,789.16	37,431.71
경북	13	682.79	960.92	1,017.84	287.18	1,341.49	545.59	570.99	662.50	113,742.44	95,459.05	215,270.79
강원	14	796.09	1,042.47	776.52	1,720.49	1,651.57	3,052.47	3,342.54	2,973.15	2,397.53	3,085.29	20,838.12
전북	15	97.81	117.57	412.72	407.72	349.71	871.07	5,514.49	5,904.70	1,669.29	1,526.61	16,871.69
전남	16	-	-	-	-	-	675.98	5,538.40	22,398.12	625,295.14	624,640.81	1,278,548.45
총합	-	31,094.03	68,775.48	58,882.19	50,762.61	32,853.56	39,323.04	112,881.29	472,015.22	1,445,589.88	1,312,965.73	3,625,143.03

주: 1) 순위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의미함

2) 세종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충남의 순위(10위)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부표 12> 본사이전 수혜기업 지역별·신고연도별 수입금액 비중(「조특법」 제63조의2)
(단위: %)

구분	순위 ¹⁾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합
서울	1	1.48	1.17	0.13	2.64	0.00	0.00	0.09	0.00	0.00	0.00	0.08
울산	2	0.00	0.00	0.00	0.00	0.00	0.00	0.01	2.69	0.63	0.53	0.79
대전	3	5.50	19.04	28.23	33.13	0.32	0.04	1.33	0.00	0.00	0.02	1.38
경기	4	2.57	39.73	23.92	4.67	4.13	0.48	1.41	0.28	0.05	0.06	1.39
인천	5	0.00	0.06	0.00	0.00	0.00	1.53	0.07	0.02	0.03	0.00	0.03
대구	6	0.85	0.49	0.49	2.13	2.19	1.84	1.48	54.37	14.09	16.15	18.69
광주	7	1.2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경남	8	1.62	0.29	0.07	0.24	0.63	2.80	40.41	10.52	19.12	21.38	18.06
부산	9	16.54	7.22	5.61	5.27	9.91	8.81	13.23	17.49	6.09	3.33	6.95
세종	10	2.39	0.84	0.44	0.14	0.15	0.00	0.00	0.00	0.45	0.35	0.35
충남	10	35.15	22.54	26.19	30.27	44.88	36.86	19.06	4.90	7.13	1.80	7.11
충북	11	27.60	5.49	11.16	16.34	27.41	21.52	5.66	1.50	0.41	0.29	1.87
제주	12	0.00	0.05	0.02	0.41	0.21	13.04	4.00	1.46	0.61	0.90	1.03
경북	13	2.20	1.40	1.73	0.57	4.08	1.39	0.51	0.14	7.87	7.27	5.94
강원	14	2.56	1.52	1.32	3.39	5.03	7.76	2.96	0.63	0.17	0.23	0.57
전북	15	0.31	0.17	0.70	0.80	1.06	2.22	4.89	1.25	0.12	0.12	0.47
전남	16	0.00	0.00	0.00	0.00	0.00	1.72	4.91	4.75	43.26	47.57	35.27
총합	-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주: 1) 순위는 지역낙후도 순위를 의미함

2) 세종의 지역낙후도 순위는 충남의 순위(10위)를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